

공개초안

2024년 1월

의견조회 기한: 2024년 5월 10일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  
(독립성포함)(IESSA)안 및  
지속가능성인증/보고와 관련된  
윤리기준의 기타 개정사항  
공개초안

본 공개초안은 별도의 설명자료와 함께 읽어야 한다.

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



##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는 독립적인 글로벌 기준 제정 위원회이다. 국제윤리기준위원회의 사명은 사업 및 조직의 윤리적 행동과 재무 및 비재무 정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위한 초석으로서, 고품질의 국제윤리기준(독립성 포함)을 제정하여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와 함께, 국제윤리기준위원회는 국제윤리감사재단(IFEA)을 구성한다. 공익감독위원회(PIOB)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및 국제윤리기준위원회의 활동과 각 위원회가 제정하는 기준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감독한다.

## 의견 요청

본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독립성 포함)(IESSA)안 및 지속가능성인증/보고와 관련된 윤리기준의 기타 개정사항 공개초안은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제정하고 승인했다.

본 공개초안은 부속 문서인 설명자료와 함께 읽어야 한다.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안사항(제1장 5320(기타 고려사항) 및 5390, 제4장 220(타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과 320(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은 전문가 활용 프로젝트에 따라 개발되었다. 각각의 근거는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공개초안을 참조한다. 이들 개정안에 대한 모든 피드백은 해당 공개초안에 대한 답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 공개초안의 승인된 내용은 영어로 발행되었다.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은 최종 형식으로 발표되기 전에 수렴된 의견을 근거로 하여 수정될 수 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4년 5월 10일**까지이다. 본 기준안의 확정을 위한 일정이 앞당겨졌으므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은 수용 불가함에 유의한다.

국제윤리기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구조와 프로세스는 국제윤리감사재단(IFEA)에 의해 관장된다.

Copyright © January 2024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

저작권, 상표 및 사용권한에 관한 정보는 p.259-260를 참조한다.

## 목 차

---

	페이지
제1장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안(국제독립성기준 포함).....	7
제2장 용어정의 개정안 .....	197
제3장 국제지속가능성인증 윤리기준(독립성 포함)(IESSA)안 제정에 따른 관련 기준 개정안 .....	215
제4장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고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현행 윤리기준 제1부-3부 개정안.....	233

## 제1장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안(국제독립성기준 포함)

### 제5부 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국제독립성기준 포함) 목차

5100 제5부의 준수 .....	7
5110 윤리강령 .....	10
5120 개념체계 .....	16
5270 윤리강령의 위반 압력 .....	25
5300 개념체계의 적용 .....	28
5310 이해상충 .....	35
5320 업무수입 .....	40
5325 업무품질 검토담당자 및 기타 적절한 검토담당자의 공정성 .....	45
5330 보수 및 기타 유형의 보상 .....	47
5340 청탁(선물 및 접대를 포함) .....	49
5350 의뢰인 자산의 보관 .....	54
5360 법규위반에 대한 대응 .....	55
5380 세무계획 수립 업무 .....	69
5390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	80
5400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독립성에 대한 개념체계 적용 .....	89
5405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 .....	106
5406 단위 회사 또는 그룹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관여하는 타 인증인 .....	115
5407 가치사슬 회사에서 수행되거나 동 회사와 관련된 인증업무에 관한 독립성 고려사항 .....	117
5410 보수 .....	119

5411 보상 및 평가 정책 ..... 131

5420 선물 및 접대 ..... 132

5430 소송 또는 소송이 제기될 위협 ..... 133

5510 보상 및 평가 정책 ..... 134

5511 대출과 보증 ..... 139

5520 사업관계 ..... 141

5521 가족관계와 개인적 관계 ..... 143

552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개인이 인증업무팀원이 된 경우 ..... 146

5523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직을 수행하는 경우 의뢰인 ..... 148

5524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고용관계 ..... 149

5525 일시적 인력 파견 ..... 152

5540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장기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리더 교체 포함) ..... 153

5600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비인증업무 제공 ..... 159

5700 가치사슬 회사가 관련된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 ..... 196

## 제5부 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국제독립성기준 포함)

### 5100 제5부의 준수

#### 개요

#### 일반사항

- 5100.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이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 기타 보고 및 인증기준과 함께 높은 수준의 윤리 및 독립성기준을 적용하면 투자자, 고객, 직원 및 기타 지속가능성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5100.1a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지속가능성인증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관련 변화 동향에 맞게 인증기법을 최신으로 유지하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5100.2 제5부는 지속가능성인증인에 대한 윤리기준(독립성기준 포함)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a) 5100부터 5390까지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수행되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및 기타 전문서비스에 대한 윤리기준을 제시한다.
  - (b) 5400부터 5700까지는 문단 5400.3a부터 5400.3b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독립성 기준을 제시한다.
- 5100.2a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독립성기준은 이 윤리기준의 제4B부에 제시되어 있다.
- 5100.2b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제5부에서 다루지 않는 전문업무를 수행하고 사업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이 적용된다.
- (a) 공인회계사인 인증인(practitioner)에게는 이 윤리기준의 제1부부터 제4B부까지가 적용된다.
  - (b) 공인회계사가 아닌 인증인은 이 윤리기준의 제1부부터 제4B까지를 적용하여 인증인의 일반적 행위에 관한 지침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전문업무에서 이 윤리기준(또는 최소한 이 윤리기준에 준하는 다른 윤리기준)에 제시된 윤리기준(독립성 기준 포함)을 준수하는 것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신력에 기여한다. 여기에는 인증인이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 (i) 의뢰인, 회계법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하는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작성 또는 제출하는 경우
    - (ii)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아닌 회사에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해상충에 직면하는 경우
    - (iii) 회계법인의 공급업체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아닌 회사로부터 청탁을 제공받는 경우

- (iv) 회계법인의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기타 개인의 의심되는 부정행위 또는 기타 법규 위반에 직면하는 경우
- (v) 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아닌 회사로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 또는 특정상황에 대한 기타 기준이나 원칙의 적용에 대하여 제2의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 (vi)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아닌 회사에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5100.3 제5부는 다음을 위하여 지속가능성인증인에게 기대되는 윤리적 행위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a) 특정 부문 또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인증인에 대한 윤리기준(독립성 기준 포함) 수립 책임자가 채택하도록 하기 위함.
- (b) 회계법인이 자체 윤리 및 독립성 정책 수립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5100.4 제5부는 모든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준수해야 하는 다섯 가지 윤리강령을 규정한다. 또한 제5부에는 그러한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과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개념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제5부는 또한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실 및 상황에 동 윤리강령과 개념체계를 적용한다.

##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

5100.4a 지속가능성 정보는 지속가능성 보고체계 또는 법규에 따라 요구되거나 회사가 기타 준거기준에 따라 제출하기로 선택한 다양한 주제 또는 주제의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공개를 포함할 수 있다. 또는 회사가 제출한 지속가능성 정보는 지표, 목표 또는 핵심성과지표(KPI)와 같은 특정 사항에만 국한될 수 있다.

5100.4b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인증대상인 지속가능성 정보의 보고에 사용된 준거기준은 체계 준거기준, 회사가 개발한 준거기준 또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일 수 있다. 체계 준거기준은 법규에 포함되어 있거나 투명하고 합당한 절차를 따르는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 또는 인정받은 기관이 발행한 것일 수 있다.

5100.4c 사용된 준거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는 단일 회사 또는 그룹 차원에서 작성될 수 있고 보고회사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5100.4d 지속가능성 정보는 예를 들어 회사가 발행한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회사 연차보고서의 일부(예: 연차보고서 내 별도 보고서로 식별되거나 경영진보고서 또는 경영진설명서의 일부로 제출), 통합보고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될 수 있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5100.5 A1 제5부에서 “R”자로 표시하는 요구사항(requirements)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5100.5 A2 제5부에서 “A”자로 표시하는 적용지침(application material)은 이 윤리기준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는 배경, 설명, 고려할 조치나 문제에 대한 제안사항, 예 및 기타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적용지침은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개념체계를 특정한 일련의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특정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적용지침은 그 자체로는 요구사항을 구성하지 않지만, 개념체계의 적용을 포함하여 제5부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지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R5100.6**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제5부를 준수해야 한다.

5100.6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윤리강령을 지키고 제5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인증을 제공할 때 공익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100.6 A2 제5부를 준수하는 것에는 특정 요구사항의 목표와 의도를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5100.6 A3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인증을 제공할 때 제5부의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믿는 이례적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증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00.6 A4 공익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해 전문업무를 수행할 때 개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선호사항 또는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기타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역시 고려한다.

**R5100.7** 법규에 의해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제5부의 특정 조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법규가 우선하며, 해당 인증인은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제5부의 다른 조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5100.7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전문가적 품위 강령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법규 조항은 제5부에 있는 규정과 다르거나 제5부에 있는 규정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인증인은 이러한 차이를 숙지하고 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보다 엄격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5부의 위반

**R5100.8** 제5부의 독립성 요구사항의 위반에 관한 사항은 문단 R5400.80부터 R5400.89까지 그리고 문단 5405.22 A1부터 R5405.29까지의 규정에서 다룬다. 제5부에 있는 다른 모든 규정의 위반을 식별한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해당 위반의 심각성과 해당 위반이 본인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인증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해당 위반의 결과에 만족스럽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취함.

(b) 해당 위반을 관련 당사자에게 보고할지 여부를 결정함.

5100.8 A1 이러한 위반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 또는 감독당국 등이 포함된다.

## 5110 윤리강령

### 일반사항

5110.1 A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에게는 다음의 다섯 가지 윤리강령이 적용된다.

- (a) 성실 -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업관계에 있어 솔직하고 정직해야 함.
- (b) 공정 - 다음으로 인해 전문가적 또는 사업적 판단을 흐리지 아니함.
  - (i) 편견
  - (ii) 이해상충
  - (iii) 개인, 조직, 기술 또는 기타 요인의 부당한 영향 또는 그에 대한 부당한 의존
- (c)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 (i) 현행 전문가 기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합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유지함
  - (ii)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전문가 기준을 준수함.
- (d) 비밀유지 -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업관계에 있어 취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함.
- (e) 전문가적 품위 - 다음과 같이 함.
  - (i) 관련 법규를 준수함.
  - (ii)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관련한 모든 전문업무 및 사업관계에서 공익에 부합하게 행동함.
  - (iii)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혹은 알아야 하는 행위를 삼가함.

**R5110.2**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섯 가지의 각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5110.2 A1 윤리강령은 지속가능성인증인에게 기대되는 행위의 기준을 설정한다. 반면, 개념체계는 윤리강령 준수를 돕기 위해 인증인(practitioner)이 적용해야 하는 접근방식을 규정한다. 5111부터 5115까지에서는 다섯 가지 윤리강령과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5110.2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특정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다른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경우와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증인은 다음의 당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익명으로) 자문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회계법인의 다른 구성원

- 지배기구
- 한국공인회계사회
- 감독기관
- 법률전문가

그러나 이러한 자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충을 해결하거나 (필요하고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갈등을 발생시키는 문제와의 관련을 단절하기 위해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할 책임은 인증인 본인에게 있다.

5110.2 A3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해당 문제의 요지, 세부 논의내용, 결정사항 및 이러한 의사결정의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111 성실

**R5111.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업관계에 있어 솔직하고 정직하도록 요구하는 성실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5111.1 A1 성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진실성이 있으며, 달리 행동하라는 압력에 직면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본인 또는 조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적절하게 행동하는 강인함을 갖추는 것을 포함한다.

5111.1 A2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딜레마 및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함.
- (b) 상황상 필요한 경우 해당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이익을 제기함.

**R5111.2**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보고서, 신고서, 커뮤니케이션 또는 기타 정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 (a) 중대하게 잘못되었거나 오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b) 부주의하게 제공된 진술이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c)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됨으로써 오도하는 경우

5111.2 A1 앞에서 설명한 보고서, 신고서, 커뮤니케이션 또는 기타 정보와 관련하여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문단 R5111.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R5111.3**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문단 R5111.2에서 기술한 정보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112 공정

**R5112.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은 다음으로 인해 전문가적 또는

사업적 판단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공정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 (a) 편견
- (b) 이해상충
- (c) 개인, 조직, 기술 또는 기타 요인의 부당한 영향 또는 그에 대한 부당한 의존

**R5112.2**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특정 상황 또는 관계로 인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전문가적 판단이 부당한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5113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R5113.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은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현행 전문가 기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만족스러운 전문서비스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기에 합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유지함.
- (b)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전문가 기준을 준수함.

5113.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하여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고 전문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건전한 판단이 요구된다.

5113.1 A2 전문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수행 중인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전문업무와 관련된 기술적 지식의 적용 외에도 대인관계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조직 역량이 인증인(practitioner)과 연계된 회사 및 개인의 상호교류를 촉진한다.

5113.1 A3 전문가적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본인이 수행하는 전문업무와 관련된 전문가적 변화 동향과 사업 및 기술 관련 변화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인증인은 지속적인 전문가적 개발을 통해 전문적인 환경 속에서 적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다.

5113.1 A4 정당한 주의를 말은 업무의 요구조건에 따라, 신중하고 철저하며 적시에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포함한다.

**R5113.2**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본인의 통솔 하에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적절한 훈련과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R5113.3**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필요하다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인증인 전문업무의 기타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가 갖는 고유한계를 깨닫게 하고 이러한 한계의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 5114 비밀유지

**R5114.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은 비밀유지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이나 사업관계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인증인(practitioner)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 (a) 사회적 환경 속에서 특히 친밀한 사업상의 관계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immediate family) 또는 측근가족(close family)에게 무심코 이러한 정보를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함.
- (b) 회계법인 내부에서도 비밀을 유지함.
- (c) 잠재적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함.
- (d) 인증인 본인의 통제 하에 있는 임직원 및 인증인 본인에게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인증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함.

5114.1 A1 직무 수행이나 사업관계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에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해당 정보의 수집, 사용, 이전, 보관 또는 보유, 유포, 합법적인 파기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R5114.2** 문단 R5114.3에 따라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직무수행 과정이나 사업관계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함.
- (b) 직무수행 과정이나 사업관계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인증인 본인, 회계법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아니함.
- (c) 직무수행 과정이나 사업관계에서 취득하거나 입수한 비밀정보를 해당 관계가 종료된 후에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 (d)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는 정보를 적절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R5114.3** 문단 R5114.2의 예외로서,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 경우에는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 (a) 법률상이나 직무상 공개하거나 이용할 의무나 권리가 있는 경우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나 비밀정보의 공개나 이용을 허가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승인했으며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정보의 공개나 이용이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

5114.3 A1 비밀유지의무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지속가능성인증인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함으로써,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시킴으로 공익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상황은 지속가능성인증인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거나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비밀정보를 공개할 의무나 권리가 있는 경우이다.

- (a)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 (i) 소송절차에 따라 문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증거로 제공하는 경우
  - (ii) 밝혀진 법규위반 사실을 해당 정부당국에 공개하는 경우
- (b)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의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 (i)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 업무평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모니터링 업무에 순응하기 위한 경우
- (ii)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의 질의 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한 경우
- (iii) 소송에서 인증인의 직업상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 (iv) 전문가 기준(윤리적 요구사항을 포함)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5114.3 A2 비밀정보의 공개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다음을 포함한 요인들을 고려한다.

- 지속가능성인증 의뢰인이 정보의 공개 또는 이용을 승인하였다도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정보공개가 제3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익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여부
- 모든 관련정보가 실제로 알려져 있고 입증되었는지 여부. 정보공개 또는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됨.
  - 입증되지 않은 사실
  - 불안정한 정보
  - 입증되지 않은 결론
- 제안된 커뮤니케이션 방식
- 정보를 제공받거나 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책임자인지 여부
-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 및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의 모든 관련 법률 또는 규정(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포함)

5114.3 A3 회계법인이 비밀정보의 이용이나 공개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상황에는 해당 정보가 훈련, 제품 또는 기술의 개발, 리서치, 또는 산업 및 기타 벤치마킹 데이터나 연구를 위한 원천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승인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예: 내부훈련 목적 또는 품질향상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 특정 상황에서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회사의 승인을 획득할 때 (가급적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관련 고려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이용 또는 공개할 정보의 성격
- 정보 이용 또는 공개의 목적(예: 기술 개발, 리서치, 벤치마킹 데이터 또는 연구)
- 정보가 이용되거나 공개되는 업무를 수행할 개인 또는 회사
- 해당 정보가 이용 또는 공개될 활동의 결과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회사의 신원 또는 해당 정보와 관련된 개인이나 회사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R5114.4**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지 강령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새로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수임한 경우, 인증인은 이전의 업무경험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직무수행 과정이나 사업관계에서 알게 된 어떠한 비밀정보도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 5115 전문가적 품위

**R5115.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은 전문가적 품위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관련 법규를 준수함.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관련한 모든 전문업무 및 사업관계에서 공익에 부합하게 행동함.
- (c) 인증인(practitioner)이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신력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가능성이 있어 윤리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직업 또는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5115.1 A1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신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는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reasonable and informed third party)가 그러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R5115.2** 업무에 대한 광고나 홍보를 할 때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인증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인증인의 자격 또는 업무경험 등에 대한 과장된 주장
- (b) 다른 인증인의 업무에 대한 비방 또는 입증되지 않은 비교

5115.2 A1 특정 형태의 홍보 또는 영업행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예를 들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같은 적절한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120 개념체계

### 개요

- 5120.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이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으로 인해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5120에서는 인증인(practitioner)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공익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개념체계를 포함)을 규정한다. 이러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은 다양한 전문업무,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 등을 포함하여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사실 및 상황을 다룬다.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은 인증인이 제5부에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는 특정 상황에 단순히 금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상황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 5120.2 개념체계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다음을 수행하는 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a)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식별함.
  - (b) 식별된 위협을 평가함.
  - (c)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해당 위협에 대처함.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R5120.3** 지속가능성인증인은 5110에서 제시하는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해당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개념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 [문단 5120.3 A1부터 R5120.4까지는 공란으로 둔다]

- R5120.5** 지속가능성인증인은 개념체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 (a) 탐구심을 추구함.
  - (b) 전문가적 판단을 함.
  - (c) 문단 5120.5 A9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 테스트를 이용함.

#### 탐구심의 추구

- 5120.5 A1 탐구심은 개념체계의 적절한 적용에 필수적인 알려진 사실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탐구심의 추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수행 중인 전문업무의 성격, 범위 및 결과물을 감안하여 획득한 정보의 출처, 관련성, 충분성을 고려함.
- (b) 추가적인 조사나 기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며 주의를 기울임.

5120.5 A2 획득한 정보의 출처, 관련성, 충분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신규 정보가 드러나거나 사실 및 상황이 변화됐는지 여부
- 정보 또는 그 출처가 편견이나 본인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잠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 및 상황에서 누락됐는지를 우려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알려진 사실 및 상황과 본인의 예상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지 여부
- 관련 정보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 도출할 수 있는 다른 합당한 결론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5120.5 A3 문단 R5120.5에 따라 모든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윤리강령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할 때 탐구심을 가져야 한다. 개념체계 적용을 위한 이러한 전제조건은 수행하는 전문업무에 관계없이 모든 인증인에게 적용된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발표한 기준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인은 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포함하여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발휘해야 한다.

#### *전문가적 판단의 발휘*

5120.5 A4 전문가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전문업무, 관련된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하여 사실과 상황에 부합하는 관련 교육, 전문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5120.5 A5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informed decision)을 내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경우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인증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본인의 전문성과 경험이 결론을 도출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관련 전문성 또는 경험을 보유한 다른 당사자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본인의 선입견 또는 편견이 전문가적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120.5 A6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과 관련 요인은 그 범위와 복잡성이 매우 다양하다. 인증인이 발휘하는 전문가적 판단은 불확실한 사실 및 상황이라는 요소와, 상호연관되어 있거나 상호의존적인 변수와 가정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변화의 복합적 효과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

5120.5 A7 복잡성 관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회계법인 및 관련 이해당사자(해당되는 경우)가 내재된 불확실성이나 사실 및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숙지하도록 함. (참조: 문단 R5113.3)

- 사실 및 상황의 변동이나 변화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도출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참조: 문단 R5120.5부터 5120.5 A3까지 및 문단 R5120.9부터 5120.9 A2까지)

5120.5 A8 복잡성 관리에는 다음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 관련성이 있는 모든 불확실한 요소, 변수, 가정과 그 상호연결성 또는 상호의존성을 분석하고 조사함.
- 지속가능성인증인의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함.
- 평가 과정의 일환으로 적절한 이의제기와 추가 투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다른 당사자의 자문을 받음.

####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

5120.5 A9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 테스트란 다른 당사자가 지속가능성인증인 본인이 내린 결론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는, 결론을 도출하는 시점에 해당 인증인이 알고 있거나 합리적인 관점에서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관련 사실 및 상황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일 필요는 없으나 불편부당하게 인증인이 도출한 결론을 이해하고 해당 결론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관련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위협의 식별**

**R5120.6**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식별해야 한다.

5120.6 A1 윤리강령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사실 및 상황(전문업무,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를 포함)에 대한 이해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인증인이 보다 더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법규 또는 회계법인이 제정하고 있는 특정 조건, 정책, 절차 역시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이기도 한 이러한 조건,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예는 문단 5120.8 A2에 포함되어 있다.

5120.6 A2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은 광범위한 사실 및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위협을 발생시키는 모든 상황을 정의할 수는 없다. 또한,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관련된 위협의 유형도 다를 수 있다.

5120.6 A3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은 다음의 유형 중 하나 이상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 (a) 이기적위협(Self-interest threat). 재무적 이해관계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속가능성인증인의 판단이나 행위가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게 될 위협
- (b) 자기검토위협(Self-review threat). 지속가능성인증인, 또는 해당 인증인이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구성원이 과거에 판단한 사항이나 수행한 업무의 결과가 현재의 업무와 관련된 판단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과거 판단 사항이나 업무의 결과에 대하여 인증인 본인이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게

될 위협

- (c) 변호위협(Advocacy threat).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을 정도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입장을 옹호하게 될 위협
- (d) 유착위협(Familiarity threat).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장기간의 유대관계 혹은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에 지나치게 동정적이 되거나 그 업무를 지나치게 수용하게 될 위협
- (e) 압력위협(Intimidation threat). 지속가능성인증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포함하여, 실제의 또는 인지된(perceived) 압력 때문에 인증인이 객관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될 위협

5120.6 A4 하나의 상황이 여러 가지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고 하나의 위협이 여러 윤리강령의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협의 평가**

**R5120.7**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식별한 경우 해당 위협이 수용가능한 수준(acceptable level)인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수용가능한 수준*

5120.7 A1 수용가능한 수준이란 지속가능성인증인이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 테스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윤리강령을 준수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위협수준의 평가와 관련되는 요인*

5120.8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위협을 평가할 때 양적요인 뿐만 아니라 질적요인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위협에 의한 결합 효과도 고려한다.

5120.8 A2 문단 5120.6 A1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 정책 및 절차 역시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관련된 요인일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정책, 절차 등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지배구조에 관한 요구사항
- 교육, 훈련 및 실무경험 관련 요구사항
-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지속가능성인증인 및 일반 대중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고충처리제도
- 윤리적 요구사항 위반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보고 의무
-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규제기관의 모니터링 및 제재 절차

*신규 정보와 사실과 상황의 변화에 대한 고려*

**R5120.9** 지속가능성인증인이 특정 위협이 제거되었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 정보 또는 사실과 상황의 변화를 인지한 경우, 인지한 사항에 따라 해당 위협을 재평가해야 한다.

5120.9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주의를 기울이면 다음과 같은 신규 정보가 드러나거나 사실 및 상황이 변화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 (a) 위협의 수준에 영향을 미침.
- (b) 식별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용한 안전장치의 적정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인증인의 결론에 영향을 미침.

5120.9 A2 신규 정보로 인해 새로운 위협이 식별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해당 위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경우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참조: 문단 R5120.7 및 R5120.10)

### 위협에 대한 대처

**R5120.10** 본인이 식별한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수용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인증인은 다음과 같이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a)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를 포함하여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제거함.
- (b) 적용가능한 경우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장치를 적용함.
- (c) 특정 전문업무의 수행을 거절하거나 종료함.

### 위협 제거 조치

5120.10 A1 사실 및 상황에 따라서는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제거함으로써 해당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전문업무의 수행을 거절하거나 종료해야만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위협을 발생시킨 상황을 제거할 수 없고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 안전장치

5120.10 A2 안전장치란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취하는 조치이다.

### 중요한 판단사항과 전반적인 결론에 대한 고려

**R5120.11**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발생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본인이 취하고자 하는 조치가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혹은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전반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때 인증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a) 중요한 판단사항 또는 도출한 결론을 검토함.
- (b)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 테스트를 이용함.

## 개념체계 적용 시 기타 고려사항

### 편견

- 5120.12 A1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편견은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 5120.12 A2 전문가적 판단을 할 때 인지해야 할 잠재적 편견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기준점 편견: 초기 정보를 기준점으로 사용하여 후속 정보를 부적절하게 평가하는 경향
  - 자동화 편견: 인간의 추론이나 모순된 정보로 인해 그러한 결과물이 신뢰성이 있는지 또는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자동화시스템에서 생성된 결과물을 선호하는 경향
  - 가용성 편견: 즉시 떠오르거나 쉽게 이용 가능한 사건이나 경험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
  - 확증 편견: 기존의 신념과 상반되거나 그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정보보다 기존의 신념을 확증하는 정보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
  - 집단 사고: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개인의 창의성과 책임감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비판적 추론이나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경향
  - 과신 편견: 위험이나 기타 판단 또는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 대표성 편견: 대표적이라고 가정하는 경험의 패턴에 근거하여 이해하는 경향
  - 선택적 지각: 개인의 기대가 특정 사안이나 사람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
- 5120.12 A3 편견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추가 투입자료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함.
  - 평가 과정의 일환으로 적절한 이익제기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당사자의 자문을 받음.
  - 전문가적 개발의 일환으로 편견의 식별과 관련된 훈련을 받음.

### 회계법인의 문화

- 5120.13 A1 회계법인의 내부분화가 제5부에 제시된 윤리강령 및 기타 조항과 일치하는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옹호할 때 지속가능성인증인은 개념체계를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5120.13 A2 회계법인 내에서의 윤리문화 옹호는 다음 경우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 (a) 리더와 관리자급이 회계법인의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옹호하고,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이 회계법인의 윤리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
- (b) 윤리 문화를 옹호하는 적절한 교육 및 훈련 과정, 관리 프로세스, 평가 및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 (c) 내부고발자를 포함하여 실제 또는 의심되는 불법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 (d) 회계법인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는 경우

5120.13 A3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본인의 직위와 연공서열을 고려하여 소속 회계법인 내에서 윤리적 문화를 장려하고 도모함.
- (b) 본인 또는 회계법인이 업무관계나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및 회사와 거래함에 있어 윤리적 행동을 보임.

###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고려사항

#### *회계법인의 문화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5120.14 A1 품질관리기준서 1과 같은 품질관리기준은 지속가능성인증을 위한 품질관리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의 맥락에서 회계법인의 문화를 다룰 수 있다.

#### *독립성*

5120.15 A1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은 5400부터 5700까지와 제4B부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독립성은 공정 강령 및 성실 강령과 관계가 있으며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정신적 독립성(Independence of mind).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시키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개인이 성실하게 행동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며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발휘하도록 함.
- (b) 외관상 독립성(Independence in appearance).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가, 회계법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의 성실, 공정성 또는 전문가적 의구심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중요한 사실이나 상황을 회피함.

5120.15 A2 5400부터 5700까지와 제4B부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인증인과 회계법인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하는 데 적용되는 개념체계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적용되는 개념체계와 동일하다. 문단 5120.6 A3에 규정되어 있는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의 유형은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대한 위협의 유형과 동일하다.

5120.15 A3 문단 5120.6 A1 및 5120.8 A2에 설명된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 정책 및 절차는 독립성에 대한 위협의 식별과 평가에 관련된 요소도 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맥락에서 그러한 조건, 정책 및 절차의 예로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발행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이 설계, 구축, 운영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들 수 있다.

### 전문가적 의구심

5120.16 A1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발행한 기준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인증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해야 한다. 전문가적 의구심과 5110에 설명되어 있는 윤리강령은 상호관련성이 있는 개념이다.

5120.16 A2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이 적용되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개별적 또는 종합적으로 윤리강령을 준수하면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성실 강령에 따라**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증인은 다음과 같이 성실 강령을 준수한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입장에 대해 우려 사항을 제기할 때 솔직하고 정직해야 함.
    - 특정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와 관련하여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일관성이 없는 정보에 관해 질의하고 중대하게 잘못되었거나 오도할 수 있는 주장과 관련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함.
    - 달리 행동하라는 압력에 직면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본인 또는 조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적절하게 행동하는 강인함을 갖춤.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함.
      - (a) 딜레마 및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함.
      - (b) 상황상 필요한 경우 해당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이익을 제기함.
- 이렇게 함으로써 인증인은 증거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게 되며 이러한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하는 데 기여한다.
- **공정 강령에 따라**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으로 인해 전문가적 또는 사업적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a) 편견
    - (b) 이해상충
    - (c) 개인, 조직, 기술 또는 기타 요인의 부당한 영향 또는 그에 대한 부당한 의존
- 예를 들어 인증인은 다음과 같이 공정 강령을 준수한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유착과 같은 전문가적 또는 사업적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나 관계를 인식함.

- (b) 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증거가 충분하고 적합한지를 평가할 때 해당 상황 및 관계가 인증인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

이렇게 함으로써 인증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하게 된다.

-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에 따라*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만족스러운 전문업무를 제공하기에 합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기준 및 법규에 따라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과 같이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을 준수할 수 있다.

- (a)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적절하게 식별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속한 산업과 해당 의뢰인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지식을 활용함.

- (b) 적절한 인증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함.

- (c) 특정 상황에서 증거가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할 때 관련 지식을 활용함.

이렇게 함으로써 인증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하게 된다.



## 5270 윤리강령의 위반 압력

### 개요

- 5270.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270.2 지속가능성인증인에게 압력이 가해지거나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압력 위협 또는 기타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5270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데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R5270.3**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타인의 압력에 굴복하여 윤리강령의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b) 인증인(practitioner)이 타인이 윤리강령을 위반하게 될 것임을 알거나 위반하게 되리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타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5270.3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해 전문업무를 수행할 때 압력위협과 같이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압력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으며 다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
- 회계법인 내부(예: 동료 또는 상급자)
  - 외부의 개인 또는 조직(예: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회계법인의 공급자, 고객, 대출기관)
  - 내부 또는 외부의 목표 및 기대
- 5270.3 A2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압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이해상충 관련 압력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관여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 선정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이 다른 상대방 대신 자신을 선정하라고 가하는 압력
- 5310(이해상충)부분도 참조한다.
- 충분한 전문성 또는 정당한 주의 없이 업무를 수행하라는 압력
    - 업무 범위를 부적절하게 축소하라는 상급자의 압력
    - 기술이나 훈련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현실적인 일정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라는

상급자의 압력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작성했으며 인증절차의 대상인 미래예측정보에 사용된 전략과 관련된 가정에 관해 문의하지 말라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압력

- 청탁 관련 압력

- 뇌물 또는 기타의 청탁을 수령(예: 잠재적인 또는 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선물이나 접대를 수령)하라는 동료의 압력

5340(선물 및 접대를 포함하는 청탁) 부분도 참조한다.

- 법규 위반 관련 압력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환경규제 또는 안전규제에 대한 잠재적 위반을 간과하라는 압력

5360(법규위반에 대한 대응) 부분도 참조한다.

- 보수 수준 관련 압력

- 전문가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자원(인적, 기술적, 지적 자원 포함)을 제공하지 않는 보수 수준으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상급자 또는 동료의 압력

5330(보수 및 기타 유형의 보상) 부분도 참조한다.

5270.3 A3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압력을 행사하는 특정 개인의 의도와 압력의 성격 및 정도
- 해당 상황에 대한 법규 및 전문가 기준의 적용
- 윤리적 행위의 중요성을 보여주거나 강조하는 정도와 임직원이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하는 회계법인의 문화 및 리더십. 예를 들어, 비윤리적인 행위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는 압력으로 인해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압력에 대처하는 윤리규정 또는 인사정책 등과 같이 회계법인이 확립한 정책 및 절차(있는 경우)

5270.3 A4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압력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논의하고 이러한 상황을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것은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및 상의를 할 때는 비밀유지 강령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논의 및 상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당사자와 해당 사안을 논의함.
- 인증인의 상급자가 압력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 상급자와 해당 사안을 논의함.
- 적절한 경우 회계법인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을 설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계법인 내의 다음 당사자

등에게로 해당 사안을 확산함.

- 고위 경영진
- 내부 또는 외부감사인
- 지배기구
- 비밀이 보장되는 윤리신고센터(confidential ethics hotline)와 같은 확립된 방법을 이용하여 윤리규정과 내부고발정책 등 회계법인의 정책에 따라 해당 사안을 공개함.
- 다음 사람들과 상의함.
  - 동료, 상급자, 인사담당자 또는 다른 지속가능성인증인
  - 관련 전문가 기구나 감독기구 또는 산업 협회
  - 법률전문가

5270.3 A5 압력으로 인해 발생된 위협을 제거하는 조치의 예로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압력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회사와 더 이상 관련되지 않도록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해 수행되는 특정 책임 및 직무의 재구성 또는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

## 문서화

5270.4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당 사실
- 커뮤니케이션 사항 및 사안을 논의한 상대방
- 고려된 조치사항
- 해당 사안에 대한 대처 방법

## 5300 개념체계 적용

### 개요

5300.1 5300부터 5390까지는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이 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관련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단락이 전문업무,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를 포함하여 인증인(practitioner)이 직면할 수 있는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사실 및 상황을 기술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념체계에 따라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이러한 사실 및 상황에 유의하여야 한다.

[문단 5300.2부터 5300.3까지는 공란으로 둔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R5300.4** 지속가능성인증인은 5110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문단 R5300.5부터 5300.5 A1까지는 공란으로 둔다]

5300.5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직위가 높을수록 정보 열람 권한 및 기회는 물론이고 회계법인 내 타인이 수립, 도출 및 이행하는 여러 정책, 의사결정 사항, 조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및 기회도 증가하게 된다.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회계법인 내 본인의 직위 및 연공서열 수준을 감안하여 회계법인 내에서 윤리적 문화를 장려하고 도모하며, 문단 5120.13 A3에 따라 인증인 또는 회계법인이 업무관계 또는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및 회사와 거래할 때 윤리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행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다음 사항을 도입, 시행 및 감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윤리 관련 교육 및 훈련 과정
- 윤리적 문화를 도모하는 절차와 업무수행 평가 및 보상에 대한 준거기준
- 윤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정책
-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 및 절차 (참조: 문단 5120.13 A1부터 5120.13 A3까지)

#### 위협의 식별

5300.6 A1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은 다양한 사실 및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위협의 유형은 문단 5120.6 A3에 기재되어 있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해 전문업무를 수행할 때 지속가능성인증인에게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 및 상황의 예를 각 위협의 유형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이기적위협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신규 업무수임을 위해 낮은 보수를 제시했으며 관련 전문가 기준을 준수하며 전문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보수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친밀한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결과와 연계된 인센티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본인이 속한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이전에 수행한 전문서비스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b) 자기검토위협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해당 시스템의 운영 효과성에 대한 인증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절차의 대상인 정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의 작성에 기여하는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이외에 그 결과가 의뢰인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절차의 대상인 지속가능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는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그 결과가 의뢰인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절차의 대상인 가치평가 또는 예측 업무를 제공한 바 있는 경우

(c) 변호위협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분을 알선하는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제3자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간 소송 또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대신하여 입법에 유리하도록 로비하는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대신하여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특정 이니셔티브,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

(d) 유착위협

- 지속가능성인증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인 경우

- 최근까지 업무수행리더로 있었던 개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이 되거나 인증업무의 대상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이 되는 경우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장기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적절한 검토담당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개인이 업무를 수행한 개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e) 압력위협

-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관련 업무에서 제외되거나 회계법인에서 면직될 것이라는 위협을 당하는 경우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쟁점 사안에 대하여 본인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그 의뢰인의 판단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압력을 느끼는 경우
- 부적절한 지속가능성 관련 분석이나 결론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예정된 승진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선물을 수령했으며 그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경우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위협의 식별*

5300.6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전문업무를 수행할 때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및 상황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기적위협
  - 가용한 데이터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술이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증인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활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없거나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에게 접근하지 못할 수 있음.
- 자기검토위협
  - 기술이 인증인이나 회계법인의 지식, 전문성 또는 판단을 사용하여 설계 또는 개발되었음.

**위협의 평가**

5300.7 A1 문단 5120.6 A1 및 5120.8 A2에서 기술하고 있는 조건, 정책 및 절차는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정책 및 절차는 다음과 관련될 수 있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및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운영환경
- (b)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의 운영환경

5300.7 A2 위협 수준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인의 평가는 전문서비스의 성격 및 범위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및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운영환경*

5300.7 A3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위협 수준에 대한 평가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public interest entity)인지 여부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감사의뢰인인지 여부
- (c)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비인증업무의 의뢰인인지 여부

예를 들어,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면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된 공정 강령의 준수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위협이 발생한다고 인식될 수 있다.

5300.7 A4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리더십을 포함하는 기업지배구조는 윤리강령의 준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위협 수준 평가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의뢰인의 운영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의 선임시 경영진 이외의 적절한 개인이 이를 추진하거나 승인함.
- 의뢰인이 경영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험과 연륜을 갖춘 자질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뢰인이 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을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공정한 선정을 보장하는 내부절차를 구축하고 있음.
- 의뢰인이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

5300.7 A4a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윤리강령 준수 위협 수준에 대한 평가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가치사슬의 양적·질적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되거나 서로 다른 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경우,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의 운영환경*

5300.7 A5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위협 수준 평가는 인증인의 회계법인 내 다음과 같은 업무환경과 운영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회계법인의 경영진이 윤리강령의 준수를 장려하고 지속가능성인증을 제공할 때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공익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확립하고 있는 경우

- 모든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 또는 절차
- 윤리강령의 준수를 촉진하는 보상, 성과평가 및 징계관련 정책 및 절차
- 단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의 수입금액에 대한 의존도 관리
- 회계법인 내에서 업무수행리더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제공하는 결정을 포함한, 윤리강령의 준수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교육, 훈련 및 경험 관련 요구사항
- 내부 및 외부의 우려 및 불만 사항 제기를 용이하게 하고 처리하는 절차

5300.7 A6 기술 사용과 관련된 위험 수준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인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인증인의 회계법인 내 업무환경 및 운영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기술에 대한 기업의 감독 및 내부통제 수준
- 기술의 품질 및 기능에 대하여 제3자가 수행한 평가
- 모든 관련 직원이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하고, 목적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적 적격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새로운 정보 또는 사실 및 상황의 변동에 대한 고려*

5300.7 A7 새로운 정보 또는 사실 및 상황의 변동은 다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a) 위협의 수준
- (b) 적용된 안전장치가 의도했던 대로 식별된 위협에 지속적으로 대처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인의 결론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적용했던 안전장치가 더 이상 위협에 대처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인증인은 개념체계를 적용할 때 이들 위협을 재평가하고 이에 따라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참조: 문단 R5120.9 및 R5120.10)

5300.7 A8 위협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또는 사실 및 상황 변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전문서비스의 업무범위가 확장된 경우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개거래법인이 되거나 다른 사업단위를 인수한 경우
- 회계법인이 다른 회계법인과 합병한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인증의뢰인 및 다른 의뢰인과 공동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두 의뢰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의 개인적인 관계 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위협에 대한 대처

5300.8 A1 문단 R5120.10부터 5120.10 A2에서는 수용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 안전장치의 예

5300.8 A2 안전장치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상황에서 위협에 대처하는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업무에 추가적인 시간 및 능력있는 인력을 추가 배정함으로써 이기적위협에 대처
- 팀원이 아닌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수행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문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검토위협에 대처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비인증업무에 대하여 관련 인증업무팀과 완전히 독립적인 리더와 팀을 배정함으로써 자기검토위협, 변호위협 또는 유착위협에 대처
- 다른 회계법인에게 업무의 일부를 수행 또는 재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기적위협, 자기검토위협, 변호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에 대처
- 서비스 또는 제품을 추천하는 대가로 수령하는 알선수수료 또는 수수료 약정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이기적위협에 대처
- 비밀을 요하는 성격의 사안을 취급할 때 팀을 구분함으로써 이기적위협에 대처

5300.8 A3 제5부의 나머지 부분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전문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기술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의 예를 포함하고 있다.

### 적절한 검토담당자

5300.8 A4 적절한 검토담당자란 수행업무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이러한 적절한 검토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R5300.9** 이 윤리기준에 따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 구성원 중 커뮤니케이션할 상대방을 결정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배구에 속한 소집단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에는 지배기구 구성원 모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들 모두를 그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300.9 A1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을 결정하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a) 상황의 성격 및 중요성
- (b)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할 사항

5300.9 A2 지배기구에 속한 소집단의 예로는 감사위원회, 지속가능성 정보의 감독을 담당하는 기타 위원회, 지배기구를 구성하는 개인 등이 있다.

**R5300.10** 지배기구의 책임뿐 아니라 경영자 책임도 맡고 있는 개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해당 개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 대상인 지배기구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충분히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5300.10 A1 단일 소유주가 회사를 경영하고 다른 누구도 지배기구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소규모 회사와 같이 몇몇 경우에는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경영하는 데 관여한다. 이러한 경우, 경영자 책임을 맡고 있는 개인(들)에게 해당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한다면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게 된다.

## 5310 이해상충

### 개요

- 5310.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310.2 이해상충으로 인해 공정 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며 기타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a)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및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특정 사안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른 의뢰인을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b) 특정 사안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이해관계와 인증인(practitioner)이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 5310.3 5310에서는 이해상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 있는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5부 또는 제4B부에 따라 독립성 요구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R5310.4**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이해상충 때문에 전문가적 또는 사업적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310.4 A1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수행 중 인수 거래와 관련될 수 있는 비밀정보를 입수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인증을 인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동 거래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동일 기업을 인수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다른 의뢰인에게 동시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자문이 의뢰인들의 경쟁상황과 관련있는 경우
  - 서로 법률분쟁 중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다른 의뢰인을 동일 사안과 관련하여 대리하는 경우
  - 인증인의 배우자가 재무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려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주요 경쟁사와 합작투자 또는 이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경쟁상황에 관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 회계법인이 인수에 관심이 있는 사업을 인수하려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해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의 잠재적 판매자와 로열티 또는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 관한 자문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 이해상충의 식별

### 일반사항

**R5310.5** 신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업무 또는 사업상 관계를 수용하기 전에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이해상충을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하나 이상의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을 식별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에 대한 식별이 포함된다.

- (a) 당사자 간에 관련된 이해관계와 기타 관계의 성격
- (b) 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가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5310.5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업무의 수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걸쳐 실제의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를 식별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때, 효과적인 이해상충 식별 프로세스가 도움이 된다. 이해상충 식별 프로세스는 의뢰인이나 잠재적인 의뢰인 등과 같은 외부 당사자가 식별한 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제의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조기에 식별할수록 인증인이 이해상충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5310.5 A2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식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차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

- 제공되는 전문업무의 성격
- 회계법인의 규모
- 고객 기반의 규모 및 성격
- 회계법인의 구조(예: 사무소의 개수 및 지리적 위치)

5310.5 A3 의뢰인의 수용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320(업무수입의 승낙)에서 제시하고 있다

### 상황의 변화

**R5310.6**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 등의 성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5310.6 A1 업무수행 과정 중 서비스,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변화는 특히 지속가능성인증인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처음에는 분쟁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인증인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네트워크 법인

**R5310.7** 회계법인이 네트워크의 일원인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네트워크 법인의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에 기인하여 존재하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다고 믿을 사유가 있는 이해상충을 고려해야 한다.

5310.7 A1 네트워크 법인이 관련된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를 식별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제공되는 전문업무의 성격
- 네트워크 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뢰인
- 모든 관련 당사자의 지리적 위치

### 이해상충 위협

5310.8 A1 일반적으로 전문서비스와 관련 당사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안이 직접적으로 관련될수록 위협의 수준이 수용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5310.8 A2 이해상충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및 다른 의뢰인과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업무를 수임하였으나 이들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에 비밀정보의 무단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가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회계법인 내에 전문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부문이 존재하며, 이러한 조직체계가 이들 사업부문 간에 비밀정보 교류를 방지하는 차단벽 역할을 하는 경우
- 고객 파일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 및 절차
-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 및 리더가 날인한 비밀유지약정서
- 물리적 및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비밀정보의 분리
- 구체적이고 특화된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5310.8 A3 이해상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비밀유지에 관한 명확한 정책 및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별도 팀을 운영함.
- 핵심적인 판단 사항과 결론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이해상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수행된 업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함.

### 정보공개 및 동의

#### 일반사항

**R5310.9** 이해상충 위협에 대처할 때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전문가적 판단을 발휘하여 이해상충의 성격 및 그 중요도 측면에서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 및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310.9 A1 구체적인 정보공개 및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고려할 관련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이해상충을 발생시키는 상황
-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

- 발생 가능한 문제의 성격
- 특정 사안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

5310.9 A2 정보의 공개 및 동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공개. 일반적인 상업상 관행과 같이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어느 한 의뢰인(예: 특정 전문서비스 및 특정 시장에 국한함)을 위해서만 배타적으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공개. 이러한 공개는 의뢰인의 일반적인 동의를 가능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인증인은 계약서에 계약의 일반 조건으로 일반적 공개를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공개. 의뢰인이 이해상충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히 상세한 수준으로 영향을 받는 의뢰인에게 이해상충 상황을 공개. 이러한 구체적인 공개는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적용할 안전장치와 관련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
- 동의. 의뢰인들이 이해상충 상황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가지고 있고, 의뢰인들이 해당 이해상충의 존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해상충 상황에 대한 의뢰인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310.9 A3 일반적으로 취해야 할 필요조치는 다음과 같다.

- (a) 이해상충의 성격 및 발생된 이해상충에 대처한 방법을 이해상충의 영향을 받는 의뢰인에게 공개함
- (b)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경우, 이해상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문서비스 수행에 대한 동의를 얻음.

5310.9 A4 이러한 정보공개 및 동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 이해상충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성격
- (b)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적용한 안전장치(해당되는 경우)
- (c) 획득한 동의의 내용

#### *명시적 동의가 거절된 경우*

**R5310.10**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문단 R5310.9에 따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나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증인은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이해상충에 이를 수 있는 전문서비스의 수행을 종료하거나 거절함.
- (b) 관련 관계를 종료하거나 관련 이해관계를 청산하여 위험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낮춤.

**비밀유지**

*일반사항*

**R5310.11**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를 공개 또는 공유하거나 제3자의 자문을 구하는 등의 경우에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비밀유지 강령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310.11 A1 비밀유지 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은 5114에 규정되어 있다.

*동의를 얻기 위한 정보공개로 인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R5310.12** 명시적 동의를 얻기 위해 하는 구체적인 정보공개로 인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회계법인은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관련 업무를 수임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 (a) 회계법인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의뢰인과 대립 관계에 있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변호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함.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다른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개의 팀 간에 비밀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음.
- (c) 회계법인이 해당 전문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의뢰인 또는 기타의 관련 제3자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회계법인이 해당 업무를 수임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가 결론 내릴 것으로 확신함.

5310.12 A1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에 동의를 구하면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 회계법인의 한 의뢰인에 대한 적대적 매수를 시도하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거래 관련 서비스
- 부정행위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한 의뢰인을 위해 수행한 업무로부터 비밀정보를 입수한 회계법인이 동일한 부정행위의 혐의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해 실시하는 포렌직 조사

**문서화**

**R5310.13** 문단 R5310.12에서 제시하는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 사항을 모두 문서화해야 한다.

- (a) 해당 상황의 성격(인증인이 수행하는 역할을 포함)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및 다른 의뢰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팀 간 정보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구체적인 조치
- (c) 대상 업무를 수임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

## 5320 업무수입

### 개요

- 5320.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320.2 신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관계를 수용하거나 기존 업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5320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의뢰인 및 업무 수입

##### 일반사항

- 5320.3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그 소유주, 경영진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의문시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 성실 강령 또는 전문가적 품위 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알려지면 이러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에는 의뢰인이 불법행위, 부정행위, 미심쩍은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재무 및 비재무 보고 관행 또는 기타의 비윤리적 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포함된다.
- 5320.3 A2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그 소유주, 경영진과 지배기구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지식 및 이해
  - 기업지배구조 또는 내부통제를 개선함으로써 의문시되는 문제들에 대처하고자 하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확약
- 5320.3 A3 팀이 전문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러한 역량을 습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입하면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험을 발생시킨다.
- 5320.3 A4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다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사업의 성격;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영업활동의 복잡성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가치사슬의 양적·질적 특징
    - 해당 업무와 관련된 요구사항
    - 수행 예정 업무의 목적, 성격 및 범위



- 관련 산업이나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
- 해당 업무와 관련된 규제상 또는 보고상의 요구사항에 관한 경험
- 전문가 기준과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법인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품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서 1과 같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실행한 정책 및 절차
-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상업적 우선순위와 시장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보수 수준 및 해당 보수 수준과 필요 자원의 연계성 정도

5320.3 A5 이기적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필요한 적격성을 갖춘 직원을 충분히 투입함.
- 업무수행을 위해 현실적인 업무일정을 수립함.
-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활용함.

## 지속가능성인증인의 교체

### 일반사항

**R5320.4** 다음의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특정 업무의 수임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a) 잠재적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다른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수행했던 업무를 수임하기를 요청받은 경우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해 다른 인증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수임하기 위한 입찰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 (c) 다른 인증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완업무 또는 추가 업무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5320.4 A1 업무의 수임을 거절하는 데는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안전장치를 적용하더라도 사실 및 상황에 기인하여 발생한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업무수임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관련된 모든 사실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5320.4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현 인증인 또는 전임 인증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완 업무 또는 추가 업무의 수임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정보의 불완전으로 인해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5320.4 A3 이러한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요소 중 하나는 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현 인증인 또는 전임 인증인과의 접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입찰신청서에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업무수임 예정 인증인에게 이러한 접촉은 해당 업무의 수임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5320.4 A4 이러한 이기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현 인증인 또는 전임 인증인에게 업무수입 예정 인증인 업무수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예를 들어, 질의를 통해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관련 사실이 드러나거나 업무수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 인증인 또는 전임 인증인과 의견불일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제3자에게 질의하거나 의뢰인의 고위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에 관한 배경 정보를 조사하는 것과 같이 다른 정보 출처에서 관련 정보를 획득함.

*현 인증인 또는 전임 인증인과의 커뮤니케이션*

5320.5 A1 업무수입 예정 인증인이 현 인증인 또는 전임 인증인과의 논의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허락(가급적이면 서면으로)이 필요할 것이다.

**R5320.6** 현 인증인 또는 전임 인증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경우 업무수입 예정 인증인은 발생 가능한 위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른 합당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업무수입 예정 인증인과의 커뮤니케이션*

**R5320.7** 현 인증인 또는 전임 인증인은 업무수입 예정 인증인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회신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요청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 (b) 모든 정보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함.

5320.7 A1 현 인증인 또는 전임 인증인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 인증인 또는 전임 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관한 사안을 업무수입 예정 인증인과 논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또는 이러한 논의가 요구되는지 여부는 업무의 성격과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현 인증인 또는 전임 인증인이 이러한 논의를 하도록 허락했는지 여부
- (b)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적 및 윤리적 요구사항

5320.7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하거나 공개해야 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적절한 상황은 문단 5114.3 A1에 제시되어 있다.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수입 변경*

**R5320.8**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경우에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업무수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알고 있는 사실과 정보 그리고 업무수입 예정 인증인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현 인증인 또는 전임 인증인에게 요청해야 한다. 문단 R5360.21 및 R5360.22에서 규정하는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현 인증인 또는 전임 인증인이 이러한 사실정보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현 인증인 또는 전임 인증인은 해당 정보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의뢰인과 관련된 사안을 현 인증인 또는 전임 인증인이 업무수입 예정 인증인과 논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경우, 현 인증인 또는 전임 인증인은 업무수입 예정 인증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업무수입 예정 인증인은 업무의 수입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불허 또는 거절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의뢰인 및 업무의 유지

**R5320.9**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수입한 업무가 반복적 성격의 업무인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해당 업무의 계속 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320.9 A1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잠재적 위험은 지속가능성인증인이 해당 위험을 사전에 알았다라면 그 수입을 거절했을 업무를 수입한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실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험은 핵심성과지표가 긍정적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측정 방법론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지속가능성 보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기술 결과물의 사용

**R5320.10**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해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인증인은 그러한 사용이 의도된 목적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320.10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기술의 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기술을 통해 수행할 업무의 성격
- 기술 결과물에 대하여 예상되는 사용 정도 또는 의존 정도
- 인증인이 해당 기술과 의도된 목적에 대한 해당 기술의 적합성을 이해, 사용,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사용된 기술이 의도된 목적에 대하여 적절하게 테스트 및 평가되었는지 여부
- 해당 기술에 대한 이전의 경험 및 특정 목적에 대한 사용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 해당 기술의 설계, 개발, 구축, 운영, 유지보수, 모니터링,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독
- 기술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사용을 감독하는 절차 등 기술 사용과 관련된 통제
- 데이터 및 관련 의사결정 등 기술에 대한 투입자료와 기술 사용 과정에서 개인이 내린 의사결정의 적절성

**기타 고려사항**

5320.11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기술 결과물의 사용을 고려하는 경우, 인증인이 회계법인 내에서 그러한 사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5320.11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390에 제시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된다.

## 5325 업무품질 검토담당자 및 기타 적절한 검토담당자의 공정성

### 개요

- 5325.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5120에 제시된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325.2 검토가 진행중인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업무의 수행책임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업무품질 검토담당자를 임명하는 것은 공정 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 5325.3 5325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업무품질 검토담당자의 공정성에 대하여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 5325.4 업무품질 검토담당자는 5300.8 A4에 설명된 적절한 검토담당자의 예이기도 하다. 따라서 5325의 적용지침은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식별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수행된 업무를 검토하기 위해 적절한 검토담당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적용지침

#### 일반사항

- 5325.5 A1 품질업무는 전문가 기준 및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수행과 이에 대한 보고를 통해 달성된다. 예를 들어 품질관리기준서 1은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규정하며, 회계법인에 업무수행과 관련된 품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대응에는 품질관리기준서 2에 따라 업무품질 검토를 다루는 정책 또는 절차의 수립이 포함된다.
- 5325.5 A2 업무품질 검토담당자는 회계법인이 업무품질 검토를 수행하도록 선임한 회계법인 소속의 리더, 파트너 또는 기타 개인이나 외부의 개인이다.

#### 위협의 식별

- 5325.6 A1 업무품질 검토담당자로 선임된 개인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a) 이기적위협
    - 두 명의 업무수행리더가 각각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업무품질 검토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b) 자기검토위협
    - 이전에 업무수행리더로 근무했던 개인이 해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업무품질 검토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c) 유착위협

- 업무품질 검토담당자 역할을 수행 중인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여하는 다른 개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해당 개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인 경우

(d) 압력위협

- 업무에 대한 업무품질 검토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리더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

### 위협의 평가

5325.7 A1 업무품질 검토담당자로 선임된 개인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해당 개인의 역할 및 연공서열
- 해당 개인이 업무에 관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
- 해당 개인이 이전에 해당 업무에 관여한 기간 및 해당 개인의 역할
- 해당 개인이 업무품질 검토책임자로 선임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당 업무에 관여한 시기 및 이후 업무 상황에 발생한 관련성 있는 변화
- 이전에 해당 업무에 관여할 당시 해당 개인의 중대한 판단이 필요했던 문제의 성격과 복잡성

### 위협에 대한 대처

5325.8 A1 압력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회계법인 내에서 보고 책임을 재배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5325.8 A2 자기검토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개인을 업무품질 검토담당자로 선임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업무제한기간)을 두는 것을 들 수 있다.

### 업무제한기간

5325.8 A3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은 업무수행리더가 업무품질 검토담당자 역할을 맡기 전의 업무제한기간을 자격 조건으로 명시하는 정책 또는 절차를 수립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을 통해 공정 강령의 준수와 품질업무의 일관된 수행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품질관리기준서 2는 2년의 업무제한기간을 요구한다.

5325.8 A4 품질관리기준서 2와 같은 품질관리기준이 요구할 수 있는 업무제한기간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장기간의 유대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독립성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5540의 리더 교체 요구사항과 구분되며, 해당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 5330 보수 및 기타 유형의 보상

### 개요

- 5330.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험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
- 5330.2 보수 및 기타 보상 약정의 수준과 성격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5330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적용지침

#### 보수 수준

- 5330.3 A1 보수 수준은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관련 전문가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전문서비스를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5330.3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보수를 제시할 수 있다. 다른 인증인(practitioner)보다 낮은 보수를 제시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시된 보수가 너무 낮아서, 그 수준으로는 해당 업무에 적용되는 전문가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험이 발생한다.
- 5330.3 A3 이러한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계약조건, 특히 보수산정 기준과 제시된 보수에 포함되는 전문서비스의 범위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 보수 수준을 감독기관 등의 독립적인 제3자가 설정하는지 여부
- 5330.3 A4 이러한 이기적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보수 수준 또는 업무의 범위를 조정함.
  - 수행한 업무를 적절한 검토담당자가 검토하도록 함.

#### 성공보수

- 5330.4 A1 일부 비인증업무는 성공보수 조건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공보수로 인해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험, 특히 공정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5330.4 A2 이러한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 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업무의 성격
  - 가능한 보수의 범위

- 보수의 산정기준 또는 지표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수행한 업무결과를 이용할 것으로 예정된 자에게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함께 보수의 산정근거를 제시함.
-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
- 해당 거래의 산출물이나 결과를 독립적인 제3자가 검토하는지 여부
- 보수 수준을 감독기관 등의 독립적인 제3자가 설정하는지 여부

5330.4 A3 이러한 이기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수행한 업무를 해당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가 검토하도록 함.
- 보수의 산정근거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된 사전동의서를 징구함.

5330.4 A4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성공보수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은 문단 5410 및 905에 제시되어 있다.

#### 알선수수료 및 기타수수료

5330.5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관련하여 알선수수료 또는 기타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공정 강령 및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이러한 알선수수료 등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인증인에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소개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제3자에게 소개하는 대가로 해당 제3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판매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3자(예: 소프트웨어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5330.5 A2 이러한 이기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3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판매하는 실적과 연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경우, 해당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얻음으로써 이기적위협에 대처할 수 있음.
- 서비스 또는 제품 추천의 대가로 다른 지속가능성인증인 또는 제3자로부터 수령하거나 지급하는 알선수수료 또는 기타 수수료 약정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이기적위협에 대처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의 매수 또는 매각

5330.6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다른 회계법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회계법인의 소유자인 개인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인수대가는 5330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5340 청탁(선물 및 접대를 포함)

### 개요

- 5340.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340.2 청탁을 하거나 받는 행위는 윤리강령(특히 성실, 공정 및 전문가적 품위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 5340.3 5340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전문서비스를 수행할 때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청탁을 하거나 받는 행위에 대하여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5340은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청탁을 하거나 받을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5340.4 A1 청탁이란 다른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물, 상황 또는 행동을 의미하나 반드시 다른 개인의 행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탁의 범위에는 지속가능성인증인과 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잠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간의 간소한 접대행위부터 법규위반에 이르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다. 청탁은 다음과 같이 그 형태가 다양하다.

- 선물
- 접대
- 유흥
- 정치자금 기부 또는 자선기금 기부
- 우정 및 충성심에 호소하는 행위.
- 고용 기회 또는 기타의 상업적 기회
- 특혜, 우선권 또는 특전

#### 법규에서 금지 대상인 청탁

- R5340.5** 뇌물 및 부패와 관련된 법규와 같이 특정 상황 하에서 청탁을 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법규에서 금지 대상이 아닌 청탁

5340.6 A1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탁을 하거나 받는 것이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행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의도가 수반되는 청탁*

**R5340.7** 수령자 또는 다른 개인의 행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의도가 수반되는 청탁인 경우 또는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가 이러한 의도가 수반되는 청탁이라고 결론 내릴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이러한 청탁을 해서는 아니되며 타인에게 이러한 청탁을 하도록 권유해서도 아니된다.

**R5340.8** 수령자 또는 다른 개인의 행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의도가 수반되는 청탁이라고 결론 내린 경우 또는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가 이러한 의도가 수반되는 청탁이라고 결론 내릴 것 같다고 지속가능성인증인이 판단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이러한 청탁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타인에게 이러한 청탁을 받도록 권유해서도 아니된다.

5340.9 A1 청탁으로 인해 개인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 해당 청탁은 해당 개인의 행위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부적절한 영향은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수령자와 관계가 있는 다른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인증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개인의 관점에서 무엇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구성하는지를 고려하는 경우 윤리강령은 지속가능성인증인에게 적절한 준거의 기준이 된다.

5340.9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수령자 또는 다른 개인의 행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수반되는 청탁을 하거나 받는 것 또는 타인에게 이러한 청탁을 하거나 받도록 권유하는 것은 성실 윤리강령의 위반이다.

5340.9 A3 행위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실제의 또는 인지된(perceived) 의도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판단을 발휘해야 한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할 관련 요소로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청탁의 성격, 빈도, 가치 및 누적 효과
- 청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또는 의사결정 시점과 청탁을 한 시점 간의 차이
- 종교의 기념일 또는 결혼과 관련한 선물 제공과 같이 해당 상황에서 청탁이 관례적이거나 문화적인 관습인지 여부
- 업무 회의와 관련하여 점심을 대접하거나 대접받는 경우와 같이 청탁이 전문서비스에 부수적인지 여부
- 청탁이 특정 개인에게만 제공되는지 또는 광범위한 그룹에 제공되는지 여부. 광범위한 그룹은 회계법인의 내부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공급업자처럼 외부에 있을 수 있음.
- 청탁을 하거나 받는 개인의 회계법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서의 역할 및 직위
- 청탁 수령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정책 및 절차의 위반에 해당하는 점을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알고 있는지 또는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청탁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제공되는지 여부
- 수령자가 청탁을 요구 또는 요청했는지 여부

- 청탁 제공자에 대해 알려진 이전의 행위 또는 평판

추가 조치에 대한 고려

5340.10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행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실제의 또는 인지된 의도가 수반되는 청탁이 제공됐다는 점을 알게 된 경우에는 문단 R5340.7 및 R5340.8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5340.10 A2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회계법인의 고위경영진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에 청탁 제공에 대해 통지함.
-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사업관계를 수정하거나 종료함.

*행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수반되지 않는 청탁*

5340.11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수령자 또는 다른 개인의 행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실제의 또는 인지된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개념체계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된다.

5340.11 A2 이러한 청탁이 사소하고 경미하다면 발생하는 위협은 수용가능한 수준에 있을 것이다.

5340.11 A3 지속가능성인증인이 행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실제의 또는 인지된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탁을 하거나 받음으로 인해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이기적위험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인수 예정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경우
- 유착위험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잠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스포츠 행사에 정기적으로 초대하는 경우
- 압력위험
  -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 접대의 성격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접대를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5340.11 A4 이러한 청탁을 하거나 받음으로 인해 발생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소는 청탁의 의도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5340.9 A3에서 제시하는 요소와 동일하다.

5340.11 A5 이러한 청탁을 하거나 받음으로 인해 발생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청탁을 거절하거나 제공하지 않음.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전문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적절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지될 것이라고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믿을 사유가 없는) 다른 개인에게 이전함.

5340.11 A6 이러한 청탁을 하거나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회계법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고위경영진에게 청탁을 하거나 받은 사실을 투명하게 밝힘.
- 회계법인의 고위경영진이나 준법감시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유지하는 기록대장에 청탁의 내용을 기록함.
- 청탁을 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인증인 자신이 수행한 업무 또는 도출한 의사결정을 해당 의뢰인에 대한 전문서비스의 제공에 관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에게 검토하도록 함.
- 청탁을 받은 후 이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회계법인의 고위경영진 구성원 또는 청탁을 한 개인 등에게 기부 내용을 적절히 공개함.
- 청탁(예: 접대)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돌려줌.
- 청탁(예: 선물)을 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반환함.

####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측근가족

**R5340.12**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과 같은 청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 (a) 인증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인증인의 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잠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하는 청탁
- (b) 인증인의 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잠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인증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측근가족에게 하는 청탁

**R5340.13**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본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청탁을 했거나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지속가능성인증인이나 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잠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행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또는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가 이러한 의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인증인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측근가족에게 이러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조언해야 한다.

5340.13 A1 문단 5340.9 A3에서 제시하는 요소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나 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잠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행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실제의 또는 인지된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다. 다음은 관련있는 추가 요소이다.

- (a) 인증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측근가족 사이의 관계의 성격 및 친밀도

- (b)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측근가족과 현 의뢰인 또는 잠재 의뢰인 사이의 관계의 성격 및 친밀도
- (c) 인증인 과 현 의뢰인 또는 잠재 의뢰인 사이의 관계의 성격 및 친밀도

예를 들어, 인증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의뢰인이 해당 인증인의 배우자에게 통상적인 채용 과정 외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

5340.13 A2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문단 R5340.13에 따라 제시된 조언을 따른 경우라 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인증인이나 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지속가능성인증 잠재 의뢰인의 행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실제의 또는 인지된 의도가 존재하는 경우, 문단 5340.10 A2의 적용지침 역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관련이 있다.

#### 개념체계의 적용

5340.14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문단 R5340.12에서 다루는 상황에서 제공된 청탁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a)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문단 R5340.13에 따른 인증인의 조언에 반하여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 (b) 인증인 본인이나 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지속가능성인증 잠재 의뢰인의 행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실제의 또는 인지된 의도가 존재한다고 믿을 근거가 없는 경우

5340.14 A2 문단 5340.11 A1부터 5340.11 A6까지의 적용지침은 이러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위협에 대처하는 목적과 관련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 있는 요소에는 문단 5340.13 A1에서 제시하는 관계의 성격 및 친밀도도 포함된다.

#### 기타 고려사항

5340.15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해 일하거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개인이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직면하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5360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된다.

5340.15 A2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선물 또는 접대를 받는 경우에는 5420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된다.

**[문단 5340.15 A3까지는 공란으로 둔다]**

## 5350 의뢰인 자산의 보관

### 개요

- 5350.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350.2 의뢰인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전문가적 품위 및 공정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 또는 기타 위협이 발생한다. 5350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보관 업무의 수임 전

- R5350.3**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법률이 허용하고 이러한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소유의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의 보관(custody)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R5350.4**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의 보관과 관련하여 의뢰인 수용 및 업무 수임 절차의 일환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대상 자산의 원천에 관해 질의함.
  - (b) 관련 법규 상의 의무를 고려함.
- 5350.4 A1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소유의 자산의 원천에 관한 질의를 통해 해당 자산이 자금 세탁 등의 불법행위에서 유래된 자산이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협이 발생하며 5360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 보관 업무의 수임 후

- R5350.5**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소유의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을 수탁한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자산의 보관 및 회계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함.
  - (b) 지속가능성인증인 개인 또는 회계법인의 자산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함.
  - (c)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자산은 오로지 의도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함.
  - (d) 의뢰인 자산과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배당수입 등에 대한 수탁보고서를 항시적으로 작성 비치함.

## 5360 법규위반에 대한 대응

### 개요

- 5360.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360.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성실 강령 및 전문가적 품위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한다.
- 5360.3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 중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게 될 수 있다. 5360에서는 다음에 대한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응할 때 인증인(practitioner)이 법규위반의 영향과 가능한 조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한다.
- (a) 의뢰인 재무제표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중요한 금액, 영향 및 공시사항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규
  - (b) 의뢰인 재무제표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금액, 영향 및 공시사항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를 준수하는 것이 의뢰인의 사업을 운영하고 지속하며 중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의뢰인에 근본이 되는 기타 법규

### 법규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인의 목적의식

- 5360.4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응할 때 인증인은 다음과 같은 목적의식을 갖는다.
- (a) 성실 강령 및 전문가적 품위 강령을 준수함.
  - (b) 다음을 위해 의뢰인의 경영진 또는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에 알림.
    - (i)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식별된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결과를 바로잡거나, 해결하거나 완화시키도록 협력함.
    - (ii) 법규위반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c) 공익에 부합하는 적절한 추가 조치를 실행함.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5360.5 A1 법규위반은 다음 당사자가 현행 법률 또는 규정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특정 행위를 누락하거나 실행하는 행위로 구성된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
- (c)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경영진
- (d)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해 일하거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개인

5360.5 A2 5360에서 다루는 법규에는 다음에 관한 법규가 포함된다.

- 환경보호
- 공중보건 및 안전
- 인권보호
- 근로조건 및 직원의 권리
- 소비자 권리
- 정보보호
- 부정, 부패 및 뇌물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범죄수익금
- 증권시장 및 거래
- 은행 및 기타 금융상품과 서비스
- 조세, 연금채무와 지급

5360.5 A3 법규위반으로 인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소송이 제기되거나 기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재무제표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투자자, 채권자, 임직원 또는 일반 대중에게 잠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규위반은 공익에 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5360에서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란 이러한 당사자들에게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의 예로는 투자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무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부정행위 및 임직원 또는 공중의 건강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환경 관련 법규의 위반 등이 포함된다.

**R5360.6**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처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규의 조항이 5360의 조항과 다르거나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직면하는 경우 인증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해당 법규의 조항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 (a) 관계 당국에 법규위반을 보고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주의 환기를 금지하는 조항

5360.6 A1 의뢰인에 대한 주의 환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법률에 근거할 수 있다.

5360.7 A1 5360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지 여부 등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성격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5360.7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명확하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직면하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5360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사안이 명확하게 중요하지 않은지 여부는 그 사안의 성격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그 이해당사자 및 일반 대중에 미치는 영향(재무적 영향 및 기타 영향)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5360.7 A3 5360에서는 다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다.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업무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불법행위

(b) 문단 5360.5 A1에 명시된 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의 법규위반. 이러한 경우의 예로는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회사에서 발생한 경우가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되는 지침을 5360에서 구할 수 있다.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책임**

5360.8 A1 경영진은 지배기구의 감독 하에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업무 활동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수행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경영진 및 지배기구는 또한 다음 당사자에 의한 법규위반을 식별하고 대처할 책임을 진다.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 구성원

(c)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경영진 구성원

(d)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해 일하거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개인들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책임**

**R5360.9** 지속가능성인증인은 5360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을 인지하게 된 경우 5360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적시에 수행해야 한다. 인증인은 적시에 조치를 수행함에 있어 사안의 성격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투자자, 채권자, 임직원 또는 일반 대중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사안에 대한 이해*

- R5360.10**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임한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인증인은 해당 사안을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해의 대상은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성격 및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
- 5360.10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인지하게 될 수 있다.
- 5360.10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지식 및 전문성을 활용하고 전문가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수준 이상으로 법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특정 행위가 법규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 또는 기타의 적절한 사법 기관이 결정할 사안이다.
- 5360.10 A3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사안의 성격 및 중요성에 따라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내의 다른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다.
- R5360.11**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거나 의심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해당 사안을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논의해야 한다.
- 5360.11 A1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 그리고 사안의 잠재적인 영향을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5360.11 A2 해당 사안을 논의할 상대방으로 어느 수준의 경영진이 적절한지는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고려할 관련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사안의 성격 및 상황
  -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관련된 개인들
  - 공모의 가능성
  - 사안의 잠재적인 영향
  - 해당 수준의 경영진이 사안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 5360.11 A3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이란 일반적으로 해당 사안과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정보보다 그 직위가 적어도 한 단계 높은 경영진을 의미한다. 그룹의 경우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지배하는 회사의 경영진일 수 있다.
- 5360.11 A4 적절한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해당 사안을 내부감사와 논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R5360.12**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경영진이 관여되어 있다고 믿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해당 사안을 지배기구와 논의해야 한다.

*사안에 대한 대처*

**R5360.13**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경영진 및 지배기구(적절한 경우)와 논의할 때 지속가능성인증인은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이행(이러한 조치가 이미 이행되지 않은 경우)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 (a) 법규위반의 결과를 바로잡거나 해결하거나 완화시킴.
- (b)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법규위반의 실행을 억제함.
- (c) 법규에 따라 요구되거나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계당국에 해당 사안을 공개함.

**R5360.14** 지속가능성인증인은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법규상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5360.14 A1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신들의 법규상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해당 정보의 출처를 알려 주거나 법률 자문을 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R5360.15**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a) 법률과 규정(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관계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규 포함)
- (b) 다음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인증기준상 요구사항들
  -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법규위반의 식별 및 대응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지속가능성인증 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5360.15 A1 일부 법률 및 규정은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할 시한을 명시할 수도 있다.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관련 커뮤니케이션

**R5360.16** 다음의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의 상황에서 그룹과 관련된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관련 법규가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그룹 업무수행리더에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 (a) 인증인이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위해 부문과 관련된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b) 인증인이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그룹의 일부인 법인이나 사업부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룹 업무수행리더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5360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에 추가하여 수행해야 한다.

5360.16 A1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그룹 업무수행리더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알리고,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경우 5360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처할지 여부 그리고 대처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문단 R5360.16의 커뮤니케이션 요구사항은 그룹 업무수행리더가 소속된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해당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소속된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과 동일하거나 상이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R5360.17**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수행 중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인지하게 된 그룹 업무수행리더는 해당 사안이 다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a)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위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대상인 하나 이상의 부문
- (b) 지속가능성 정보가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인증의 대상인 하나 이상의 그룹 법인이나 사업부

이러한 고려는 5360의 규정에 따라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측면에서 대응하는 것에 추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R5360.18**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문단 R5360.17(a)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부문 및 R5360.17(b)에 규정된 법인 또는 부문과 관련된 경우, 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그룹 업무수행리더는 해당 부문, 법인 또는 사업부를 담당하는 지속가능성인증인에게 해당 사안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룹 업무수행리더는 문단 R5360.17(b)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된 법인 또는 사업부가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경영진에 대한 질의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통하여 적절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지속가능성인증대상인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까지 그 인증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5360.18 A1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부문, 법인 또는 사업부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책임자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5360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처할지 여부 그리고 대처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요구사항은 그룹 업무수행리더가 소속된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부문, 법인 또는 사업부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책임자가 소속된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과 동일하거나 상이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의뢰인의 외부감사인과 사안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R5360.18a**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외부감사인(있는 경우)과 커뮤니케이션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고려할 관련 요소

5360.18a A1 문단 R5360.18a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커뮤니케이션이 법규에 반하는지 여부

-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감독당국 또는 검찰이 정보공개에 대한 제한 조건을 부과했는지 여부
- 업무의 목적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 내의 잠정적인 법규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인지 여부
-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사안을 이미 알렸는지 여부
-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규칙이나 절차가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 내에서의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규정하는 경우 그 방식

####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5360.18a A2 문단 R5360.18a에서 규정한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목적은 감사수행이사에게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알리고, 이 윤리기준의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처할지 여부 그리고 대처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업무수행이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결정

**R5360.19** 지속가능성인증인은 경영진 및 지배기구(해당되는 경우)가 취한 대응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5360.19 A1 경영진 및 지배기구(해당되는 경우)의 대응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할 관련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대응조치의 적시성 여부
-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규위반의 결과를 바로잡거나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실행됐는지 또는 실행 중인지 여부
-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법규위반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진행 중인지 여부
- 추가적인 통제 또는 교육 등을 포함하는 재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진행 중인지 여부
-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관계 당국(해당되는 경우)에 신고되었는지 여부 및 신고된 경우 그 신고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R5360.20** 경영진 및 지배기구(해당되는 경우)의 대응 조치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인증인은 공익에 부합하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360.20 A1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이러한 추가 조치의 성격 및 적용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된다.

- 관련 법률 및 규정 체계

- 해당 상황의 긴급성
- 해당 사안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조직 전반에 만연한 정도
- 지속가능성인증이 경영진 및 지배기구(해당되는 경우)의 성실성을 여전히 신뢰하는지 여부
-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재발 가능성 여부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투자자, 채권자, 임직원 또는 일반 대중의 이익에 대한 실제의 또는 잠재적인 상당한 피해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

5360.20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경영진 및 지배기구(해당되는 경우)의 성실성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법규위반에 실제 관여하거나 관여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증인이 의심하거나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법규위반을 알고 있으면서 법규상 요구사항과 달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계 당국에 해당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

**R5360.21**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전문가적 판단을 내려 추가 조치의 필요성, 이러한 조치의 성격 및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인증인은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가 인증인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행동했다는 결론을 내릴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360.21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법규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 당국에 해당 사안을 신고함.
-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 수임업무 및 업무관계를 중단함.

5360.21 A2 수임업무 및 업무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5360에서 정하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필요가 있는 다른 조치를 대체하는 조치가 아니다. 하지만 인증인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중단은 인증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가 될 수도 있다.

**R5360.22** 문단 R5360.20 및 5360.21 A1에 따라 업무관계를 중단하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업무수임 예정 인증인이 문단 R5320.8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식별된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실 및 기타 정보를 업무수임 예정 인증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본인과 관련된 사안을 업무수임 예정 인증인과 논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문단 R5320.8(b)의 경우에도 전임 인증인은 사실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360.22 A1 제공하여야 하는 사실 및 기타 정보는 전임 인증인이 생각하기에 업무수임 예정 인증인이 업무를 수임할지 결정하기 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는 사실 및 정보이다. 업무수임 예정 인증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5320에서 다룬다.

**R5360.23** 업무수임 예정 인증인은 전임 인증인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인증인 변경 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360.23 A1 인증인 변경 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제3자에게 질의하거나 의뢰인의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에 대한 배경조사를 포함한다.

5360.24 A1 사안의 평가 시 복잡한 분석과 판단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인증인은 다음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 내부에서 자문을 구함.
- 자신의 선택권 및 특정 조치 실행의 직업적인 또는 법률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함.
- 비밀유지 조건 하에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에 문의함.

관계 당국에 사안의 공개 여부 결정

5360.25 A1 특정 사안을 관계 당국에 공개하는 행위가 관련 법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관계 당국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5360.25 A2 이러한 공개를 할지 여부는 특히 해당 사안이 투자자, 채권자, 임직원 또는 일반 대중에게 끼치는 실제의 또는 잠재적인 피해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 사안을 관계 당국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결정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뇌물수수(예: 대규모 계약 수주를 위해 국내 또는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에 관여한 경우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으며 해당 사안이 의뢰인의 업무 인가를 위협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 경우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이며 해당 사안이 의뢰인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의 공정성과 질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나 금융시장 전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경우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일반 대중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로운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고객에게 홍보하는 경우

5360.25 A3 이러한 공개를 할지 결정하는 데 다음과 같은 외부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

- 해당 정보를 접수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하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계당국의 존재 여부. 이 경우 관계 당국은 해당 사안의 성격에 따라 결정됨. 예를 들어, 재무보고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증권감독기관이, 환경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보호 당국이 관계당국으로 간주됨.
- 민사상, 형사상, 전문직 관련 책임 또는 보복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과 같은 관련 법규에 의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 지속가능성인증인 본인 또는 기타 개인의 신체적인 안전에 대한 실제의 또는 잠재적인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

**R5360.26**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관계당국에 공개하는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취할 적절한 행동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정보공개는 이 윤리기준 문단 R5114.3에 따라 허용된다. 이와 같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인증인은 선의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하고 진술 및 주장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인증인은 해당 사안을 공개하기 전에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본인의 의도를 알리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 *임박한 위반행위*

**R5360.27** 이례적인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실제의 또는 의도된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투자자, 채권자, 임직원 또는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법규 위반이 임박한 것으로 인증인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먼저 해당 사안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한 후, 전문가적 판단을 하고 임박한 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당 사안을 관계 당국에 즉시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보공개는 문단 R5114.3에 따라 허용된다.

### *문서화*

**R5360.28** 5360의 적용 대상인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 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 경영진 및 지배기구(해당되는 경우)가 해당 사안에 대응한 방법
-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 테스트를 감안하여 인증인이 고려한 조치, 판단 사항 및 의사결정 내용
- 인증인이 문단 R5360.20에서 요구하는 책임 이행과 그에 대한 본인의 만족 여부

5360.28 A1 이와 같은 문서화는 관련 지속가능성인증기준에서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서화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추가하여 실시해야 한다.

###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및 기타 전문서비스**

#### *사안에 대한 이해 및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사안에 대한 대처*

**R5360.29**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기타 전문서비스에 참여한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인증인은 해당 사안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해의 대상은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성격 및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

5360.29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지식 및 전문성을 적용하고 전문가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전문서비스에 요구되는 수준 이상으로 법규를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특정 행위가 법규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 또는 기타의 적절한 사법 기관이 결정할 사안이다.



5360.29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사안의 성격 및 중요성에 따라서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내의 다른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다.

**R5360.30**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거나 의심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해당 사안을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과 논의해야 한다. 인증인이 지배기구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적절한 경우 해당 사안을 지배기구와도 논의해야 한다.

5360.30 A1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 그리고 사안의 잠재적인 영향을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5360.30 A2 해당 사안을 논의할 상대방으로 어느 수준의 경영진이 적절한지는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고려할 관련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사안의 성격 및 상황
-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관련된 개인들
- 공모의 가능성
- 사안의 잠재적인 영향
- 해당 수준의 경영진이 사안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외부감사인과 사안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R5360.31**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다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및 기타 전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인증인은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회계법인 내에서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 (a) 회계법인의 감사의뢰인
- (b) 회계법인의 감사의뢰인의 부문

커뮤니케이션은 회계법인의 규칙 및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규칙 및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이사에게 직접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R5360.3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다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대상으로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및 기타 전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인증인은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네트워크 법인과 커뮤니케이션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a) 네트워크 법인의 감사의뢰인
- (b) 네트워크 법인의 감사의뢰인의 부문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네트워크의 규칙 및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규칙 및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이사에게

직접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R5360.33**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대상으로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기타 전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인증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의뢰인의 외부감사인(있는 경우)인 회계법인과 커뮤니케이션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a)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감사의뢰인
- (b)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감사의뢰인의 부문

고려할 관련 요소

5360.34 A1 문단 R5360.31부터 R5360.33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커뮤니케이션이 법규에 반하는지 여부
-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감독당국 또는 검찰이 정보공개에 대한 제한 조건을 부과했는지 여부
- 업무의 목적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내의 잠재적인 법규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인지 여부
-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자신의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사안을 이미 알렸는지 여부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5360.35 A1 문단 R5360.31부터 R5360.33에서 규정한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목적은 업무수행이사에게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알리고 이 윤리기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처할지 여부 그리고 대처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업무수행이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고려

**R5360.36** 지속가능성인증인은 공익에 부합하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5360.36 A1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이러한 추가 조치의 성격 및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된다.

- 관련 법률 및 규정 체계
- 경영진 및 지배기구(해당되는 경우)가 취한 대응 조치의 적절성 및 적시성
- 해당 상황의 긴급성
- 해당 사안에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관련되었는지 여부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투자자, 채권자, 임직원 또는 일반 대중의 이익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5360.36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법규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 당국에 해당 사안을 신고함.
-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 수임업무 및 업무관계를 중단함.

5360.36 A3 관계 당국에 공개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고려해야 할 관련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공개가 관련 법규에 반하는지 여부
-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감독당국 또는 검찰이 정보공개에 대한 제한 조건을 부과했는지 여부
- 업무의 목적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내의 잠정적인 법규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인지 여부

**R5360.37**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관계 당국에 공개하는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취할 적절한 행동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정보공개는 문단 R5114.3에 따라 허용된다. 이와 같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선의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하고 진술 및 주장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해당 사안을 공개하기 전에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본인의 의도를 알리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 *임박한 위반행위*

**R5360.38** 이례적인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실제의 또는 의도된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투자자, 채권자, 임직원 또는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법규 위반이 임박한 것으로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먼저 해당 사안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한 후, 전문가적 판단을 하고 임박한 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당 사안을 관계 당국에 즉시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보공개는 문단 R5114.3에 따라 허용된다.

#### *자문의 요청*

5360.39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 내부에 자문을 구함.
- 특정 조치 실행의 직업적인 또는 법률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함.
- 비밀유지 조건 하에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에 문의함.

#### *문서화*

5360.40 A1 5360의 적용 대상인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당 사안
- 경영진, 지배기구(해당되는 경우) 및 기타 당사자와의 논의 결과
- 경영진 및 지배기구(해당되는 경우)가 해당 사안에 대응한 방법
- 인증인이 고려한 조치, 판단 사항 및 의사결정 내용
- 인증인이 문단 R5360.36에서 요구하는 책임 이행과 그에 대한 본인의 만족 여부

## 5380 세무계획 수립 업무

### 개요

- 5380.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380.2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 자기검토위협, 변호위협 또는 압력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 5380.3 5380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5380은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련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세무계획 수립 업무와 관련된 지속가능성인증인의 공익적 역할*

- 5380.4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제공하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해당 의뢰인이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면서 세무계획 수립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증인은 국가의 세무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공익에 부합한다.
- 5380.4 A2 의뢰인은 세무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구조화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의뢰인은 관련 세법 및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역할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세무계획 수립 목표를 달성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돕는 것이다. 그러나 인증인이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에 세법 및 규정에서 금지하지는 않지만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조세최소화 약정이 포함될 수 있다.
- 5380.4 A3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관련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정, 법원 또는 기타 적절한 사법 기관이 결정할 사안이다.

##### *세무계획 수립 업무의 정의*

- 5380.5 A1 세무계획 수립 업무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관련된 사안을 계획 또는 구조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된 자문업무이다.
- 5380.5 A2 세무계획 수립 업무는 광범위한 주제 또는 영역을 다룬다. 이러한 업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회사에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한 세무 구조화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
- 회사에 전체 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업들의 소유권과 이익을 구조화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
- 회사에 전체 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을 구조화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
- 세금 관련 이전가격 지침을 고려하여 이전가격 약정의 구조화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
-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
- 회사에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방식으로 자본배분 전략을 구조화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
- 회사에 세제 혜택을 최적화하기 위해 고위 임원에 대한 보상 전략을 구조화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

5380.5 A3 세무계획 수립 업무에는 일반적으로 납세준수 또는 세금신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세법 및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신고, 보고, 납부 및 기타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세무업무가 세무계획 수립과 납세준수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세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에 5380이 적용된다.

5380.5 A4 5380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성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 관련 업무

5380.6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해당 의뢰인 또는 제3자 제공자가 수립한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기반하거나 이와 연계된 관련 업무를 제공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5380의 조항은 기초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적용된다.

5380.6 A2 이러한 관련 업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대한 세무당국과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을 제공함.
- 세무계획 수립 약정과 관련한 행정 또는 법원 소송에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대리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세무계획 수립 약정을 이행함.
- 피인수회사가 수립한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따라 가치평가가 달라지는 인수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자문을 제공함.

#### 법규 준수

5380.7 A1 5380에서는 불법 행위인 탈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 조세회피방지 법규

**R5380.8** 특정한 세무계획 수립 약정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규(조세회피방지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법규 포함)가 있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제공할 때 해당 법규를 이해하고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조언해야 한다.

#### 세법 및 규정 위반

5380.8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의뢰인을 위해 일하거나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개인의 탈세 또는 탈세로 의심되는 행위, 또는 세법 및 규정에 대한 기타 위반 또는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우, 5360에 제시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된다.

####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책임

5380.9 A1 세무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경영진은 지배기구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다수의 책임을 수행한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세무업무가 관련 세법 및 규정에 따라 수행되도록 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납세준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부와 기록을 유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실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함.
- 전문가가 세무계획 수립 약정의 관련 측면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인의 권고의견 또는 자문을 수용하고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세금신고서 제출을 승인하고 관련 세무당국이 제기하는 모든 사항을 적시에 처리하도록 함.
- 세법 및 규정에 의해 요구되거나 세무계획 수립 약정의 세부사항 등 과세지위(tax position)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관련 세무당국에 공개함.
- 관련 보고 요구사항에 따라 재무제표, 지속가능성 공시 또는 기타 관련 공공문서에 세무 전략, 정책 또는 기타 세무 관련 사항을 적절히 공개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일반에 공개된 세무 전략 또는 정책과 일치하도록 함.

#### 전체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책임

**R5380.10**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세무계획 수립 업무 제공의 일환으로 다음을 포함하여 해당 업무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그 소유주, 경영진 및 지배기구 및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사업활동에 대한 지식과 이해

(b) 세무계획 수립 약정의 목적, 사실 및 상황

(c) 관련 세법 및 규정

5380.10 A1 의뢰인 및 업무 수입과 관련해서는 5320의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된다.

**[문단 5380.10 A2는 공란으로 둔다]**

5380.11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제공할 때 5113에 따라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인증인은 세무계획 수립 업무와 관련된 특정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할 때 5120에 따라 탐구심을 가지고 전문가적 판단을 발휘해야 한다.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대한 권고의견 또는 기타 자문 제공의 근거**

**R5380.12**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해당 약정에 대한 법규상의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계획 수립 약정을 권고하거나 기타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5380.12 A1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전문가적 판단이 관여된다. 이러한 판단은 당시의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5380.12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대한 법규상의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단 R5380.12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본인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거나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 다른 약정에 대해 조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5380.12 A3 또한 문단 R5380.12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신뢰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세무계획 수립 약정을 해결하거나 바로잡기 위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고용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의뢰인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업무는 문단 5380.6 A1 및 A2에 규정된 관련 업무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업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세무분쟁 해결 업무의 일환으로 신뢰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이 세무계획 수립 약정을 재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
- 행정 또는 법원 소송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신뢰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과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대한 적절한 변경에 합의하는 것

5380.12 A4 지속가능성인증인이 특정한 세무계획 수립 약정과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약정의 경제적 목적 및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사실 및 상황을 검토함.
- 모든 가정의 합리성을 평가함.
- 관련 조세입법을 검토함.
- 관련 조세입법의 취지를 논의하는 입법 절차를 검토함.



- 법원 판결, 전문지 또는 업계 저널, 세무당국의 통칙(ruling) 또는 지침 등 관련 문헌을 검토함.
- 제안된 약정에 사용된 근거가 관련 세무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확립된 관행인지 여부를 고려함.
-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공개할 경우 관련 세무당국이 제안된 약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고려함.
- 관련 법규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무엇인지에 관해 지속가능성인증인의 회계법인 내부 또는 외부의 법률전문가 또는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음.
- 해당되는 경우, 관련 세무당국의 자문을 받음.

**R5380.13**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근거에 대한 이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해당 근거의 타당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전반적 세무계획 수립 권고의견 또는 자문의 고려*

**R5380.14**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대해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 외에도, 전문가적 판단을 발휘하여 이해당사자가 약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평판에 대한 결과, 상업적 결과 및 광범위한 경제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5380.14 A1 평판에 대한 결과와 상업적 결과는 관련 세무당국 또는 기타 당국과의 장기간의 분쟁으로 인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발생한 사업적 영향, 또는 의뢰인 또는 인증인이 속한 직종이나 집단의 평판에 대한 영향과 관련될 수 있다. 의뢰인에 대한 영향은 부정적인 평판, 비용, 벌금 또는 과태료, 상당한 기간 동안의 경영진 시간 손실, 의뢰인의 사업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5380.14 A2 광범위한 경제적 결과에 대한 인식은 현재 경제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일반적인 이해와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국가의 과세기반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해당 약정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다수 국가의 과세기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R5380.15** 문단 R5380.14에 제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관해 권고의견 또는 기타 자문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인증인은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고 인증인의 결론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다수 국가가 관여하는 세무계획 수립 약정*

5380.16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특히 국가 간 조세조약이 없는 복수의 국가에서 동일한 거래를 회계처리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인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각 국가의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인증인은 의뢰인에게 특정한 사실 및 상황과 상이한 국가에서 해당 거래로부터 발생한 세제혜택을 관련 세무당국에 공개할 것을 조언할 수 있다.

5380.16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그러한 공개를 권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관련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관련 국가에서 발생한 세제혜택의 중요도
- 해당 사실 및 상황이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진 경우 의뢰인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인식
- 그와 유사한 상황을 관련 국가의 세무당국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나 관행이 있는지 여부

### 불확실한 상황

5380.17 A1 세무계획 약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제안된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관련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인증인이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대한 법규상의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며, 따라서 윤리강령 준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5380.17 A2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확립하기 어려운 상황
- 가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립하기 어려운 상황
- 다음과 같은 세법 및 규정과 그 해석의 명확성 부족
  - 세법 및 규정의 공백
  - 이전의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 국경 간 거래와 관련된 상황에서 국가 간 상충되는 세법 및 규정
  - 현행 세법 및 규정에서 다루지 않는 혁신적인 사업모델
  - 유사한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법원이나 세무당국의 최근 판결 또는 입장
  - 기술적 또는 법률적 관점에서 세법 및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의 복잡성
  - 판례, 통칙(ruling) 또는 입장의 부재
- 세무계획 수립 약정의 경제적 목적 및 내용에 대한 명확성 부족
- 세무계획 수립 약정의 최종 수혜자에 대한 명확성 부족

**R5380.18**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관련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준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해당 불확실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5380.18 A1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 관련 세법 및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련 세무당국이 세무계획 수립 약정을 지지하는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인의 평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

- 세무계획 수립 자문 제공의 근거를 수립할 때 도출한 모든 가정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추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목적
- 세무계획 수립 약정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판에 대한 결과, 상업적 결과 또는 광범위한 경제적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
- 관련 세무당국에 대한 공개를 고려하는 것 등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화하는 잠재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

### 세무계획 수립 업무 제공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5380.19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제공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기적위협, 자기검토위협, 변호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최근 의뢰인에게 세무 목적의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물이 의뢰인의 세무계획 수립 업무에 이용되거나 주요 투입자료가 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고 회계사가 의뢰인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계획 수립 약정의 설계에 관여하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의뢰인이 채택해야 하는 특정 과세지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이기적위협과 변호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정부 기관의 조세정책, 법률 또는 규정의 수립 또는 초안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획득한 비밀정보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비밀정보가 인증인이 다른 의뢰인의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때 유용할 수 있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관련 세법 및 규정의 해석이 불확실하거나 불명확한 세무계획 수립 약정을 개발하는 업무에 대하여 과도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수수료를 수락하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해당 약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법규상의 근거가 없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 이전에 세무당국에 관련 자문을 제공한 바 있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경우 이기적위협 및 변호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특정 세무약정의 설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뢰인에게 해당 약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법규상의 근거가 있다는 인증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기적위협 및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의뢰인이 세무계획 수립 약정과 관련하여 추구할 것을 요구하는 과세지위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의뢰인과 관련된 업무에서 제외되거나 회계법인에서 면직될 것이라는 위협을 당하는 경우 이기적위협 및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5380.19 A2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투명성 정도(해당되는 경우 최종 수혜자의 신원 포함)
-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기초 사업거래 또는 상황에 근거 명확한 경제적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기초 사업거래 또는 상황의 성격과 복잡성
- 관련 세법 및 규정의 복잡성 또는 명확성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관련 조세입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와 같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관여하는 국가의 수 및 해당 국가의 세법 및 세무제도의 성격
- 관련 세무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전문성 및 경험의 정도
- 잠재적 세금 절감의 중요도
- 세무계획 수립 업무의 성격과 보수 금액
-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관련 세무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기존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음을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다른 지속가능성인증인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여부
- 세무계획 수립 약정 이행의 긴급성 정도
-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다수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변형된 부분이 거의 없는지 여부
- 조직문화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알려진 이전의 행위 또는 평판

5380.19 A3 이러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해당 의뢰인에게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회계법인 외부의 전문가에게 소개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계획 수립 약정을 관련 세무당국의 기존의 해석 또는 통칙과 일치하게 구조화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함.
- 가능한 경우 관련 세무당국 또는 기타 당국으로부터 사전답변(advance ruling)을 받음.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계획 수립 약정을 추진하지 않도록 조언함.

5380.19 A4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최종 수혜자의 신원을 확인함.
- 근본적 경제적 목적 및 내용에 더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세무계획 수립 약정을 구조화하도록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자문함.

- 현재 관련 세무당국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거나 관련 세무당국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기존 관행에 따라 세무계획 수립 약정을 구조화하도록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자문함.
- 지속가능성인증인의 회계법인 내부 또는 외부의 법률전문가나 기타 전문가에게 관련 세무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음.
-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관련 세법 및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예: 법률전문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확보함.
- 세무계획 수립 업무 제공에 달리 참여하지 않는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세무계획 수립 약정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수행한 업무 또는 도출한 결론을 검토하도록 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세무계획 수립 약정의 목표, 사업적 및 법적 측면, 최종 수혜자 등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관련 세무당국에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함.

5380.19 A5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최종 수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내부의 경영진 및 다른 개인들에게 문의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거래한 바 있는 회계법인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개인들에게 비밀유지조건 하에 문의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세무기록, 재무제표 및 기타 관련 기업기록을 검토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그 법적 구조 내에 있는 회사들이 설립된 등기소에 관련 주주들에 관해 문의함.
- 관련 공개기록을 조사함.

### 세무계획 수립 권고의견 또는 자문의 근거 커뮤니케이션

**R5380.20**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계획 수립에 관해 제공한 권고의견 또는 자문의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의견 불일치

**R5380.2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세무계획 수립 약정이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증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본인이 수행한 평가의 근거를 의뢰인에게 알림.
- (b) 의뢰인에게 해당 약정을 추진함에 따른 잠재적 결과를 커뮤니케이션함.

(c) 의뢰인에게 해당 약정을 추진하지 말 것을 조언함.

**R5380.2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지속가능성인증인의 반대 조언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무계획 수립 약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인증인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해야 한다.

(a)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에게 약정의 세부사항과 견해 차이를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함.

(b) 관련 세무당국에 해당 약정을 숨김없이 충분히 공개하는 것을 고려함.

(c) 외부감사인에게 약정의 세부사항 및 견해 차이(있는 경우)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고려함.

5380.22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문단 R5380.21 및 R5380.22에 제시된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에 관련 사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R5380.23**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본인의 조언에 대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반응을 고려하여 수임업무 및 업무관계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제3자가 개발한 세무계획 수립 상품 또는 약정

**R5380.24**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지속가능성인증인으로 하여금 제3자가 개발한 세무계획 수립 상품 또는 약정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는 경우, 인증인은 다음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a)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제3자 제공자와 맺고 있는 모든 업무관계 및 사업관계를 의뢰인에게 알림.

(b) 세무계획 수립 상품 또는 약정과 관련하여 5380의 조항을 적용함.

**R5380.25**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제3의 세무계획 수립 업무 제공자에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인증인은 본인이 제3의 세무계획 수립 업무 제공자와 보유하고 있는 업무관계 또는 사업관계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5380.25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제3의 세무계획 수립 업무 제공자에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단순히 추천하거나 소개하기만 하는 경우, 5380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5380.25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제3자 제공자로부터 알선수수료 또는 기타 수수료를 받는 경우 5330의 조항이 적용된다.

### 문서화

5380.26 A1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제공할 때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을 적시에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무계획 수립 약정의 목적, 상황 및 내용
- 최종 수혜자의 신원
- 불확실성의 성격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인증인의 분석, 고려한 조치, 판단 사항 및 도출한 결론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및 기타 당사자와의 논의의 결과
- 인증인의 자문에 대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대응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의견 차이

5380.26 A2 이러한 문서화 작업은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다음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약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평판 결과, 상업적 결과 및 광범위한 경제적 결과를 고려함.
- 사실, 상황, 관련 세법 및 규정, 도출되거나 변경된 가정에 대한 인증인의 분석을 향상시킴.
- 전문가적 판단을 도출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판단의 근거를 기록함.
- 세무계획 수립 약정에 관해 관련 세무당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약정에 대한 입장을 뒷받침함.
- 인증인이 5380의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함.

## 5390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 개요

- 5390.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390.2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것은 윤리강령 준수, 특히 성실, 공정, 전문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 5390.3 5390은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념체계 적용과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5390.4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수행하는 전문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불충분한 경우 성실 강령 및 전문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 5390.4 A2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성, 역량, 공정성을 갖춘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해당 전문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다.
- 5390.4 A3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제공하는 전문서비스를 지원하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이미 확립된 분야 또는 새로운 분야의 업무일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복잡한 금융상품, 토지 및 건물, 플랜트 및 기계, 보석, 예술품, 골동품, 무형자산,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자산,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 등의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 사업 결합에서 인수한 부채, 소송 또는 소송이 제기될 위협에 따른 부채, 환경 부채, 부지 정화 부채, 보험 계약 또는 직원 복리후생제도와 관련된 부채 등의 부채 가치평가
  -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 대기, 물, 토양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측정
  -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위한 원칙에 따라 설계된 제품 및 재료의 가치평가
  - 석유 및 가스 매장량 추정
  - 세법 및 규정, 조세조약 및 양자 협정 등의 계약 및 법규의 해석
  -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시스템 등 IT 시스템의 진단 및 평가



- 금융상품 또는 탄소배출권과 같은 특정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

5390.4 A4 다음 경우에는 5390이 적용되지 않는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재무 및 비재무 정보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뢰인이 고용하거나 계약한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이러한 업무는 경영진이 제공한 정보로 간주된다.
- (b) 외부 정보출처인 개인 또는 조직이 제공한 정보를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지역별 주당 근무시간 및 보수 등의 고용통계 정보, 부동산 가격, 차량 유형별 탄소 배출량, 생명표(mortality table) 또는 기타 일반 용도의 데이터세트 등의 산업 및 기타 벤치마킹 데이터 또는 연구를 제공하는 기관이 여기에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와의 계약조건 합의

#### 전체 전문서비스

**R5390.5**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전문서비스에 활용할 외부전문가를 식별한 경우, 인증인은 법률, 규정 또는 기타 전문가 기준에서 달리 다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와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에 합의해야 한다.

- (a) 외부전문가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
- (b) 지속가능성 또는 기타 인증업무의 맥락에서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에 대한 인증인의 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제공

5390.5 A1 계약조건에 합의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목적 및 시기
- 해당 업무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일반적 접근방식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 및 해당 업무를 위한 투입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기대
- 외부전문가가 완료한 업무의 예상 내용 및 형식(해당 업무에 대한 가정 및 제한사항 포함)
- 외부전문가가 업무수행 시 알게 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해당 의뢰인을 위해 일하거나 해당 의뢰인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행한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 위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기대

###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 평가

#### 전체 전문서비스

**R5390.6**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외부전문가가 인증인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5390.6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특정 전문서비스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격성, 역량 또는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성실, 공정 및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 자기검토위협 또는 변호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5390.6 A2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평가와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의 자격, 교육, 훈련, 경험 및 평판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과 관련이 있거나 그에 부합하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 및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전문가 기준의 적용 대상이거나 외부전문가의 전문분야 또는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원칙 또는 관행을 따르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사용된 투입자료, 가정, 방법론을 포함하여 자신의 업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지속가능성인증인의 회계법인 또는 다른 의뢰인을 위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5390.6 A3 외부전문가의 역량 평가와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외부전문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5390.6 A4 외부전문가의 공정성 평가와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해당 외부전문가의 전문분야에서 윤리기준을 제정할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윤리기준이 외부전문가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에 이해상충이 있는지 여부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견을 알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이전에 내린 판단 또는 수행한 업무를 평가하거나 이를 활용하는지 여부

5390.6 A5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자기검토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이전에 내린 판단 또는 수행한 업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안에 관해 회사에 자문을 제공한 바 있는 경우
- 외부전문가가 회사를 위해 생성한 자료 또는 기타 정보가 외부전문가의 해당 업무 수행에 활용되거나 해당 업무의 대상이 된 경우

5390.6 A6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얻을 수 있다.

- 외부전문가가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 또는 경험
-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의 회계법인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문의
- 외부전문가의 전문분야 및 사업 활동 등 배경에 관해 외부전문가와 논의
- 외부전문가의 전문가 기구 또는 산업협회에 문의
- 외부전문가가 작성하고 공인된 출판사나 공인된 저널 또는 기타 매체에 게재된 기사, 논문 또는 저서
- 외부전문가와 관련된 소송절차 등 공개된 기록
- 외부전문가와 의뢰인 또는 회사 간의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에 관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및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소속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지속가능성인증 또는 기타 인증업무*

5390.7 A1 이해당사자들은 지속가능성인증 또는 기타 인증업무에 활용되는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에 대하여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단 R5390.8부터 R5390.11까지는 R5390.6에 따라 지속가능성인증 또는 기타 인증업무에서 외부전문가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R5390.8**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외부전문가에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와 인증보고기간 및 업무수행기간에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a)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소속조직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모든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 (b)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소속조직이 회사에 제공한 대출 또는 대출 보증. 단, 해당 대출 또는 보증이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소속조직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c) 회사가 은행 또는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소속조직이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 또는 대출 보증. 단, 해당 대출 또는 보증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d) 회사가 은행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소속조직이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 또는 대출 보증. 단, 해당 대출 또는 보증이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과 해당 회사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e)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소속조직과 회사 또는 그 경영진 간의 긴밀한 사업관계. 단,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소속조직과 회사 또는 그 경영진에게 그러한 재무적

이해관계(있는 경우)가 중요하지 않고 해당 사업관계가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f) 외부전문가 또는 그 소속조직과 회사 간에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또는 현재 수행중인 업무
- (g) 외부전문가와 그 소속조직이 회사와 관계를 유지한 기간
- (h) 회사의 임원 직위 또는 회사의 재무 또는 비재무 정보나 그러한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의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원의 직위를 다음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i) 외부전문가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ii) 외부전문가가 현재에 보유하고 있거나 이전에 보유했음.
  - (iii)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의 경영진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이전에 보유했음.
- (i)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를 옹호한 이전의 공개적 진술
- (j)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거나 받은 보수나 성공보수, 또는 보수나 또는 기타 유형의 보상에 대한 의존성
- (k)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
- (l)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의 소속조직이 외부전문가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이해상충
- (m) 외부전문가 소속조직의 지배주주와 회사 간의 모든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의 성격과 범위

**R5390.9** 외부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와 인증보고서기간 및 업무수행기간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팀의 모든 구성원에게 문단 R5390.8에 제시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R5390.10**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인증보고서기간 및 업무수행기간 중 문단 R5390.8에 제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사실 또는 상황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외부전문가가 이를 알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R5390.1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외부전문가에게 인증보고서기간 및 업무수행기간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소속조직과 의뢰인 간에 인지하고 있는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5390.11 A1 외부전문가의 공정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는 외부전문가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간의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소속조직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보유한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또는 중대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소속조직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및 해당 의뢰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보유한 모든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

- 외부전문가,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소속조직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보유할 수 있는 모든 이해상충

5390.11 A2 업무 상황상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을 의뢰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문의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그 소속조직과 의뢰인 간의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전체 전문서비스

**R5390.12** 다음과 같은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인은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 (a) 인증인이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에 대한 인증인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 (b) 인증인이 외부전문가가 적격성, 역량 또는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전체 전문서비스

5390.13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가 인증인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만족스럽게 결론을 내린 경우에도,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함에 따른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 위협의 식별

5390.14 A1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에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윤리강령 준수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및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a) 이기적위협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의 결론 및 발견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전문서비스를 수행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복수의 외부전문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부당한 의존을 하는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평가할 시간 또는 자원이 불충분한 경우
- (b) 변호위협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결론에 대한 알려진 편견을 가진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도모하는 경우
- (c) 유착위협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와 긴밀한 친분 관계에 있는 경우

(d) 압력위협

- 외부전문가의 권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도록 압력을 받는 경우

위협의 평가

5390.15 A1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목적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전문서비스의 성격
-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과 관련된 지속가능성인증인의 감독
- 외부전문가가 사용하는 자료, 가정 및 기타 투입자료, 방법의 적절성 및 투명성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 그리고 해당 업무가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의 능력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기술적 성과 기준이나 기타 직업적 관행 또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관행 또는 법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둘 이상의 당사자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중요하게 상이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 외부전문가의 결론 또는 발견사항 등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와 기타 정보의 일관성
- 외부전문가의 접근방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료검토 학술 연구 등 기타 증거의 가용성
- 외부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 또는 비용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인증인의 회계법인이 외부전문가의 결론 또는 발견사항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여부

위협에 대한 대처

5390.16 A1 유착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다른 외부전문가를 식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5390.16 A2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격 있는 임직원에게 자문을 받거나, 추가 투입자료를 확보하거나,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의도된 목적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다른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재수행함.

- 업무 완료를 위한 추가 시간 또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합의함.

## 기타 사항

### 신규 분야 또는 영역의 외부전문가

5390.17 A1 신규 분야 또는 영역의 전문성은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관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진화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분야에는 다수의 전문영역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분야 또는 영역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5390.17 A2 문단 5390.6 A2에 제시된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평가와 관련된 일부 요소에 대한 정보가 신규 분야 또는 영역에서는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전문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없거나, 전문기준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신규 분야에 전문기관이 설립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외부전문가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신규 분야와 유사한 분야 또는 기존 분야에서의 외부전문가의 경험이 신규 분야에서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 복수의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R5390.18**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전문서비스의 수행을 위해 복수의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인증인은 각 외부전문가를 개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외에도 복수의 외부전문가 활용에 따른 결합효과가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위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또는 공정성 평가의 본질적 한계

5390.19 A1 문단 R5113.3은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전문업무에 내재된 한계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때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또는 공정성을 평가할 정보가 부족하고 해당 외부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경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중요할 수 있다.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5390.20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은 경영진 및 지배기구(적절한 경우)와 다음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부전문가의 활용 목적 및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
- 전문서비스 수행에서 지속가능성인증인과 외부전문가의 각각의 역할과 책임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증인의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험과 그 대처 방법

문서화

5390.21 A1 지속가능성인증인은 다음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부전문가와의 모든 논의 결과
- 인증인이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그 결과로 도출된 결론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함에 있어 인증인이 식별한 중요한 위협 및 해당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



##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국제독립성기준

### 5400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독립성에 대한 개념체계 적용

#### 개요 일반사항

5400.1 지속가능성인증인(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tioners (SAPs))은 공익에 부합하고 이 윤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문단 5400.2는 공란으로 둔다]

5400.3 제5부에서 “지속가능성인증인”이란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및 이들 개인이 소속된 회계법인을 의미한다.

####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범위*

5400.3a 제5부의 국제독립성기준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 (a) 일반목적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되는 경우
- (b) 다음과 같은 경우
  - (i) 법규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ii) 투자자 또는 기타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

5400.3b 법규에 따라 5400.3a에 설명된 것 이외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제5부의 국제독립성 기준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

5400.3c 제5부의 국제독립성기준은 합리적 확신업무와 제한적 확신업무 모두에 적용된다. 제5부에는 합리적 지속가능성 확신업무의 맥락에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언급이 있다. 제한적 확신업무의 맥락에서 이러한 언급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결론을 표명하는 회계법인을 의미한다.

5400.3d 인증업무는 입증업무 또는 직접업무일 수 있다. 제5부의 국제독립성기준은 입증업무인 지속가능성인증업무만을 다룬다.

5400.3e 이 윤리기준의 제4B부에서는 제5부의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닌 다음과 같은 기타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독립성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가 전적으로 다음에 따라 보고되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 특정 이용자의 정보 필요성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체계

- 회사가 개발한 준거기준
-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의 사용 및 배포가 제한된 지속가능성인증업무

**품질관리**

5400.3f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내에서의 품질관리는 양질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지속가능성인증기준은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관련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시스템을 설계, 구축 및 운영한다는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은 품질경영기준서 1 또는 최소한 그에 준하는 기타 법규상의 요구사항 또는 전문가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5400.4 품질관리시스템의 설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다루는 법규상의 요구사항 또는 전문가적 요구사항은 독립성 관련 요구사항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란 회계법인, 그 임직원, 그리고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의 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을 적용 받는 다른 개인들(해당되는 경우)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말한다. 회계법인 내에서의 책임 배분은 회계법인의 규모, 구조 및 조직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여러 조항에서는 독립성과 관련된 조치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속한 개인의 구체적인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대신 사용의 편의상 “회계법인”으로 통칭한다.

5400.5 독립성은 공정 및 성실과 연계된 강령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a) 정신적 독립성 -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시키는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개인이 성실하게 행동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며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하도록 함.
- (b) 외관상 독립성 -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가 회계법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의 성실, 공정성 또는 전문가적 의구심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중요한 사실이나 상황을 회피함.

제5부에서 개인 또는 회계법인이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해당 개인 또는 회계법인이 제5부의 조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400.6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이 윤리기준에 따라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5부에서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는 5110에서 제시하는 윤리강령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독립성에도 적용된다. 5405는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5400.7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 (a)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 및 상황(전문업무,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를 포함)
- (b)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적합한 안전장치를 포함하는 가능한 조치

- (c) 위협을 제거할 수 없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안전장치가 없는 일부 상황

### 업무팀 및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

- 5400.8 제5부의 국제독립성기준은 업무팀원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 5400.9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위한 업무팀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모든 리더 및 스태프와 회계법인의 네트워크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절차를 수행하는 기타 모든 개인이 포함된다.

### [문단 5400.10는 공란으로 둔다]

- 5400.10a 회계법인이 타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며 해당 인증인의 업무를 지시, 감독 및 검토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인증인은 업무팀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목적으로 부문의 지속가능성정보에 대한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에 소속된 개인은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에 해당한다.

- 5400.11 지속가능성인증업무는 업무팀이 보유하고 있는 것 이상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사항에 대하여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는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부문의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에 의해 고용된 전문가가 관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은 다음과 같이 그 역할에 따라 업무팀원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에 해당할 수 있다.

- 특정한 지속가능성 보고 또는 인증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개인은 업무팀원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속가능성 항목의 측정 또는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화된 도구와 기법을 통해 생성된 복잡한 정보를 분석하는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여기에 포함된다.
-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위해 기술적 또는 산업 특유의 이슈, 거래 또는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회계법인에 고용된 개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지만 업무팀원은 아니다.

단, 외부전문가인 개인은 업무팀원도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도 아니다. [참조: 5390]

- 5400.12 지속가능성인증업가가 업무품질 검토 대상인 경우, 업무품질 검토담당자 및 기타 업무품질 검토를 수행하는 개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지만 업무팀원은 아니다.

### 타 인증인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참여

- 5400.12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제표가 동일한 보고회사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속가능성 정보의 보고 범위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보고 범위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가치사슬 전방 및 후방의 업무, 운영, 관계 또는 자원이 보고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5400.12b 업무와 관련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타 인증인이 있고 회계법인이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시, 감독 및 검토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 인증인은 이미 업무를 완료했거나, 또는 법률, 규정 또는 기타 조건으로

인해 정보나 사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회계법인과 협력하지 못할 수 있다.

- 5400.12c 타 인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회계법인이 해당 인증업무를 지시, 감독 및 검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증인은 업무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법인이 해당 인증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은 제5부의 5406에서 제시하고 있다.

### 공익실체(Public Interest Entity)

- 5400.13 제5부에 제시된 일부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은 공익실체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만 적용 가능하다. 제4A부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공익실체로 정의된 기업은 제5부의 공익실체에 해당한다.
- 5400.13a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자발적으로 해당 회사를 공익실체로 취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회계법인도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회사를 공익실체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문단 5400.14는 공란으로 둔다]

- 5400.15 이해당사자들은 공익실체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공익실체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의 목적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이해당사자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다.

#### [문단 5400.16는 공란으로 둔다]

### 감사업무와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회계법인

- 5400.16a 감사업무 및 검토업무에 대한 국제독립성 기준은 제4A부 - *감사와 검토업무의 독립성*에 제시되어 있다. 회계법인이 동일한 의뢰인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감사업무 또는 검토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및 감사업무팀원에게는 제4A부를 포함한 이 윤리기준의 감사 및 검토업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문단 5400.17은 공란으로 둔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R5400.18**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R5400.19** 회계법인은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경영자 책임의 부담 금지

- R5400.20**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경영자 책임을 부담해서는 아니 된다.

5400.20 A1 경영자 책임에는 법인을 통제하고, 이끌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적, 재무적, 기술적, 유형 및 무형 자원의 획득, 배치 및 통제에 대한 의사결정 포함)이 포함된다.

5400.20 A2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경영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 이기적위협 및 유착위협이 발생한다. 경영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경영진의 관점과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동조하게 되어 변호위협 역시 발생할 수 있다.

5400.20 A3 특정 활동이 경영자 책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된다. 경영자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업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정책 및 전략 방향의 설정(예: 지속가능한 정책 및 목표 설정)
- 임직원의 채용 및 해고
-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활동을 지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거래 승인
-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제3자의 권고사항 중 실행할 사항 결정
- 경영진을 대신하여 지배기구에 보고
- 다음에 대한 책임 부담
  -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용하는 준거기준의 수립
  - 보고대상인 중요한 지속가능성 사항의 식별 등 관련 지속가능성보고체계에 따른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 및 제출
  - 내부통제의 설계, 구축,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 공급망 관리
  - 의뢰인을 위해 지속가능성 자료를 수집 또는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 또는 구축
  - 환경크레딧 또는 환경자원총량제(environmental offset)에 대한 보고
  -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원 배분
- 은행계좌 또는 투자자산의 통제 또는 관리

5400.20 A4 문단 R5400.21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경영진의 책임이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문하고 및 권고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경영자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가 아니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자문 및 권고의견을 제공하면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5600에서 다루고 있다.

**R5400.2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전문업무를 수행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의뢰인의 경영진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의 경영진은 다음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 (a) 항상 의뢰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책임자를 지정함. 이러한 책임자(가급적이면 고위경영진 중에서 지정)는 다음을 이해해야 함.
  - (i) 해당 업무의 목적, 성격 및 결과
  - (ii) 의뢰인 및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 각각의 책임그러나, 해당 책임자가 그 업무를 수행 또는 재수행할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님.
- (b) 업무를 감독하고 수행된 업무의 결과가 의뢰인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함.
- (c) 업무의 결과로 인해 취해지는 조치(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을 짐.

5400.21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전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이 사용되는 경우, 해당 기술 사용의 성격 또는 범위에 관계없이 문단 R5400.20 및 R5400.21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 공익실체

##### [문단 R5400.22부터 5400.24 A1까지는 공란으로 둔다]

- R5400.25** 문단 R5400.26에 따라, 회계법인이 문단 5400.13에 설명된 공익실체의 독립성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회계법인은 이해당사자의 정보 접근성 및 시기를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R5400.26** 문단 R5400.25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공개가 회사의 비밀 향후계획을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그러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특수관계자

- R5400.27** 용어정의에 따라, 공개거래법인인 지속가능성인증의뢰인에는 그의 모든 특수관계자가 포함된다. 공개거래법인이 아닌 다른 모든 법인을 제5부에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 언급하는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특수관계자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포함된다. 의뢰인의 다른 특수관계자와의 관계 또는 상황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회계법인의 독립성 평가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와 같이 믿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은 해당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문단 5400.28부터 5400.29까지는 공란으로 둔다]

#### 독립성 유지 의무 기간

- R5400.30** 제5부의 국제독립성기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 기간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a) 업무수행기간

(b) 업무의 보고기간

5400.30 A1 업무수행기간은 업무팀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착수하는 때부터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가 발행되는 때까지의 기간이다. 계속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경우 업무수행기간의 종료일은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업무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한 일자와 최종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의 발행일자 중 더 늦은 일자로 한다.

5400.30 A2 업무의 보고기간은 재무제표의 보고기간과 동일할 수 있다. 업무 보고기간은 역사적 정보의 시작부터 미래예측정보의 종료까지 지속가능성 정보에서 다루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R5400.31** 업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이후에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임하게 된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이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 업무의 보고기간이나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임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있었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재무적 이해관계 또는 사업관계

(b)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이전에 제공하였던 업무

5400.31 A1 회계법인이 업무의 보고기간이나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착수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업무수행기간에는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비인증업무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한 경우,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다.

5400.31 A2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은 제공된 서비스의 결과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또는 회계법인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이다.

5400.31 A3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이용하여 비인증업무를 수행함.
-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비인증업무를 적절하게 검토하게 함.
-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 다른 회계법인에게 비인증업무의 결과를 평가하게 하거나 혹은 비인증업무를 재수행하게 하여 그 다른 회계법인이 비인증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

5400.31 A4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수행기간 또는 업무보고기간 이전에 비인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면, 해당 위협은 그러한 업무의 결과가 다른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이용 또는 이행된 경우 제거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한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R5400.32** 회계법인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하여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수임하기 이전에 해당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비인증업무를 제공한 바 있는 공익실체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경우는 제외한다.

- (a)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수행기간 개시 전에 해당 비인증업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 (b) 회계법인이 독립성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c) 회계법인이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의 관점에서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제거되었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5400.32 A1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 공익실체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입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비인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전임 회계법인이 전기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의 결과가 지속가능성인증절차의 대상이 된 경우
-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인증인으로 하여금 자기검토위협의 영향을 받는 첫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 검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 공익실체가 네트워크 외부의 다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다른 회계법인이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 (i) 비인증업무의 결과 평가
  - (ii) 서비스 재수행

**[문단 5400.33부터 5400.39까지는 공란으로 둔다]**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5400.40 A1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문단 R5300.9 및 R5300.10에서 제시하고 있다.

5400.40 A2 이 윤리기준, 관련 전문가 기준, 법규 등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계법인이 독립성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관계나 기타 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법인과 의뢰인의 지배기구가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지배기구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a) 위협의 식별 및 평가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판단한 사항을 고려함.
- (b) 위협에 대처한 방법(적용이 가능한 안전장치의 적절성을 포함)을 고려함.
- (c) 적절한 조치를 취함.

이러한 접근법은 압력위협과 유착위협에 대하여 특히 유용할 수가 있다.



[문단 5400.41부터 5400.49까지는 공란으로 둔다]

**네트워크 법인**

5400.50 A1 회계법인은 전문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종 다른 회계법인이나 다른 회사와 연합하여 보다 규모가 큰 조직을 형성한다. 이러한 대규모 조직이 네트워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해당 회계법인과 회사가 법적으로 분리·구분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R5400.51** 네트워크 법인은 제5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자신이 속하는 네트워크에 소속된 다른 회계법인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5400.51 A1 제5부에서 네트워크 법인에 적용하는 독립성 요구사항은 네트워크 법인의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회사(컨설팅회사 또는 법무회사 포함)에게 적용하며 해당 회사가 회계법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R5400.52** 다른 회계법인 및 기타 회사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과 연계되는 회계법인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이러한 대규모 조직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발휘함.
- (b)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가 이러한 대규모 조직 내의 다른 회계법인 및 기타 회사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c) 이러한 대규모 조직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그러한 판단을 적용해야 함.

**R5400.53** 회계법인 및 기타 회사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회계법인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 (a)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이익공유 및 비용분담을 분명한 목적으로 함. (참조: 문단 5400.53 A2)
- (b)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공동의 소유와 통제 또는 경영을 공유함. (참조: 문단 5400.53 A3)
- (c)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공동의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를 공유함. (참조: 문단 5400.53 A4)
- (d)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공동의 사업전략을 공유함. (참조: 문단 5400.53 A5)
- (e)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공동의 브랜드명칭을 공유함. (참조: 문단 5400.53 A6 및 5400.53 A7)
- (f)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전문 자원 중 상당 부분을 공유함. (참조: 문단 5400.53 A8 및 5400.53 A9)

- 5400.53 A1 대규모 조직에 포함된 회계법인과 기타 회사 간에 문단 R5400.53에서 규정한 약정 외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른 약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대규모 조직은 오로지 업무 알선 편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 대규모 조직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 5400.53 A2 공유하는 비용이 미미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 공유만으로는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다. 또한 공유하는 비용을 지속가능성인증기법, 매뉴얼 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하는 경우, 그러한 한정된 비용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회계법인과 어떤 회사가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거나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휴를 맺고 있고 해당 제휴관계 외의 다른 관계는 없는 경우, 그러한 제휴관계만으로는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다. (참조: 문단 R5400.53(a)).
- 5400.53 A3 공동의 소유와 통제 또는 경영은 계약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참조: 문단 R5400.53(b))
- 5400.53 A4 공통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는 대규모 조직 전반에 걸쳐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되는 정책 및 절차를 의미한다. (참조: 문단 R5400.53(c))
- 5400.53 A5 사업전략의 공유는 공통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사들의 합의를 수반한다. 어떤 회사가 단순히 전문업무에 대한 제안요청에 공동으로 응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와 협력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회사를 네트워크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 문단 R5400.53(d))
- 5400.53 A6 공통의 브랜드명칭에는 공통의 이니셜이나 공통의 명칭이 포함된다.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에 공통의 브랜드명칭을 회계법인 명칭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거나 회계법인 명칭에 덧붙여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회계법인은 공통의 브랜드명칭을 사용한다고 본다. (참조: 문단 R5400.53(e))
- 5400.53 A7 회계법인이 네트워크에 속하지도 않고 공통의 브랜드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계법인의 문구류 또는 홍보자료에 해당 회계법인이 특정 연합체의 일원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해당 회계법인은 외관상 네트워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회계법인이 그러한 제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계법인이 네트워크에 속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참조: 문단 R400.53(e))
- 5400.53 A8 전문 자원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고객 자료, 청구 및 업무시간기록 등)를 교환할 수 있는 공통시스템
  - 리더와 기타 인력
  -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 또는 산업 특유의 문제, 거래 또는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부서
  - 지속가능성인증기법 또는 지속가능성인증매뉴얼
  - 교육 과정과 시설 (참조: 문단 R5400.53(f))
- 5400.53 A9 공유되는 전문 자원이 중요한지 여부는 다음의 예와 같이 결정된다.

- 공유되는 자원이 공통의 지속가능성인증기법이나 지속가능성인증매뉴얼에만 국한되고 인적 정보나 고객정보 또는 시장정보의 교환은 없는 경우, 그러한 공유되는 자원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공유되는 자원이 공통의 훈련프로그램에만 국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인력풀을 공유하거나 공통의 전문부서를 두고 해당 조직에 속한 회계법인들이 따라야 하는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게 하는 등 공유되는 자원에 인력이나 정보의 교환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가 공유되는 자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참조: 문단 R5400.53(f))

**R5400.54**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가 사업의 한 부분을 매각하며 그 매각된 사업부문이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의 명칭 중 전체 또는 일부를 제한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 관련 회사들은 외부에 자신들을 나타낼 때 네트워크 법인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5400.54 A1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가 사업의 한 부분을 매각하며 체결하는 계약서 상에 매각된 사업부문이 더 이상 회계법인이나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의 명칭 중 전체 또는 일부를 제한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두 회사가 공통의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회사들이 협력을 지향하는 대규모 조직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회사들은 네트워크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단 5400.55부터 5400.59까지는 공란으로 둔다]

####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독립성에 대한 일반적인 문서화

**R5400.60** 회계법인은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준수와 관련하여 도출한 결론 및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관련 논의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특히, 회계법인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위협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안전장치가 적용된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위협의 성격과 마련되어 있거나 적용되는 안전장치를 문서화하여야 함
- (b) 위협에 대하여 유의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회계법인이 해당 위협이 이미 수용가능한 수준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위협의 성격과 그러한 결론의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함.

5400.60 A1 문서화는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결론을 형성할 때 회계법인이 내린 판단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문서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회계법인이 특정 문제를 고려하였는지 또는 회계법인이 독립적인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문단 5400.61부터 5400.69까지는 공란으로 둔다]

#### 합병 및 인수

*의뢰인의 합병으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5400.70 A1 어떤 회사가 합병 또는 인수로 인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과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에 과거 또는 현재의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해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그 결과 해당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유지하는 능력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R5400.71** 문단 5400.70 A1에서 제시된 상황에서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회계법인은 해당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를 고려한 후, 인수합병일 이후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결과 해당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유지하는 해당 회계법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과거와 현재의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를 식별하고 평가해야 함.
- (b) 회계법인은 문단 R5400.72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윤리기준이 허용하지 않는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를 인수합병일까지 종료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R5400.72** 문단 R5400.71(b)에 대한 예외로서,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를 인수합병일까지 합리적으로 종료할 수 없는 경우 회계법인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야기된 위협을 평가해야 함.
- (b)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를 인수합병일까지 합리적으로 종료할 수 없는 사유와 해당 위협 수준의 평가에 대해 지배기구와 논의하여야 함.

5400.72 A1 특정 상황에서는, 위협을 발생시키는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를 인수합병일까지 합리적으로 종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 사유로는 회계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수합병일까지 특수관계자가 해당 비인증업무를 다른 서비스 제공 업체로 순조롭게 이관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5400.72 A2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를 합리적으로 종료할 수 없는 경우 합병 또는 인수로 야기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의 성격 및 중요성
- 특수관계자 관계의 성격 및 중요성(예: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인지 지배회사인지 여부)
-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 합리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R5400.73** 문단 R5400.72(b)에서 제시하는 논의를 진행한 후 지배기구가 회계법인에게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계속 유지해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여야 한다

- (a)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될 것이고 늦어도 인수합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것임.
- (b) (5600 및 그 하위규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인증업무를 수행으로 인한 관계를 포함하여) 이러한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에 있는 개인은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을 수행하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해당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책임자 역할을 하지 아니함.
- (c) 필요한 경우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지배기구와 이에 대해 논의함.

5400.73 A1 이러한 경과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다른 지속가능성인증인에게 해당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비인증업무를 적절히 검토하게 함.
- 해당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지속가능성인증인에게 업무품질관리검토에 상응하는 검토를 수행하게 함.
- 다른 회계법인에게 비인증업무의 결과를 평가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회계법인이 비인증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도까지 비인증업무를 재수행하게 함.

**R5400.74** 회계법인이 인수합병일 이전에 해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상당 부분을 완료하였고 남아있는 인증절차도 단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단 5400.70 A1에서 식별된 이해관계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배기구가 회계법인에게 해당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완료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여야 한다.

- (a) 발생하는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지배기구와 논의함.
- (b) 문단 R5400.73(b)부터 (c)까지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함.
- (c)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가 발행되는 즉시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수행을 중단함.

*공정성이 손상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R5400.75** 문단 R5400.71부터 R5400.74까지 규정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회계법인은 문단 5400.70 A1에서 식별된 상황으로 인해 공정성이 손상될 정도로 심각하여 대처할 수 없는 위협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회계법인은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수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문서화*

**R5400.76** 회계법인은 다음을 문서화해야 한다.

- (a) 문단 5400.70 A1에 따라 식별되었고 인수합병일까지 종료될 수 없는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 및 그 관계들이 종료될 수 없는 사유
- (b) 적용된 경과조치
- (c) 지배기구와 논의한 결과
- (d) 과거와 현재의 이해관계와 기타 관계가 회계법인의 공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유

[문단 5400.77부터 5400.79까지는 공란으로 둔다]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독립성 조항의 위반**

회계법인이 위반을 식별한 경우

**R5400.80** 회계법인이 제5부의 독립성 요구사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리는 경우, 회계법인은 다음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 (a) 위반을 발생시킨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를 종료, 중단 또는 제거하고 해당 위반의 결과에 대처함.
- (b)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이 이러한 위반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적용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실행함.
  - (i) 이들 요구사항을 준수함.
  - (ii) 필요한 경우, 해당 위반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 또는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고려함.
- (c)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다음의 보고 대상자에게 위반을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함.
  - (i) 업무수행리더
  - (ii)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대한 운영책임자
  - (iii)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적절한 경우)에 소속된 기타 관련 당사자
  - (iv) 제5부의 독립성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기타 당사자
- (d) 위반의 심각성과 그 위반이 회계법인의 공정성 및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를 발행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e)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다음을 결정함.
  - (i)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종료해야 하는지 여부
  - (ii) 위반의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게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해당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

이러한 결정을 할 때 회계법인은 전문가적 판단을 발휘하고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가 회계법인의 공정성이 손상되어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를 발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 같은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5400.80 A1 회계법인이 독립성 요구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부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인증계약을 종료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5400.80 A2 위반의 심각성 및 위반이 회계법인의 공정성 및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를 발행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 위반의 성격 및 기간
- 현재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위반의 횟수 및 성격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위반을 발생시킨 재무적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

- 위반을 발생시킨 개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인지 또는 독립성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기타 개인인지 여부
- 위반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과 관련된 경우 해당 팀원의 역할
- 위반이 전문업무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서비스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나 해당 지속가능성 정보를 구성하는 자료에 미치는 영향(있는 경우)
- 위반으로 발생한 이기적위험, 변호위험, 압력위험 또는 기타 위험의 수준

5400.80 A3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회계법인이 위반에 만족스럽게 대처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관련된 당사자를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킴.
- 타인으로 하여금 영향을 받은 인증업무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거나 필요한 수준까지 해당 업무를 재수행하도록 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다른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영향을 받은 인증업무를 필요한 수준까지 검토하거나 재수행하도록 권고함.
- 위반이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나 해당 지속가능성 정보를 구성하는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증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다른 회계법인에게 비인증업무의 결과를 평가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회계법인이 비인증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도까지 비인증업무를 재수행하게 함.

**R5400.81** 위반의 결과에 만족스럽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가능한 신속하게 이를 지배기구에 알리고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인증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법규에서 지속가능성인증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회계법인은 관련 보고 또는 정보공개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R5400.82** 위반의 결과에 만족스럽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지배기구와 다음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 (a) 해당 위반의 심각성(그 성격 및 기간을 포함)
- (b) 위반이 발생한 이유 및 위반을 식별한 방법
- (c) 제안된 또는 실행된 조치 및 해당 조치가 위반의 결과에 만족스럽게 대처하고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
- (d) 회계법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공정성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결론 및 이러한 결론의 근거
- (e) 추가적인 위반이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제안 또는 실행한 조치

지배기구가 유의적이지 않은 위반에 대한 보고를 위해 논의시점을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논의는 가능한 한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

*지배기구와의 위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5400.83 A1 문단 R5300.9 및 R5300.10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R5400.84** 위반이 있는 경우,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지배기구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 (a) 문단 R5400.82에 따라 논의한 모든 사안, 그리고 위반의 결과에 만족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는 취했는지에 대해 지배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함.
- (b) 다음을 기술한 내용
  - (i)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회계법인이 설계한 위반에 관련된 정책 및 절차
  - (ii) 추가적인 위반이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취했거나 취할 예정인 조치

**R5400.85** 지배기구가 문단 R5400.80(e)(ii)에 따라 회계법인이 실행예정인 조치가 위반의 결과에 만족스럽게 대처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계법인은 문단 R400.81에 따라 지속가능성인증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전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의 발행 전에 발생한 위반*

**R5400.86** 이전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의 발행 전에 위반이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은 제5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반의 심각성 및 해당 위반이 회계법인의 공정성 및 회계법인이 당기에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를 발행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R5400.87** 또한 회계법인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이전에 발행된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와 관련하여 위반이 회계법인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있는 경우)과 이러한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의 철회 가능성을 고려함.
- (b) 해당 사안을 지배기구와 논의함.

*문서화*

**R5400.88** 회계법인은 문단 R5400.80부터 R5400.87까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을 문서화해야 한다

- (a) 위반사항
- (b) 실행한 조치
- (c) 주요 의사결정 사항



- (d) 지배기구와 논의한 모든 사안
- (e)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독기관 또는 감독당국과 논의한 모든 사항

**R5400.89** 회계법인이 해당 지속가능성인증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다음을 문서화해야 한다.

- (a) 회계법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공정성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결론
- (b) 실행한 조치가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럽게 위반의 결과에 대처하였다는 근거

## 5405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

### 개요

5405.1 5400은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고, 5120에 제시된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5400은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할 때의 개념체계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5405.2 A1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에 따라, 회계법인은 그룹 내 부문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지속가능성인증기준에 따라 그룹 업무수행리더가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지시, 감독 및 검토를 포함하여 충분하고 적절하게 관여해야 할 수 있다.

5405.2 A1a 5405는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및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과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5405.2 A1b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목적으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5405는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해당 회계법인의 업무를 지시, 감독 및 검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5405.2 A2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참여하는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인증의견을 발행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법, 규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의견을 별도로 발행하는 경우에 서로 다른 독립성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할 수 있다.

####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과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간 커뮤니케이션

**R5405.3** 그룹 업무수행리더는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제5부의 관련 윤리조항(독립성 조항 포함)을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인지하도록 할 책임을 진다.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관련 윤리조항(독립성 조항 포함)을 인지하도록 할 때,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5405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5405.3 A1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지 여부와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된 윤리조항(독립성 조항 포함)
-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및 해당 회계법인에 소속되었거나 계약된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에게 적용되는 독립성 고려사항과 관련된 특수관계자 및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내 다른 부문
-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가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인지 여부

**R5405.4** 그룹 업무수행리더는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적용되는 제5부의 관련 조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준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책임이 있다. 또한 그룹 업무수행리더는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다음 사항을 모두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a)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한 모든 독립성 사항
- (b)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한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결론 및 그 결론의 근거

R5405a 그룹 업무수행리더가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항을 알게 되는 경우, 그룹 업무수행리더는 해당 위협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개인에게 적용되는 독립성 고려사항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및 그 네트워크 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계약된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R5405.5**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및 그 네트워크 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계약된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은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 적용되는 제5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의 기타 구성원*

**R5405.6**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네트워크 외부의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계약된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은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 적용되는 제5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 (a)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 (b)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의 대상 회사
- (c) (b)의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모든 회사. 단, 해당 회사가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R5405.7** 문단 R5405.6에서 다루는 회사 또는 부문 이외에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속한 특수관계자 또는 부문과 관련하여,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네트워크 외부의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계약된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은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맥락에서 개인의 독립성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거나 이와 같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모든 관계 또는 상황을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에 알려야 한다.

5405.7A1 문단 R5405.7을 준수할 때 개인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된 개인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관계나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회사에 중요한 경우, 해당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직접적 재무적 이해관계 또는 중요한 간접적 재무적 이해관계 (5510 참조)
- 다음과 같은 대출 또는 보증 (5511 참조)
  - 은행 또는 여신금융기관인 회사에 관련된 대출 또는 보증. 단, 해당 대출 또는 보증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은행 또는 여신금융기관인 회사에 관련된 대출 또는 보증. 단, 해당 대출 또는 보증이 통상적 대출 절차 및 조건 하에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 유의적이거나 중요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포함하는 사업관계 (5520 참조).
- 다음 지위에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5521 참조)
  - 회사의 임원
  -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 데이터나 기록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
- 다음 지위에 있거나 최근까지 있었던 개인 (5522 및 5523 참조)
  - 회사의 임원
  -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 데이터나 기록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

**R5405.8** 문단 R5405.7에 규정된 통지를 받은 경우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개인의 관계 또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에 적용되는 독립성 고려사항

**R5405.9**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에 적용되는 제5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네트워크 법인에 적용되는 독립성 고려사항**

**R5405.10**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네트워크 법인은 네트워크 법인에 적용되는 제5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네트워크 외부의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에 적용되는 독립성 고려사항**

*전체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R5405.11**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네트워크 외부의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다음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 (a) 모든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적용되는 제5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b)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의 대상 회사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에 문단 R5510.4(a), R5510.7 및 R5510.9의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c)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인증대상인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에 관련된 회사가 관여된 대출 및 보증과 관련하여 5511의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R5405.12**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네트워크 외부의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문단 R5405.11(b) 및 (c)에서 다루는 사항 이외에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관련된 관계 또는 상황이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독립성 평가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와 같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그러한 관계 또는 상황을 포함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R5405.13**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네트워크 외부의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네트워크 내에 있는 회계법인과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관계가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킴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와 같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이러한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독립성 유지 의무 기간

**[문단 5405.14 A1은 공란으로 둔다]**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아닌 경우*

**R5405.15**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아닌 경우,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네트워크 외부의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제5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5405.15 A1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네트워크 외부의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공익실체인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가 아닌 다른 사유(예: 법정 지속가능성인증업무)로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는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비인증업무

**R5405.16** 문단 R5405.17에 따라,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에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네트워크 외부의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해당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비인증업무 제공과 관련하여 공익실체에 적용되는 5600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405.16 A1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네트워크 외부의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 공익실체가 아닌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해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인증업무를 수행 중인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601 참조)
- 공익실체가 아닌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부문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기록을 위한 정보 또는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지속가능성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기술시스템이나 그 측면을 설계하는 행위 (5606 참조)
- 공익실체가 아닌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분쟁 또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이나 법원에서 변호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 (5608 참조)

5405.16 A2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네트워크 외부의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지속가능성 정보는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비인증업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기검토위협 평가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5600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인증절차가 온실가스 배출 등 특정 항목에 국한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고 또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기록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증업무의 결과는 자기검토위협 평가와 관련이 있다.

**R5405.17** 문단 R5405.16의 예외로서,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네트워크 외부의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5600에 따라 금지되지 않은 비인증업무를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된 비인증업무에 대한 정보를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에 알리거나 문단 R5600.21부터 R5600.24까지에서 다루는 해당 업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

**R5405.18** 그룹 업무수행리더는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부문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가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로 결정하는 경우, 그룹 업무수행리더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해당 개인에게 그러한 결정을 커뮤니케이션한다.
- (b) 다음을 모두 명시한다.
  - (i) 전체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경우, 해당 개인에게 문단 R5411.4이 적용됨.
  - (ii)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해당 개인에게도 문단 R5524.6, R5540.5(c) 및 R5540.20이 적용됨.

5405.18 A1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는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그룹 지속가능성정보에서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유의적인 사항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또는 판단을 내린다.

## 부문의 변화

### *전체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R5405.19** 특수관계자가 아닌 회사가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부문이 되는 경우,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문단 R5400.71부터 R5400.76까지를 적용해야 한다.

##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변화

### *전체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405.20 A1 업무의 보고기간 중이나 그 이후에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다른 회계법인에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으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예: 의뢰인의 합병 또는 인수로 인해). 다음으로 인해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a) 해당 업무의 보고기간 중이나 그 이후이면서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인증업무 수입에 동의하기 이전에,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간에 있었던 재무 관계 또는 사업 관계
- (b)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이전에 제공한 업무

5405.20 A2 문단 5400.31 A1부터 A3까지는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업무에 대한 보고기간 중이나 그 이후이면서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업무수행기간에는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비인증업무를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한 경우에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 평가에 적용되는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5405.20 A3 문단 5400.31 A4는 업무의 보고기간 이전에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한 경우에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독립성 위협 평가와 관련된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5405.21 A1 문단 R5400.32 및 5400.32 A1은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공익실체인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의뢰인과 관련하여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을 목적으로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로 동의했으며, 해당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이전에 비인증업무를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5405.21 A2 문단 R5600.25 및 5600.25 A1은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추후 공익실체가 된 경우,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현재 또는 이전에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한 비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독립성 규정 위반**

5405.22 A1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405의 조항에 대한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문단 R5405.23부터 R5405.29까지는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에서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

5405.22 A2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네트워크 내에 있는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에서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문단 R5400.80부터 R5400.89가 적용된다.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위반을 식별한 경우*

**R5405.23**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5405에 대한 위반이 발생했다고 결론내리는 경우,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다음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 (a) 위반이 발생한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를 종료, 중단 또는 제거하고 위반의 결과에 대처함.
- (b) 위반의 심각성과 그 위반이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공정성 및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한 해당 회계법인의 인증업무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c)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위반의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게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해당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함.
- (d) 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평가와 위반의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 제안되었거나 취해진 조치를 포함하여, 해당 위반을 그룹 업무수행리더에게 신속하게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함.

- 5405.23 A1 문단 5400. 80 A2 및 A3는 공정성 위반의 심각성 및 해당 위반이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공정성과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목적으로 해당 부문에서 수행한 인증업무에 관한 의견 또는 결론을 발행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평가, 그리고 위반의 결과에 만족스럽게 대처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한 해당 회계법인의 고려에 관련된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R5405.24** 그룹 업무수행리더는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위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받은 후 다음을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 (a) 위반의 심각성과 위반이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평가, 그리고 위반의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 취할 수 있거나 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함.
  - (b) 그룹 지속가능성 업무 회계법인이 그룹 지속가능성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함.
  - (c)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결정함.
- R5405.25** 문단 R5405.24를 적용함에 있어 그룹 업무수행리더는 전문가적 판단을 발휘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가 해당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며 따라서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것 같은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5405.25 A1 그룹 업무수행리더가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위반의 결과에 만족스럽게 대처하여 그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계속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그룹 업무수행리더는 해당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반에 만족스럽게 대처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의 예로는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위반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하여 특정 절차를 수행하거나,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영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것 등이 있다.
- 5405.25 A2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위반이 발생하고 그 위반이 만족스럽게 대처되지 않은 경우,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해당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그룹 업무수행리더는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 필요한 인증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찾을 수 있다. 그러한 수단의 예로는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인증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에 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있다.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와의 논의*

- 5405.26 A1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네트워크 내에 있는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위반에 대해서는 문단

R5400.84가 적용된다

**R5405.27**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네트워크 외부의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위반에 대해서는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와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a) 위반의 성격 및 기간 등 위반의 심각성과 위반에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평가, 그리고 취할 수 있거나 취한 조치

(b) 다음 사항의 여부

(i) 해당 조치가 위반의 결과에 만족스럽게 대처할 것이거나 이미 대처했는지 여부

(ii)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 필요한 인증 증거를 확보할 것인지 여부

지배기구가 심각하지 않은 위반에 대한 보고를 위해 논의시점을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논의는 가능한 한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

**R5405.28**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문단 R5405.27에 따라 논의한 모든 사안을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지배기구로부터 위반의 결과에 만족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거나 이미 취했다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R5405.29** 지배기구가 실행할 수 있거나 실행한 조치가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에서 발생한 위반의 결과에 만족스럽게 대처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은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활용해서는 사용하지는 아니 된다.

## 5406 단위 회사 또는 그룹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관여하는 타 인증인

### 개요

5406.1 5400은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5406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지시, 감독 및 검토할 수 없는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타 인증인(practitioner)의 업무를 회계법인이 활용하는 경우의 개념체계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5406에서는 이러한 인증인을 "타 인증인"이라 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5406.2 A1 독립적으로 또는 그룹 차원에서 작성된 지속가능성 정보에는 타 인증인이 인증했거나 인증할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예로는 의뢰인이 특정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하여 타 인증인을 고용하기로 선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5406.2 A2 회계법인이 독립적 또는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위해 타 인증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5406에 언급된 회계법인, 업무수행리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은 해당되는 바에 따라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그룹 업무수행리더,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한 의미한다.

#### 회계법인과 타 인증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R5406.3**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타 인증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업무수행리더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제5부의 관련 윤리조항(독립성 조항 포함)을 해당 인증인이 인지하도록 할 책임을 진다. 타 인증인이 제5부의 관련 조항을 인지하도록 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인증인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5406.3 A1 회계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지 여부 및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된 규정
- 타 인증인에 대한 독립성 고려사항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내 특수관계자
- 독립성 유지 의무 기간

**R5406.4** 회계법인이 타 인증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수행리더는 해당 인증인에게 다음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책임이 있다.

- (a) 해당 업무가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경우, 인증인이 관련 윤리조항(독립성 조항 포함)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것인지 여부
- (b) 해당 업무가 이미 수행된 경우, 인증인이 관련 윤리조항(독립성 조항 포함)을 이해하고 준수했는지 여부

**회계법인이 타 인증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독립성 고려사항**

**R5406.5** 타 인증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인증인이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적용되는 제5부의 독립성 요구사항에 따라, 타 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점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에게 적용되는 제5부의 독립성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타 인증인에 소속된 개인이 해당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점

## 5407 가치사슬 회사에서 수행하거나 가치사슬 회사에 관련하여 수행한 인증업무와 관련한 독립성

### 고려사항

#### 개요

5407.1 5400은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하도록 요구한다. 5407은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가치사슬 회사에서 또는 가치사슬 회사와 관련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렇게 수행된 인증업무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체계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5407.2 A1 회계법인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는 가치사슬 회사에서 제공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회계법인은 관련 지속가능성인증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치사슬 회사에서 또는 가치사슬 회사와 관련하여 인증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회계법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가치사슬 회사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함.
- (b) 가치사슬 회사에서 별도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업무를 활용함.
- (c) 가치사슬 회사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제공한 해당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5407.2 A2 가치사슬 회사에서 제공된 정보는 독립적 또는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에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5407에 언급된 회계법인, 업무수행리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은 해당되는 바에 따라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그룹 업무수행리더,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한 의미한다.

#### 회계법인이 가치사슬 회사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독립성 고려사항

**R5407.3**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가치사슬 회사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및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에게 적용되는 제5부의 독립성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과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은 가치사슬 회사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가치사슬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독립성 고려사항**

**R5407.4** 회계법인이 가치사슬 회사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회사에 적용되는 제5부의 회계법인 관련 독립성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인증인이 해당 가치사슬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5407.4 A1 문단 R5407.4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회계법인은 지속가능성인증인 보고서의 독립성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다.

**R5407.5**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가치사슬 회사에서 수행된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업무수행리더는 인증인에게 다음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책임이 있다.

- (a) 해당 업무가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경우, 인증인이 제5부의 관련 윤리조항(독립성 조항 포함)을 준수할 것인지 여부
- (b) 해당 업무가 이미 수행된 경우, 인증인이 제5부의 관련 윤리조항(독립성 조항 포함)을 이해하고 준수했는지 여부

**회계법인이 가치사슬 회사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제공한 가치사슬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독립성 고려사항**

**R5407.6** 회계법인이 가치사슬 회사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제공한 가치사슬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회계법인 및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은 제5부의 독립성 요구사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 5410 보수

### 개요

- 5410.1 회계법인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410.2 5330은 보수 및 기타 보상 약정의 수준과 성격이 하나 이상의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의 개념체계 적용과 관련된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5410은 인증의뢰인에게 청구되는 보수로 인해 발생하는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개념체계 적용과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5410.3 A1 전문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협의되고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지급하며,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의도된 지속가능성 정보이용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수용된다.
- 5410.3 A2 이해당사자들은 공익실체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투명성은 지배기구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과 의사결정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5410은 지배기구와 이해당사자 전반에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인증의뢰인에 대한 보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5410.3 A3 5410에서 지속가능성인증 보수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보수 또는 기타 유형의 보상으로 구성된다.
- 5410.3 A4 회계법인이 동일한 의뢰인에 대한 감사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감사 보수와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보수는 회계법인과 의뢰인이 합의할 사항이다. 지속가능성인증업무가 별도의 업무인 경우, 별도의 감사 업무에 적용되는 제4A부의 관련 조항 외에도 제5부의 조항이 적용된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지급하는 보수*

- 5410.4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보수를 협의하고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하며 독립성에 대한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5410.4 A2 개념체계의 적용에 따라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이나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기타 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제안한 보수로 인해 발생한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개념체계의 적용에 따라 회계법인은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수행기간 중 사실 및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러한 위협을 재평가해야 한다.
- 5410.4 A3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기타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회계법인의 상업적 우선순위와 시장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보수의 수준 및 해당 보수 수준과 필요 자원의 연계성 정도
-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보수와 지속가능성인증 이외의 업무에 대한 보수 간의 연계성 및 두 가지 보수의 상대적 규모
- 업무에 대한 보수 수준과 업무의 결과 사이의 의존성 정도
- 보수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회계법인인지 네트워크 법인인지
-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제공할 업무의 맥락에서 보수의 수준
-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법인의 운영 구조 및 보상 약정
- 의뢰인 또는 의뢰인을 소개하는 제3자가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업무수행리더 또는 사무소에 갖는 중요도
- 의뢰인의 성격(예: 의뢰인이 공익실체인지 여부)
- 지속가능성인증 이외의 업무가 제공되는 특수관계자와 의뢰인의 관계(예: 특수관계자가 자매회사인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합의할 때 지배기구의 관여도, 그리고 지배기구와 의뢰인 경영진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품질 및 전반적인 보수 수준을 강조하는 정도
- 보수 수준이 감독기관과 같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설정되었는지 여부
- 회계법인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품질이 감독기관 등 독립적인 제3자의 검토를 받는지 여부

5410.4 A4 5120.15 A3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 정책 및 절차(특히 관련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이 설계, 구축 및 운영하는 품질관리 시스템) 또한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410.4 A5 아래에 제시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은 위협이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추가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을 식별한다. 적용지침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협을 평가할 때 관련될 수 있는 추가적 요인의 예가 포함되어 있다.

#### 지속가능성인증의 보수 수준

5410.5 A1 지속가능성인증 또는 기타 업무에 대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청구할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 기준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특정 업무와 관련된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한 회계법인의 사업적 결정이다.

5410.5 A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지급하는 지속가능성인증 보수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이기적위험 및 압력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지속가능성인증 보수에 대한 회계법인의 상업적 근거
- 의뢰인이 지속가능성인증 보수를 낮추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가했거나 가하고 있는지 여부

5410.5 A3 이러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적절한 검토담당자가 업무의 범위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보수의 합리성을 평가하도록 함.
-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가 수행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되는 기타 업무의 영향*

**R5410.6** 문단 R5410.7에 따라,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지속가능성인증 이외의 업무가 지속가능성인증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10.6 A1 지속가능성인증 보수는 통상 문단 5410.23 A1에 식별된 것과 같은 사항들의 조합을 반영한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기타 업무의 제공은 지속가능성인증 보수의 결정에 있어 적절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R5410.7** 문단 R5410.6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회계법인은 지속가능성인증 보수를 결정할 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지속가능성인증 이외의 업무를 제공한 경험의 결과로 발생한 비용 절감액을 고려할 수 있다.

**성공보수**

5410.8 A1 성공보수는 거래의 결과나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와 관련하여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보수이다. 중개자를 통해 받는 성공보수는 간접적인 성공보수의 예이다. 법원이나 기타 관계당국이 정하는 성공보수는 5410에서 말하는 성공보수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R5410.9** 회계법인은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

**R5410.10**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한 비인증업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 (a)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계법인이 성공보수를 청구하고 해당 보수가 그 회계법인에 중요하거나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b)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중요한 부분에 참여하는 네트워크 법인이 성공보수를 청구하고 해당 보수가 그 네트워크 법인에 중요하거나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c) 비인증업무의 결과와 이로 인한 보수금액이,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포함된 중요 정보의 인증과 관련된 미래 또는 현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5410.10 A1 문단 R54109 및 R5410.10의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특정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더라도 이기적위협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5410.10 A2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능한 보수 금액의 범위
- 관계당국이 성공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결과를 결정하는지 여부
-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와 보상 근거를 의도된 이용자에게 공개
- 업무의 성격
- 해당 사건 또는 거래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미치는 영향

5410.10 A3 이러한 이기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비인증업무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수행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 보상 근거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사전 서면계약을 작성함.

#### **총 보수 - 지속가능성인증 보수 대비 지속가능성인증 외 업무 보수의 비중**

5410.11 A1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대상으로 감사 업무와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회계법인과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청구하는 보수와 관련하여 제4A부의 문단 410.11 A1부터 410.11 A3까지가 적용된다. 회계법인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문단 5410.11 A2부터 A4까지가 적용된다.

5410.11 A2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청구하는 보수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에게 지속가능성인증 이외의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기타 업무의 잠재적 상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기적위협 수준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압력위협을 유발할 수 있다.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 이외의 관계에 집중하여 지속가능성인증 제공자의 독립성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도 추가 고려사항이다.

5410.11 A3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지속가능성인증 보수 대비 지속가능성인증 외 업무 보수의 비율
- 지속가능성인증 보수 대비 지속가능성인증 외 업무 보수의 비율이 컸던 기간
- 다음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인증 외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
  - 반복적인 업무인지 여부
  - 법규에서 해당 업무를 회계법인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5410.11 A4 이러한 이기적위협 또는 압력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지속가능성인증 외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지속가능성인증 외 업무의 범위를 축소함.

#### 총 보수 - 연체보수

5410.12 A1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지속가능성인증 외 업무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지속가능성인증업무 기간 동안 연체되는 경우, 이기적위협 수준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5410.12 A2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은 지속가능성인증 보고서가 발행되기 전에 해당 보수를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5410.12 A3 이러한 이기적위협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회계법인에 대한 연체보수의 중요도
- 보수가 연체된 기간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연체보수 지급 능력과 의지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

5410.12 A4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체 보수 중 일부를 회수함.
-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수행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R5410.13** 특정 감사의뢰인이 지급할 보수 중 상당 부분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경우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a) 연체된 보수가 해당 의뢰인에 대한 대출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5511에 제시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됨.
- (b) 회계법인이 재선임되거나 해당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

#### 총 보수 - 보수 의존도

#####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410.14 A1 지속가능성인증의견을 표명하는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수총액이 해당 회계법인의 총수입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의뢰인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및 기타 업무에서 발생하는 보수에 대한 의존도와 그러한 보수의 상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기적위협 수준에 영향이 발생하고 압력위협이 발생한다.

5410.14 A2 회계법인의 총 보수를 산정할 때 회계법인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비중을 추정할 수 있다.

5410.14 A3 이러한 이기적위협 및 압력위협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회계법인의 운영구조

- 회계법인이 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 5410.14 A4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지속가능성인증 이외의 업무의 범위를 축소함.
  - 회계법인의 의뢰인 기반을 늘려 의뢰인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킴.
  - 다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함.
- 5410.14 A5 하나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회계법인이 수령한 보수가 해당 회계법인의 특정 리더 또는 특정 사무소의 수입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이기적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한다.
- 5410.14 A6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해당 리더 또는 사무소에 대하여 질적·양적으로 중요한 정도
  - 해당 리더 또는 해당 사무소의 리더들이 받는 보상이 해당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입액에 의존하는 정도
- 5410.14 A7 이러한 이기적위협 또는 압력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던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 리더가 받는 보상이 의뢰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
  - 리더 또는 사무소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지속가능성인증 이외의 업무 범위를 축소함.
  - 해당 리더 또는 사무소의 의뢰인 기반을 확대하여 특정 의뢰인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킴.
  - 해당 리더 또는 사무소가 다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범위를 확대함.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아닌 경우

- R5410.15** 연속된 5년의 기간 동안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수총액이 회계법인의 총수입액의 3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계법인은 다음 조치가 발생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 (a) 5차년도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의견을 표명하기 전에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지속가능성인증인으로 하여금 5차년도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 (b) 5차년도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의견이 발행된 후 6차년도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의견이 발행되기 전까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지속가능성인증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5차년도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 R5410.16** 문단 R5410.15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보수가 지속적으로 30%를 초과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매년 해당 연도의 업무에 적용되는 문단 R5410.15의 조치 중 어느 하나가 회계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총 보수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을 해소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해당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 R5410.17** 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하여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의 경우에 다른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매년 문단 R5410.15 (a)에 준하는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
- (a) 문단 R5410.15에서 다루는 상황이 인증의견을 표명하는 회계법인 중 하나에만 적용되는 경우
  - (b) 각 회계법인이 인증의견에 대한 개별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 R5410.18**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연속하는 2년 동안 받은 총 보수가 회계법인의 총수입액의 1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계법인은 2차년도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의견을 발행하기 전에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수행하는 업무품질 검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검토("보고서 발행 전 검토")가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해야 한다.
- R5410.19** 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하여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다른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매년 문단 R5410.18에 준하는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
- (a) 문단 R5410.18에서 다루는 상황이 인증의견을 표명하는 회계법인 중 하나에만 적용되는 경우
  - (b) 각 회계법인이 인증의견에 대한 개별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R5410.20** R5410.21에 따라, 문단 R5410.18에 설명된 상황이 연속된 5년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회계법인은 5차년도에 대한 인증의견을 발행한 후 지속가능성인증 제공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 R5410.21** R5410.20의 예외 사항으로, 공익을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계법인은 연속된 5년의 기간 이후에도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역할을 지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단,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 (a)
    - (i) 해당 국가에 지정된 규제기관 또는 회계사회(professional body)가 있는 경우, 회계법인이 해당 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해당 기관이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동의하는 경우
    - (ii) 해당 국가에 지정된 규제기관 또는 회계사회(professional body)가 없는 경우,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에 자문을 구하여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동의를 얻는 경우

- (b) 회계법인이 6차년도 및 그 이후 연도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의견을 발행하기 전에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지속가능성인증인으로 하여금 보고서 발행 전 검토를 수행하도록 함.

5410.21 A1 의뢰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소재지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할 다른 회계법인의 부재 등이 설득력 있는 사유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보수 관련 정보의 투명성

#### *지배기구와의 보수 관련 정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5410.22 A1 회계법인이 지배기구와 보수 관련 정보(지속가능성인증 및 지속가능성인증 외 서비스에 대한)에 관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회계법인의 독립성 평가에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행함으로써,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범위와 정도 및 지속가능성인증 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지배기구가 가질 수 있는 기대에 대하여 양방향으로 견해와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보수

**R5410.23** 문단 R5410.24에 따라, 회계법인은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 (a)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하여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수
- (b) 해당 보수 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이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그리고 수용가능한 수준이 아닌 경우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취했거나 취할 예정인 조치

5410.23 A1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보수에 대한 배경과 맥락을 제공하여 지배기구가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의 성격과 범위는 사실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규모, 복잡성 및 지리적 분포
  -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범위와 복잡성에 부합하는 소요시간 또는 예상 소요시간
  -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되거나 지출된 다른 자원의 비용
  - 지속가능성 정보 작성을 위한 기록 관리 및 프로세스의 품질
- 지속가능성인증업무 기간 중 제시 또는 청구된 보수의 조정 및 조정 사유
- 보수에 영향을 미친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전문가 기준의 변경

5410.23 A2 회계법인은 이러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고, 제안된 조정사항을 적절히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5410.24** 문단 R5410.23의 예외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회계법인은 타 공익실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배기구에 문단 R5410.23에 제시된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을 수 있다.

- (a) 회사가 해당 타 공익실체가 작성한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
- (b)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해당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기타 업무에 대한 보수

**R5410.25** 문단 R5410.27에 따라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 (a) 문단 R5410.23(a)에 따라 공개된 보수 이외에 해당 업무의 보고기간 동안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업무 제공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청구한 보수. 이러한 보수에는 회계법인이 의견을 표명할 대상이 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통합되어 있는 의뢰인 및 해당 의뢰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청구되는 보수만 포함된다.
- (b) 문단 5410.11 A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회계법인이 이기적위험의 수준에 대한 영향이 존재하며 지속가능성인증 보수에 대비한 지속가능성인증 이외의 업무에 대한 보수의 비중으로 인해 독립성에 대한 압력위험이 존재함을 식별한 경우,
  - (i) 해당 위험이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 (ii) 수용가능한 수준이 아닌 경우, 해당 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회계법인이 취했거나 취할 것을 제안하는 모든 조치

5410.25 A1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보수에 대한 배경과 맥락을 제공하여 지배기구가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의 성격과 범위는 사실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법규에서 요구하는 기타 업무에 대한 보수 금액
- 제공되는 기타 업무의 성격 및 관련 보수
- 지배기구가 승인한 일반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업무의 성격 및 관련 보수에 대한 정보
-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하여 회계법인과 네트워크 법인이 청구한 보수의 총합 대비 문단 R5410.25(a)에 언급된 보수의 비중

**R5410.26** 회계법인은 문단 R5410.23(a)에 따라 공개된 보수 이외에,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업무 제공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기타 특수관계자에게 청구되는 보수를 문단 R5410.23(a)에 규정된 커뮤니케이션에 포함해야 한다. 단, 이는 회계법인이 그러한 보수가 회계법인의 독립성

평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이와 같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410.26 A1 회계법인이 문단 R5410. 23(a)에 따라 공개된 보수 이외에,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업무 제공에 대하여 그러한 기타 특수관계자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총액으로 청구하는 보수가 회계법인의 독립성 평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회계법인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보수 협의를 포함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선임에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관여하는 정도
- 기타 특수관계자가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에 지급하는 보수의 중요도
- 해당 의뢰인이 지급하는 보수 대비 기타 특수관계자가 지급하는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

**R5410.27** 문단 5410.25의 예외 사항으로, 회계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타 공익실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배기구에 문단 5410.25에 제시된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 (a)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가 해당 타 공익실체가 작성한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
- (b)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해당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 보수 의존도

**R5410.28** 연속하는 2년동안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수총액이 회계법인의 총수입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회계법인은 지배기구에 다음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 (a) 해당 사실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b) 보고서 발행 전 검토의 활용을 포함하여(해당되는 경우) 발생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용된 안전장치 (참조: 문단 R5410.18)
- (c) 문단 R5410.21에 따라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모든 제안

#### 보수 관련 정보의 공개

5410.29 A1 공익실체가 공개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인증에 대한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이해당사자가 회계법인의 독립성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회계법인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간 업무관계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R5410.30** 법규에 따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지속가능성인증 보수, 지속가능성인증 외 업무에 대하여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법인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수 및 보수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경우, 회계법인은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와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 (a) 정보의 시기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법규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그러한 공개를 실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이해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



- (b)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수 및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보

5410.30 A1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수 및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보수 관련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인증 및 지속가능성인증 외 업무에 대한 전년도 보수에 대한 비교 정보
- 문단 R5410.31(b)에 따라 공개된 업무의 성격 및 관련 보수
-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수총액이 회계법인 총수입액의 1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안전장치

**R5410.31** 회계법인은 문단 R5410.30에 제시된 지배기구와의 논의 후,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관련 공개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단 R5410.32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a)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하여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법인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수
- (b) (a)에 따라 공개된 보수 이외에 해당 업무에 대한 보고기간 동안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업무 제공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청구한 보수. 이러한 보수에는 회계법인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통합되어 있는 의뢰인 및 의뢰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청구되는 보수만 포함됨.
- (c) (a) 및 (b)에 따라 공개된 보수 이외에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업무 제공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기타 특수관계자에게 청구한 보수. 단, 이는 회계법인이 그러한 보수가 회계법인의 독립성 평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이와 같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d) 해당되는 경우, 연속하는 2년동안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수총액이 회계법인의 총수입액의 1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및 해당 상황이 처음 발생한 연도

5410.31 A1 회계법인은 5410.30 A1에 설명된 예시와 같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수 및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향상할 수 있는 보수 관련 기타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5410.31 A2 회계법인이 문단 R5410.31(c)에 규정된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5410.26 A1에 제시되어 있다.

5410.31 A3 문단 R5410.31에 따라 보수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 회계법인은 정보의 시기와 이해당사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회계법인의 웹사이트에 공개
- 회계법인의 투명성 보고서에 공개
- 특정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개(예: 주주 서한)
- 지속가능성인증 보고서에 공개

**R5410.32** 문단 R5410.31의 예외 사항으로, 회계법인은 문단 R5410.31에 제시된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 (a)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를 작성하는 모회사
- (b) 다음과 같은 경우, 타 공익실체가 (직간접적으로) 완전소유한 회사
  - (i) 해당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가 타 공익실체가 작성한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
  - (ii)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해당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문단 R5410.33는 공란으로 둔다]**

## 5411 보상 및 평가 정책

### 개요

- 5411.1 회계법인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411.2 회계법인의 평가 또는 보상정책으로 인해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5411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5411.3 A1 특정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담당하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의 평가 또는 보상이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비인증업무의 수임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기적위협의 수준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 (a) 비인증업무의 수임실적에 근거한 보상 또는 성과평가가 차지하는 비중
  - (b)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해당 개인의 역할
  - (c) 이러한 비인증업무의 수임이 승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5411.3 A2 이기적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에 대한 보상 계획 또는 평가 프로세스를 수정함.
  -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을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킴.
- 5411.3 A3 이러한 이기적위협에 대처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R5411.4** 회계법인은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가 담당하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비인증업무 수임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리더를 평가하거나 또는 보상해서는 아니 된다. 이 요구사항이 회계법인 내의 리더들 사이의 통상적인 이익분배약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5420 선물 및 접대

### 개요

- 5420.1 회계법인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420.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선물 및 접대를 받는 경우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5420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R5420.3**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은 가치가 사소하고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선물 및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5420.3 A1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청탁을 하거나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우, 5340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되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5420.3 A2 청탁을 하거나 받는 것과 관련하여 5340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은 가치가 사소하고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행위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선물 및 접대를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5430 소송 또는 소송이 제기될 위협

### 개요

- 5430.1 회계법인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430.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소송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기적위협 및 압력위협이 발생한다. 5430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적용지침

#### 일반사항

- 5430.3 A1 의뢰인의 경영진과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간의 관계는 의뢰인이 그 사업활동의 모든 면을 아주 솔직하고 숨김없이 충분하게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간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혹은 소송이 제기될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대립하는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면, 충분한 공개를 하려는 경영진의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기적위협과 압력위협이 발생하게 된다.
- 5430.3 A2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 소송의 중요성
  - 해당 소송이 이전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 5430.3 A3 소송에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관련된 경우, 이러한 이기적위협 및 압력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해당 팀원을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 5430.3 A4 이러한 이기적위협 및 압력위협에 대처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5510 재무적 이해관계

### 개요

- 5510.1 회계법인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510.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기적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5510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5510.3 A1 재무적 이해관계는 직접 보유하거나 집합투자기구, 신탁 등의 중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될 수 있다. 수익자가 중개기관을 지배하고 있거나 중개기관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는 경우, 이 윤리기준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와 반대로, 수익자가 중개기관을 지배하고 있지 않거나 중개기관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윤리기준에서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5510.3 A2 5510에서는 재무적 이해관계의 중요성(materiality)에 관해 언급한다. 이러한 재무적 이해관계가 특정 개인에게 중요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net worth)을 합산하여 고려할 수 있다.
- 5510.3 A3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기적위험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역할
  - 재무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인지 혹은 간접적인지의 여부
  - 재무적 이해관계의 중요성

####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및 기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

- R5510.4** 문단 R5510.5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당사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혹은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 (a)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
- (b)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c) 업무수행리더가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의 다른 리더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d)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다른 리더와 관리자급 직원(업무참여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외),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5510.4 A1 업무수행리더가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반드시 업무수행리더가 배정받은 사무소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업무수행리더가 속해 있는 사무소가 다른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들이 속해 있는 사무소와 상이한 경우에는, 업무수행리더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어느 사무소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R5510.5** 문단 R5510.4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서, 문단 R5510.4(c) 또는 (d)에서 명시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나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할 수 있다.

- (a)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고용상의 권리로 인해 재무적 이해관계(예: 연금이나 주식선택권)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이 해당 재무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있음.
- (b)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재무적 이해관계에 대한 처분권이나 포기권(주식선택권의 경우에는 행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권리를 획득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재무적 이해관계를 처분하거나 포기하여야 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

**R5510.6** 특정 회사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해당 회사에 중요한 경우,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및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특정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나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할 수 없다.

#### 수탁자인 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

**R5510.7**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면, 문단 R5510.4에서 규정한 사항은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개인이 수탁자 역할을 수행하는 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에도 적용된다

- (a) 수탁자,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 중 어느 누구도 해당 신탁의 수익자가 아님.
- (b) 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가 전체 신탁에서 중요하지 아니함.
- (c) 신탁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 (d) 수탁자,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 중 어느 누구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투자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공동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R5510.8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특정 회사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그 회사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i) 재무적 이해관계가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및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그리고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중요하지 아니함.
  - (ii)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해당 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 (b) 문단 R5510.8(a)에 기술된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되기 전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 (i) 해당 재무적 이해관계를 처분함.
  - (ii) 남아있는 이해관계가 중요하지 않게 되도록 해당 이해관계를 충분히 처분함.

## 의도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 수령

**R5510.9**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이들 회사의 리더나 임직원 또는 이러한 개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상속, 증여, 합병의 결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나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재무적 이해관계가 5510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이러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 해당 재무적 이해관계를 즉시 처분하거나 남아있는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가 중요하지 않게 되도록 해당 이해관계를 충분히 처분함.
- (b) (i)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개인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 해당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급적 빨리 처분하거나 남아있는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가 중요하지 않게 되도록 이해관계를 충분히 처분함.
  - (ii) 회계법인은 필요한 경우 재무적 이해관계의 청산 시까지 발생된 위협에 대처해야 함.

## 재무적 이해관계 - 기타 상황

### 배우자 및 부양가족

5510.10 A1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5510.10 A2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해당 개인의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의 역할
- 회사의 지분이 일부에게 편중되어 있는지 또는 분산되어 있는지 여부
- 보유 지분을 통해 투자자가 해당 회사를 지배하는지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재무적 이해관계의 중요성

5510.10 A3 이러한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해당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을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5510.10 A4 이러한 이기적위협에 대처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측근가족

5510.10 A5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본인의 측근가족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5510.10 A6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과 그 측근가족 간 관계의 성격
- 재무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인지 아니면 간접적인지 여부
- 재무적 이해관계가 측근가족에게 중요한 정도

5510.10 A7 이러한 이기적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측근가족으로 하여금 재무적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처분하거나 남아있는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가 중요하지 않게 되도록 이해관계를 충분히 처분하도록 함.
- 해당 개인을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킴.

5510.10 A8 이러한 이기적위협에 대처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기타의 개인

5510.10 A9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다음 개인들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리더 및 전문직 임직원(문단 R5510.4에서 구체적으로 재무적 이해관계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과 긴밀한 친분 관계에 있는 개인

5510.10 A10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회계법인의 조직, 운영 및 보고 체계
- 개인과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간 관계의 성격

5510.10 A11 이러한 이기적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친분 관계를 가진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을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5510.10 A12 이러한 이기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을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킴.
-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퇴직연금*

5510.10 A13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퇴직연금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5511 대출과 보증

### 개요

- 5511.1 회계법인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511.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인해 이기적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5511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5511.3 A1 5511에서는 대출 또는 보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이러한 대출 또는 보증이 특정 개인에게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을 합산하여 고려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대출 및 보증 거래

- R5511.4**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다음의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대출이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
- (a) 대출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개인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 은행 또는 여신금융기관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대출 및 보증 거래

- R5511.5**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일반적인 절차 및 조건에 따라 대출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는, 은행 또는 여신금융기관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 5511.5 A1 대출의 예로는 모기지, 은행 당좌대월,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잔액 등이 포함된다.
- 5511.5 A2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일반적인 절차 및 조건으로 은행 또는 여신금융기관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출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회계법인에 중요한 경우에는 이기적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5511.5 A3 이러한 이기적위험에 대처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니고 대출의 수혜자가 아닌 네트워크 법인에 소속된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금 또는 증권계좌*

**R5511.6**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일반적인 상거래조건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은행, 증권사 또는 여신금융기관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예금을 하거나 증권계좌를 보유할 수 없다.

**은행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대출 및 보증 거래**

**R5511.7**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은행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단, 다음의 당사자 모두에게 대출 또는 보증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a) 대출 또는 보증을 받는 해당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개인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 5520 사업관계

### 개요

- 5520.1 회계법인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520.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그 경영진과의 친밀한 사업관계로 인해 이기적위험 또는 압력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5520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5520.3 A1 5520에서는 재무적 이해관계의 중요성과 사업관계의 유의성에 관해 언급한다. 이러한 재무적 이해관계가 특정 개인에게 중요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을 합산하여 고려할 수 있다.
- 5520.3 A2 상업적인 관계 또는 공동의 재무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친밀한 사업관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혹은 의뢰인의 지배주주, 임원 또는 기타 고위경영진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과 공동투자에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 회계법인(네트워크 법인 포함)과 의뢰인의 서비스나 제품을 결합하여 공동명의로 판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재판매, 유통하거나 광고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의뢰인과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 5520.3 A3 사실 및 상황에 따라 친밀한 사업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예로는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의뢰인에게 제품 또는 솔루션에 대한 라이선스를 공여받거나 의뢰인에게 그러한 라이선스를 공여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사업관계

- R5520.4**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그 경영진과 친밀한 사업관계를 맺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그 경영진,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에게 재무적 이해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사업관계가 경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520.4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그 경영진과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간에 친밀한

사업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기적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소수출자회사에 대한 공동의 재무적 이해관계

**R5520.5**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혹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수출자회사(closely held entity)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수반하는 사업관계를 맺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a) 사업관계가 회계법인,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그리고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모두에게 경미함.
- (b) 재무적 이해관계가 투자자나 투자자집단에게 중요하지 아니함.
- (c) 해당 재무적 이해관계로는 상기 투자자나 투자자집단이 소수출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음.

###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5520.6 A1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라도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서는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다.

5520.6 A2 이러한 이기적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거래를 취소하거나 거래금액을 감소시킴.
- 해당 개인을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킴.

### 기술의 제공, 판매, 재판매 또는 라이선스 공여

5520.7 A1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기술을 다음과 같은 당사자에게 제공, 판매, 재판매하거나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공여하는 경우, 사실 및 상황에 따라 5600의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된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 (b)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5521 가족관계와 개인적 관계

### 개요

- 5521.1 회계법인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521.2 의뢰인 소속 임직원과의 가족관계 또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5521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5521.3 A1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 또는 해당 의뢰인의 특정 직원(그 역할에 따라 다르다) 간에 가족관계와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5521.3 A2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해당 팀원이 맡고 있는 책임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소속 가족 또는 기타 개인의 역할 및 그 관계의 친밀도

#### 지속가능성인증팀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 5521.4 A1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회계법인이 의견을 표명할 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인 경우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한다.
- 5521.4 A2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직위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의 역할
- 5521.4 A3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해당 개인을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 5521.4 A4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에 대처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책임 하에 있는 사항들을 다루지 않도록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의 책임을 조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R5521.5** 특정 개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

팀원으로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
- (b) 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
- (c) 업무수행기간 또는 업무의 보고기간 중에 상기와 같은 직위에 있었던 경우

### 지속가능성인증팀원의 측근가족

5521.6 A1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의 측근가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한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
- (b) 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

5521.6 A2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과 측근가족 간 관계의 성격
- 측근가족의 지위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의 역할

5521.6 A3 이러한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해당 개인을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5521.6 A4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에 대처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측근가족의 책임 하에 있는 사항들을 다루지 않도록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의 책임을 조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지속가능성인증팀원이 관련된 기타의 친밀한 관계

**R5521.7**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아닌 다음의 특정 개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회계법인의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조언을 구해야 한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

5521.7 A1 이러한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특정 개인과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간 관계의 성격
- 해당 개인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서의 직위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의 역할

5521.7 A2 이러한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해당 개인을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5521.7 A3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에 대처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측근가족의 책임 하에 있는 사항들을 다루지 않도록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의 책임을 조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회계법인의 리더와 임직원의 관계

**R5521.8** 다음 당사자 간의 개인적 관계 또는 가족관계를 인지한 회계법인의 리더 및 임직원은 회계법인의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조언을 구해야 한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리더 또는 임직원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

5521.8 A1 이러한 관계로 발생될 수 있는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회계법인의 리더 또는 임직원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직원과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
- 회계법인의 리더 또는 임직원과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교류의 수준
- 해당 리더 또는 임직원의 회계법인 내에서의 직위
- 해당 개인의 의뢰인 내 직위

5521.8 A2 이러한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당 리더 또는 임직원의 책임을 조정함.
-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수행된 관련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 552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개인이 인증업무팀원이 된 경우

### 개요

- 5522.1 회계법인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522.2 최근까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이었던 개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된 경우, 이기적위협, 자기검토위협 또는 유착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5522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지속가능성인증 보고서의 보고대상기간 중 고용관계

- R5522.3** 지속가능성인증 보고서의 보고대상기간 중 다음 역할을 수행했던 특정 개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 (a)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직원

#### 지속가능성인증 보고서의 보고대상기간 전의 고용관계

- 5522.4 A1 지속가능성인증팀원이 지속가능성인증 보고서의 보고대상기간 전에 다음 역할을 수행한 경우 이기적위협, 자기검토위협 또는 유착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a)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직원
-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서 재직하였던 전기에 내린 의사결정사항 또는 수행한 업무를 당기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일부분으로서 평가하게 되는 경우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5522.4 A2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해당 개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서 맡았던 직위
  - 해당 개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퇴직한 후 경과한 기간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해당 개인의 역할

5522.4 A3 이기적위협, 자기검토위협 또는 유착위협에 대처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5523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직을 수행하는 경우

### 개요

- 5523.1 회계법인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523.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 및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5523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임원직의 수행

- R5523.3**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리더 또는 임직원은 해당 회계법인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 사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 R5523.4**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파트너 또는 임직원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회계법인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사무총괄책임자(Company Secretary)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a) 관련 법률, 전문직 규정 또는 실무관행에 따라 해당 직의 수행이 구체적으로 허용됨
  - (b) 경영진이 모든 관련 의사결정을 내림.
  - (c) 책임과 업무가 의사록의 작성과 법적 문서의 유지와 같은 일상적이고 행정적인 업무로 제한됨.
- 5523.4 A1 법인의 사무총괄책임자의 업무범위는 인사관리와 기록 및 등기사항의 유지와 같은 행정업무에서부터 법인의 규정 준수를 확인하거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리더 또는 임직원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사무총괄책임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협이 발생한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추가 정보는 5600(*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비인증업무 제공*)에서 제시하고 있다)

## 5524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고용관계

### 개요

- 5524.1 회계법인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524.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이기적위험, 유착위험 또는 압력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5524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 5524.3 A1 다음의 개인들이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리더였던 경우에는 유착위험 또는 압력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

#### *전임 리더 또는 전임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에 대한 제한 사항*

**R5524.4** 다음의 개인들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으로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 이직한 경우에, 회계법인은 해당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과 다음 개인들 간에 유의적인 연결관계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회계법인의 지속가능성인증의뢰인으로 이직한 전임 리더

(b)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의뢰인으로 이직한 전임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다음은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과 위의 개인들 간에 유의적인 연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a) 해당 개인은 사전에 확정된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한,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혜택이나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함.
- (b) 해당 개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에게 중요한 규모가 아님.
- (c) 해당 개인은 실제적으로나 외관상으로,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사업이나 전문업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음.

5524.4 A1 문단 R5524.4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더라도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5524.4 A2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전임 리더가 문단 5524.3 A1에 기술된 것과 같은 직위를 갖고 특정 법인으로 이직한 후 해당 법인이 회계법인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된다면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5524.4 A3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이직한 해당 개인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서의 직위
- 해당 개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 관여하게 될 정도
- 해당 개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나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리더직을 그만 둔 후 경과한 기간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에서 해당 개인의 과거 직위. 해당 개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책임자였는지 여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5524.4 A4 이러한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인증업무 계획을 변경함.
- 해당 개인과 비교하여 경험이 충분한 사람을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 배정함.
-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의 전임자가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의뢰인에게 고용될 예정인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R5524.5**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지속가능성인증업무팀원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고용협상을 개시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5524.5 A1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본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 이직할 것이라는 점 또는 이직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5524.5 A2 이러한 이기적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해당 개인을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5524.5 A3 이러한 이기적위협에 대처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 속해 있는 동안 내렸던 중요한 판단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

**R5524.6** 문단 R5524.8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였던 특정 개인이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다음과 같은 직위로 이직하는 경우 독립성이

훼손된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

단, 해당 개인이 주요 업무수행리더의 직을 그만둔 후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i)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인증 받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발행하였음.
- (ii) 해당 개인이 그 지속가능성 정보를 인증한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의 일원이 아니었음.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

**R5524.7** 문단 R5524.8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였던 특정 개인이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다음과 같은 직위로 이직하는 경우 독립성이 훼손된다.

- (a) 임원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

단, 해당 개인이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서 물러난 후 1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결합

**R5524.8** 문단 R5524.6 및 R5524.7의 예외 사항으로, 해당 문단에서 제시하는 상황이 사업결합의 결과로 인해 발생했으며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a) 사업결합을 예상하고 해당 직위를 맡은 것이 아님.
- (b) 사전에 확정된 합의에 따라 전임 주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리더 또는 전임 최고경영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회계법인에게 중요하다면, 해당 리더 또는 전임 최고경영자가 회계법인이나 네트워크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혜택이나 보수가 전부 정산되었음.
- (c) 전임 주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리더 또는 전임 최고경영자가 실제로로나 외관상으로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사업이나 전문업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음.
- (d)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와 전임 주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리더 또는 전임 최고경영자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조직 내 직위에 대해 논의함.

## 5525 일시적 인력 파견

### 개요

- 5525.1 회계법인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525.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험, 변호위험 또는 유착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5525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5525.3 A1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파견 인력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 이 경우 자기검토위험에 대처할 수 있음.
  - 파견 인력을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에 포함시키지 않음. 이리하여 유착위험 또는 변호위험에 대처할 수 있음
  - 파견 인력이 업무수행기간 중 수행한 특정 기능 또는 업무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 책임을 해당 당사자에게 부여하지 않음. 이리하여 자기검토위험에 대처할 수 있음
- 5525.3 A2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인력을 파견하여, 유착위험과 변호위험이 발생하고 해당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그 지속가능성인증의뢰인 경영진의 관점 및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동조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가능한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 R5525.4**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인력을 파견할 수 없다.
- (a) 이러한 인력 지원이 단기적으로만 제공됨.
  - (b) 해당 인력이 경영자 책임을 맡지 않을 것이며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파견 직원의 활동에 대한 지시와 감독 책임을 질 것임.
  - (c) 해당 임직원이 수행하는 전문업무로 인해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독립성에 발생하는 위협이 제거되었거나 그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안전장치가 적용됨.
  - (d) 해당 임직원은 이 윤리기준에서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수행이 금지된 전문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



## 5540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장기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리더 교체 포함)

### 개요

- 5540.1 회계법인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540.2 개인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동일한 의뢰인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감사업무가 결합된 업무에 참여한 경우, 유착위협 및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5540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문단 5540.3 A1는 공란으로 둔다]

####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 5540.4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및 그 의뢰인의 환경에 대한 이해는 인증업무의 품질에 필수적이지만, 개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감사업무팀원으로서 다음의 대상과 장기간의 유대관계를 가지는 경우 유착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및 그 영업부문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고위경영진
  - (c)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 또는 해당 지속가능성 정보의 근간이 되는 재무정보나 비재무정보
- 5540.4 A2 개인이 장기간 유지해 온 의뢰인을 놓치는 것을 염려하거나 고위경영진의 일원 또는 지배기구와 긴밀한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은 해당 개인의 판단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5540.4 A3 이러한 유착위협 또는 이기적위협을 평가하는 데 관련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a) 개인과 관련된 요소
    - 개인이 의뢰인과 관계를 가진 전체 기간(이전 직장인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을 때 의뢰인과 관계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포함)
    - 개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 또는 감사업무팀원이었던 기간 및 수행한 역할의 성격

- 개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상급자가 지시하고 검토하고 감독한 정도
- 개인의 연륜에 기인하여, 개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 결과에 영향(예: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업무팀원에게 업무를 지시)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 개인과 고위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의 개인적 관계의 긴밀성
- 개인과 고위경영진 또는 지배기구 간에 이루어진 상호교류의 성격, 빈도 및 수준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관련된 요소

- 의뢰인의 지속가능성 보고 문제의 성격 또는 복잡성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 최근 고위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 개인과 고위경영진 또는 지배기구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교류의 성격, 빈도 및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의뢰인의 조직구조가 최근 변경되었는지 여부

5540.4 A4 둘 이상의 요소가 결합되는 경우 위협의 수준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과 의뢰인의 고위경영진 중 한 사람이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관계가 강화되면서 발생한 유착위협은 해당 경영진이 퇴직하는 경우 감소할 수 있다.

5540.4 A5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감사 업무가 결합된 업무에 장기간 관여한 특정 개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착위협 및 이기적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해당 개인을 교체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5540.4 A6 이러한 유착위협 또는 이기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 소속인 해당 개인의 역할을 변경하거나 해당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및 범위를 변경함.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 해당 업무에 대해 주기적으로 독립적인 내부 또는 외부의 품질검토를 실시함.

**R5540.5** 해당 개인을 교체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만 발생한 위협의 수준에 대처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개인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적절한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 (a)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팀원이 됨.
- (b) 업무품질 검토 또는 업무품질 검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검토를 수행함.
- (c) 지속가능성인증업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이러한 기간은 유착위협 및 이기적위협에 대처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공익실체의 경우에는 문단 R5540.5부터 R5540.20까지의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R5540.6** 특정 개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과 감사업무팀에 모두 속하며 해당 개인을 교체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과 감사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만 발생한 위협의 수준에 대처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문단 R5540.5를 준수하는 것 외에도 해당 개인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적절한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 (a) 감사업무의 팀원이 됨.
- (b) 감사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 검토 또는 업무품질 검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검토를 수행함.
- (c) 감사업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이러한 기간은 유착위험 및 이기적위험에 대처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공익실체의 경우에는 문단 R5540.7부터 R5540.22까지의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R5540.7** 문단 R5540.9부터 R5540.11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실체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이 누적하여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다음 중 한 가지 역할을 하거나 복수의 역할을 결합하여 수행할 수 없다.

- (a) 업무수행리더
- (b) 업무품질관리검토 책임자
- (c) 기타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
- (d) 주요 감사수행이사

이러한 업무수행기간(time-on period)이 경과하면 해당 개인은 문단 R5540.13부터 R5540.21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업무제한기간(cooling-off period)을 가져야 한다.

**R5540.8** 업무수행기간을 계산할 때, 개인이 문단 R5540.7(a)부터 R5540.7(c)까지 규정된 특정 역할의 수행을 최소기간 동안 중단해야만 업무수행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최소기간이란 연속된 기간으로서 문단 R5540.13부터 R5540.15까지에 정해진 업무제한기간 중 해당 개인이 특정 역할의 수행을 중단하기 직전에 수행했던 역할에 해당되는 기간 이상인 기간을 말한다.

5540.8 A1 예를 들어,

- 4년 동안 업무수행리더를 수행한 후 3년 동안 업무에서 물러나 있었던 개인은 이후 동일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추가 3년 동안만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이 경우 총 누적기간은 7년이 됨). 이후 해당 개인은 문단 R5540.17에 따라 업무제한기간을 가져야 한다.
- 2년 동안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업무수행이사를 수행한 개인은 추가 5년 동안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업무품질 검토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후 해당 개인은 문단 R5540.18에 따라 업무제한기간을 가져야 한다.

- R5540.9** 문단 R5540.7의 예외 사항으로, 회계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이례적인 경우에 지배기구가 동의한다면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인증 품질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는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의 역할을 추가로 1년 동안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 5540.9 A1 예를 들어, 예정된 업무수행리더가 중병에 걸린 경우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요구되는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는 추가로 1년 동안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계법인이 예정된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유 및 발생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지배기구와 논의해야 할 것이다.
- R5540.10**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비공익실체에서 공익실체가 되는 경우,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의 교체시기를 결정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되기 전까지 해당 개인이 주요 지속가능성 업무수행리더 또는 주요감사수행이사의 역할을 수행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될 때까지 특정 개인이 주요 주요 지속가능성 업무수행리더 또는 주요감사수행이사로 일했던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그 개인은 7년에서 이미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로 일했던 기간을 차감한 기간만큼 주요 지속가능성 업무수행리더 또는 주요감사수행이사의 역할을 더 수행할 수 있다. 문단 R5540.7의 예외 사항으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될 때까지 특정 개인이 주요 지속가능성 업무수행리더 또는 주요감사수행이사로 일했던 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기구의 동의를 얻어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의 업무를 최대 2년 동안 더 수행할 수 있다.
- R5540.11**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로 공익실체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이 소수인 회계법인에게는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의 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문단 R5540.7의 예외 사항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기관이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의 교체를 면제해 주고 있다면, 이러한 면제규정에 따라 개인이 7년을 초과하여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로 계속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제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정하는 기타 요구사항(예: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의 교체 면제기간, 주기적인 독립된 외부검토)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업무수행기간 관련 기타 고려사항

- R5540.12** 개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장기간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을 평가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개인이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가 되기 전에 해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서 수행한 역할 및 해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관여한 기간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

- 5540.12 A1 개념체계를 적용하면 특정 개인이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의 역할을 수행한 기간이 7년 미만이라도 특정 개인이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회계법인이 결론내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업무제한기간

- R5540.13** 특정 개인이 업무수행리더의 역할을 누적하여 7년간 수행한 경우, 업무제한기간은 연속된 5년의 기간이다.

- R5540.14** 특정 개인이 업무품질 검토책임자로 선임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한 누적기간이 7년인 경우, 업무제한기간은 연속된 3년의 기간이다.
- R5540.15** 문단 R5540.13 및 R5540.14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개인이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의 역할을 누적하여 7년을 수행한 경우, 업무제한기간은 연속된 2년의 기간이다.
- 5540.16 A1 5540의 리더 교체 요구사항은 품질관리기준서 2에서 업무수행리더가 업무품질 검토담당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조건으로 요구하는 업무제한기간과는 별개이며, 해당 업무제한기간에 변경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문단 5325.8 A4 참조).

업무수행기간 중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와 주요감사수행이사의 복수의 역할 수행

- R5540.17** 특정 개인이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와 주요감사수행이사의 복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해당 업무수행리더 또는 업무수행이사의 역할을 누적적으로 4년 이상 수행한 경우, 업무제한기간은 연속된 5년의 기간이다.
- R5540.18** 문단 R5540.19(a)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개인이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와 주요감사수행이사의 복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해당 역할 중 업무품질관리검토 책임자의 역할을 누적적으로 4년 이상 수행한 경우, 업무제한기간은 연속된 3년의 기간이다
- R5540.19** 특정 개인이 업무수행기간 중 업무수행리더, 업무수행이사, 업무품질 검토 책임자의 복수의 역할을 수행한 기간이 누적적으로 4년 이상인 경우 업무제한기간은 다음과 같다.
- (a) 문단 R5540.18의 예외 사항으로, 해당 개인이 업무수행리더 또는 업무수행이사의 역할을 3년 이상 수행한 경우 연속된 5년의 기간
  - (b) 다른 모든 경우는 연속된 3년의 기간
- R5540.20** 특정 개인이 문단 R5540.17부터 R5540.19까지에 규정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와 주요감사수행이사의 복수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업무제한기간은 연속된 2년의 기간이다.

과거 소속 회계법인에서 수행한 업무

- R5540.21** 특정 개인이 문단 R5540.7에서 규정하는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 또는 주요감사수행이사의 역할을 수행한 기간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회계법인에서 해당 의뢰인에 대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 또는 감사업무에 대한 주요감사수행이사의 역할을 수행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R5540.22는 공란으로 둔다]**

업무제한기간 중 수행업무의 제한

**R5540.23** 특정 개인은 관련 업무제한기간 중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 (a)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감사업무에 업무팀원으로 참여하거나 해당 업무에 대한 업무품질 검토 또는 업무품질 검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검토를 수행함.
- (b)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감사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또는 산업 특유의 이슈, 거래 또는 사건에 대하여 업무팀이나 의뢰인에게 자문을 제공함(해당 개인의 업무수행기간 중 마지막 1년 동안 수행한 업무 또는 도출한 결론으로서 현재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감사업무와 관련되는 업무 또는 결론에 한정해서 업무팀과 논의하는 경우는 예외)
- (c)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전문업무를 지휘하거나 조정하는 책임을 담당하거나,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관계를 감독함.
- (d)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관련하여 위에서 기술하지 않은 기타의 역할 또는 업무를 수행함(해당 개인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비인증업무 제공 포함).
  - (i) 고위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유의한 수준으로 또는 빈번하게 교류를 함
  - (ii)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감사업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5540.23 A1 문단 R5540.23의 규정은 해당 개인이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최고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와 같은 경영진의 역할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5600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비인증업무 제공

### 개요

- 5600.1 회계법인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600.2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법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비인증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 및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5600.3 5600에서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5600의 하위규정에서는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특정한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하며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의 종류를 기술한다.
- 5600.4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장치를 적용하더라도 발생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므로, 5600의 하위규정 중 일부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5600.5 신규 사업, 지속가능성 환경의 발전, 금융시장의 진화와 기술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회계법인과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인증업무들을 모두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600의 개념체계와 일반규정은 회계법인이 의뢰인에게 특정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없는 비인증업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5600.6 제5부의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은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a)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 (b)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비인증업무의 제공을 초래하는 기술을 다음 대상에게 제공, 판매, 재판매하거나 라이선스를 공여하는 경우
    - (i)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 (ii)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업무를 제공하는 회사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법률 또는 규정의 비인증업무 조항

5600.7 A1 문단 R5100.6부터 5100.7 A1은 이 윤리기준의 준수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비인증업무 제공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의 법규가 이 윤리기준에 제시된 것과 다르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은 이러한 차이점을 인지하고 보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비인증업무 제공 시 경영자 책임의 부담 위험*

5600.8 A1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할 때,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문단 R5400의 요구사항이 준수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경영자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다.

#### *비인증업무 제공을 위한 업무수입*

**R5600.9**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입하기 전에, 회계법인은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해당 업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에 대한 위험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

#### *위험의 식별 및 평가*

#####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0.10 A1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범주에 대한 정의는 문단 5120.6 A3에 제시되어 있다.

5600.10 A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위험을 식별하고, 그러한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비인증업무의 성격, 범위, 의도된 이용 및 목적
- 비인증업무 제공에 참여할 임직원과 소재지 등 비인증업무가 제공되는 방식
- 비인증업무가 제공되는 빈도 등 비인증업무에 대한 의뢰인의 의존도
- 비인증업무가 제공되는 법적 및 규제 환경
- 의뢰인이 공익실체인지 여부
- 제공되는 비인증업무의 유형과 관련된 의뢰인의 경영진 및 임직원의 전문성 수준
- 중요한 판단 사항의 결정 시 의뢰인이 관여하는 정도 (참조: 문단 R5400.20 부터 R5400.21까지)
- 비인증업무의 결과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반영된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음의 사항 정도



- 비인증업무의 결과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미치게 될 영향의 중요성 정도
- 지속가능성 정보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적절한 금액, 공개 또는 처리방법을 결정할 때 개입되는 주관성의 정도
- 다음의 유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정보를 생성하는 시스템에 해당 비인증업무가 미치는 영향(있는 경우)의 성격 및 정도
  -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 또는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
  - 지속가능성 보고.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 지속가능성인증업무가 비인증업무의 결과에 의존하는 정도
- 비인증업무의 제공과 관련된 보수

5600.10 A3 5600의 하위규정은 특정 비인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그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할 요소의 예를 포함한다.

#### 지속가능성 정보에 관련된 중요성

5600.11 A1 중요성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의 평가와 관련성이 있는 요인이다. 5600의 하위규정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한 중요성의 개념은 관련 보고 및 인증 체계에서 다루고 있다. 중요성의 결정은 전문가적 판단을 수반하며 양적요소와 질적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이용자들의 지속가능성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받는다. 관련 보고 및 인증 체계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이용자에게 중요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윤리강령 또는 지침이 포함될 수 있다.

5600.11 A2 이 윤리기준에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비인증업무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비인증업무 결과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자문 및 권고의견 제시

5600.12 A1 자문 및 권고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기검토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자문 및 권고의견 제공이 자기검토위험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는 문단 R600.15에 제시된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아니며 자기검토위험이 식별되는 경우, 회계법인은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해당 위협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문단 R5600.17 및 R5600.18이 적용된다.

#### 동일한 지속가능성인증인에게 제공하는 복수의 비인증업무

**R5600.13**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복수의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각 비인증업무가 개별적으로 발생시키는 위협 외에도 그러한 비인증업무들의 결합효과가 독립성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그러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5600.13 A1 문단 5600.10 A2 외에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복수의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독립성에 대한 위험 수준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복수의 비인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결합효과가 각 업무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으로 평가된 위험 수준을 증가시키는지 여부
- 복수의 비인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결합효과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의 전반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 수준을 증가시키는지 여부

5600.13 A2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감사인을 겸직하는 경우, 동일한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복수의 비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4A부의 문단 R600.13 및 600.13 A1이 적용된다.

#### 자기검토위험

5600.14 A1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법인이 자체적으로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업무로서 인증절차를 수행할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자기검토위험은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에 속한 개인이 비인증업무의 일환으로 과거에 판단한 사항이나 수행한 업무의 결과가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이 판단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과거 판단 사항이나 업무의 결과에 대하여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다.

**R5600.15**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a) 해당 비인증업무의 결과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또는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b)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이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비인증업무를 제공할 때 내린 모든 판단 또는 수행한 활동에 관해 평가하거나 이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5600.16 A1 이해당사자들은 공익실체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러한 높은 기대는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자기검토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 테스트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5600.16 A2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그 위험은 제거할 수 없으며, 그 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없다.

자기검토위협

**R5600.17**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비인증업무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자기검증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해당 비인증업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참조: 문단 5600.14 A1 및 R5600.15)

자문 및 권고의견 제시

**R5600.18** 문단 R5600.17의 예외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또는 사항과 관련하여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자문 및 권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a) 회계법인이 경영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참조: 문단 R5400.20 및 R5400.21)
- (b) 회계법인이 자기검토위협 이외에 해당 자문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경우

5600.18 A1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또는 사항과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자문 및 권고의견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또는 정책과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요구사항에 대한 자문
-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된 통제의 적절성과 보고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결정 또는 수립에 사용할 방법에 대한 자문
-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발견사항에서 발생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조정 제안
- 지속가능성 보고 및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발견사항에 대한 논의와 개선 권고
- 그룹 지속가능성 보고 정책 준수에 대한 자문

*위협에 대한 대처*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0.19 A1 문단 R5120.10부터 5120.10 A2까지는 안전장치의 정의 등 독립성 위협에 대한 대처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5600.19 A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 또는 복수의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독립성에 대한 위협은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사실 및 상황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안전장치를 적용하거나 제안된 업무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5600.19 A3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수행된 지속가능성인증업무나 해당 업무를 검토하게 함.
- 적절한 당국(예: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음.

5600.19 A4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개념체계의 적용을 위해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a) 제안된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여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을 제거함.
- (b)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할 수 없는 위협이 발생하는 업무를 거절 또는 종료함.
- (c)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종료함.

#### *비인증업무에 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0.20 A1 문단 5400.40 A1 및 5400.40 A2는 비인증업무 제공과 관련한 회계법인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이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5600.21 A1 문단 R5600.22부터 R5600.24까지는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공익실체가 포함된 기업구조 내의 회사에 대하여 공익실체에 대한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위협이 발생시킬 수 있는 비인증업무를 제공하기 전에 공익실체의 지배기구와 소통할 것을 규정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공익실체의 지배기구가 공익실체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다.

5600.21 A2 이러한 요구사항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회계법인은 공익실체의 지배기구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시기와 상대방에 관한 프로세스에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 일반 정책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기타 합의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안된 인증 업무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를 수립함.
- 해당 절차가 적용될 회사를 식별하며, 여기에는 기업구조 내 다른 공익실체가 포함될 수 있음.
- 지배기구의 구체적인 승인 없이 문단 R5600에 식별된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식별함. 단, 이 경우 회계법인과 공익실체의 지배기구는 이러한 업무가 제5부에 따라 금지되지 않으며,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수용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 일반 정책의 형태로 합의해야 함.
- 동일한 기업구조 내에 있는 복수의 공익실체의 지배기구가 업무승인 권한을 배분하는 방식을 수립함.

- 지배기구가 제안된 업무가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금지되거나 전문가 기준,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제한되어 있거나 민감정보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를 수립함.
- 해당 프로세스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명시함.

**R5600.22** 공익실체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다음을 대상으로 비인증업무를 수입하는 경우,

- (A) 해당 공익실체
- (B) 해당 공익실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회사
- (C) 해당 공익실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회사

해당 회계법인은 해당 비인증업무를 수입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단, 지배기구와 합의하여 절차를 수립할 때 다음 사항이 이미 다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a) 회계법인이 해당 업무의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음을 해당 공익실체의 지배기구에 통지함.
  - (i) 해당 업무의 제공이 금지되어 있지 않음.
  - (ii) 해당 업무의 제공이 공익실체의 지속가능성인증인으로서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위협이 되지 않거나, 식별된 위협이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수용가능한 수준이 아닌 경우 제거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임.
- (b) 공익실체의 지배기구가 해당 업무의 제공이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정보에 근거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5600.22 A1 특정한 비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공익실체의 지배기구에 제공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공될 업무의 성격과 범위
- 제안된 보수의 근거와 금액
- 회계법인이 제안된 업무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한 경우 그 위협이 수용가능한 수준이라는 회계법인의 평가의 근거, 또는 수용가능한 수준이 아닌 경우 그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취할 조치
- 복수의 업무를 제공함에 따른 결합효과가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이전에 식별된 위협의 수준을 변화시키는지 여부

**R5600.23**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공익실체의 지배기구가 합의한 프로세스에 따라 또는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R5600.22에 언급된 회사에 비인증업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a) 해당 업무의 제공이 공익실체에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며, 또는 식별된 위협이 수용가능한 수준이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 아닌 경우 제거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회계법인의 결론

(b) 해당 업무의 제공

**R5600.24** 문단 R5600.22 및 R5600.23의 예외로, 관련 전문가 기준,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이 제안된 비인증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익실체의 지배기구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또는 그러한 정보의 제공이 민감정보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회계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제안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 (a) 회계법인이 법적의무 또는 전문가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b) 회계법인이 해당 업무의 제공으로 인해 공익실체에 대한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식별된 위협이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거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임을 공익실체의 지배기구에 통지하는 경우
- (c) 지배기구가 (b)에 언급된 회계법인의 결론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

**R5600.25**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 또는 제안된 업무를 수행하는 문단 R5600.22에 언급된 회사의 지배기구가 제기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비인증업무를 거절해야 하며,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종료하여야 한다.

- (a) 지배기구와 사전에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해당 상황이 해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b)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가 해당 업무의 제공으로 인해 공익실체에 대한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식별된 위협이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거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회계법인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공익실체가 되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비인증업무 제공*

**R5600.26** 다음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로 전환될 때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현재 제공하고 있거나 과거에 제공했던 비인증업무로 인해 해당 회계법인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 (a) 과거에 제공했던 비인증업무가 5600의 규정 중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됨
- (b) 5600의 규정에서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비인증업무가 현재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의뢰인이 공익실체로 전환되기 전에 또는 전환된 후 실질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비인증업무가 종료됨.
- (c) 회계법인과 공익실체가 되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가 수용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독립성 위협에 동의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함.

5600.26 A1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다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다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 영향을 받은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필요한 수준까지 검토하거나 재수행하도록 함.
- 다른 회계법인이 비인증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도까지 비인증업무의 결과를 평가하거나 비인증업무를 재수행하게 함.

*특정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려 사항*

**R5600.27** 5600의 규정은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경영자 책임을 부담하거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 및 문단 R5400.20의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지속가능성 정보에 의견을 표명할 의뢰인의 다음과 같은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경영자 책임을 부담하거나 금지되는 특정한 비인증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법인(해당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해당 법인에게 중요한 경우)
- (c)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공동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

단, 이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i)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해당 특수관계자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 (ii)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상인 법인의 경영자 책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하지 않음.
- (iii) 그러한 서비스로 인해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하지 않음.
- (iv) 회계법인은 이러한 비인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용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기타 위협에 대처함.

*문서화*

5600.28 A1 문단 R5400.60 및 5400.60 A1에 따라 제5부의 준수에 대한 회계법인의 결론의 문서화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제공될 비인증업무의 성격에 대한 회계법인의 이해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과 해당 업무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 영향을 미치는 방식
- 해당 업무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에 대한 위협의 성격(해당 업무의 결과가 지속가능성인증절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포함)

- 제안된 비인증업무의 제공 및 감독에 경영진이 관여하는 정도
- 독립성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용된 안전장치 또는 실행된 기타 조치
- 회계법인이 해당 업무가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식별된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 문단 R5600.22에 언급된 회사에 대한 제안된 비인증업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문단 R5600.22부터 R5600.24까지를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

## 5601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

### 개요

5601.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지속가능성 데이터, 기록 또는 정보의 작성이나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때, 5601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외에 문단 5600.1부터 5600.28 A1까지의 특정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도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데 관련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5601.2 A1 경영진은 관련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속가능성 보고 정책과 이러한 정책에 따른 보고처리의 결정
- 거래 발생, 이벤트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포함된 기타 사항을 증빙하는 원천문서 또는 원본데이터(전자문서 또는 기타 형식 문서 모두 포함)의 작성 또는 변경
- 지속가능성 데이터 입력 생성 또는 변경
- 지속가능성 정보의 분류 결정 또는 승인

#### 업무의 정의

5601.3 A1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업무로 구성된다.

- 지속가능성 데이터 기록 또는 보고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
- 지속가능성 정보에 포함된 데이터, 이벤트 또는 기타 사항의 기록
- 부정확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대처



- 현 지속가능성 정보를 다른 지속가능성 보고체계로 전환
-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처리 및 기장대리

###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

####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1.4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업무의 결과가 지속가능성 데이터 또는 정보 기록 또는 인증대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한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아닌 경우

**R5601.5**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회계법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a) 일상적이거나 기계적인 성격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인 경우
- (b) 회계법인이 수용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위험들에 모두 대처하는 경우

5601.5 A1 일상적이거나 기계적인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a) 의뢰인이 필요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내린 정보, 데이터 또는 자료를 포함함.
- (b) 전문가적 판단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5601.5 A2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는 수작업으로 수행될 수도 있고 자동화될 수도 있다. 자동화된 업무가 일상적이거나 기계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에는 기술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과 그 결과물, 그리고 해당 기술이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전문성이나 판단에 기반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동화된 업무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5601.5 A3 일상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수작업 업무 또는 자동화된 업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의뢰인이 승인할 수 있도록 의뢰인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보고서를 작성
- 의뢰인이 적절한 계정분류를 결정하거나 승인한 원천문서로부터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반복적인 데이터를 기록
- 의뢰인이 코드화하거나 제3자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지속가능성 정보 기록에 전기
- 의뢰인이 승인한 기록의 정보를 기준으로 보고대상 지속가능성 정보를 작성하고, 의뢰인이 승인한 기록을 근거로 관련 주석을 작성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자 책임을 맡지 않도록 문단 R5400.21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문단 R5601.5(b)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해당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 5601.5 A4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성격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업무 제공에 참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수행된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해당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R5601.6**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회계법인이 의견을 표명할 대상이 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문단 R5601.7은 공란으로 둔다]

## **5602 사무보조 업무**

### **개요**

5602.1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5602의 구체적인 적용지침 외에 문단 5600.1부터 5600.28 A1까지의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도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데 관련된다.

### **적용지침**

#### **업무의 정의**

5602.2 A1 관리서비스는 일상적인 업무과정 중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5602.2 A2 관리서비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작업 또는 문서 서식작성
- 의뢰인의 승인이 필요한 관리서식 또는 법정서식을 작성하는 업무
-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그러한 서식을 제출하는 업무
- 법정신고일자를 모니터링하고 해당 일자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알리는 업무

####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

#####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2.3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전문가적 판단이 거의 또는 전혀 요구되지 않으며 사무적 성격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 5603 가치평가, 예측 및 그와 유사한 업무

### 개요

5603. 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가치평가, 예측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제공할 때, 5603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외에도 문단 5600.1부터 5600.28 A1까지의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데 관련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업무의 정의

5603.2 A1 가치평가, 예측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는 미래 상황과 관련된 가정의 수립, 적절한 평가 방법과 기법의 적용,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자산, 부채 또는 회사의 전체 또는 부분의 가치 또는 가치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업무에서 가치는 비금전적 가치일 수 있다(예: 자재 매장량의 예측 추정치 또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양).

5603.2 A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세무신고를 지원하거나 또는 세무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평가, 예측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의 경우, 해당 업무의 결과가 세무와 관련된 분개를 통해서 이외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 또는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가치평가업무에 대해서는 문단 5604.17 A1부터 5604.19 A1에서 제시하는 적용지침이 적용된다.

### 가치평가, 예측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

####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3.3 A1 가치평가 제공, 예측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할 때, 해당 업무의 결과가 회계법인이 의견을 표명할 지속가능성 정보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자기검증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또한 변호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5603.3 A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가치평가, 예측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험 또는 변호위험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해당 업무의 용도 및 목적 또는 보고서 포함 여부
- 해당 업무 결과의 공개 여부
- 법규, 기타 선례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도

- 해당 업무의 방법론과 기타 중요한 판단사항의 결정과 승인에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개입하는 정도
- 표준적인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방법론을 적용하는 해당 업무에서 해당 항목에 내재된 주관성의 정도
- 해당 업무가 해당 지속가능성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지속가능성 정보에 해당 업무가 다루는 항목과 관련된 공개가 이루어지는 정도
- 미래 상황에 대한 의존에 따른 관련 가치의 변동성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자기검토위험이 식별되는 경우, 문단 R5603.5가 적용된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아닌 경우*

5603.3 A3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가치평가, 예측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험 또는 변호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기검토위험 또는 변호위험에 대처할 수 있음.
- 업무검토의 제공에 참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 담당자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수행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검토위험에 대처할 수 있음.

**R5603.4**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가치평가, 예측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해당 업무에 상당한 정도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됨.
- (b) 해당 업무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5603.4 A1 어떤 가치평가, 예측 및 그와 유사한 정보에는 상당한 정도의 주관성이 개입되지는 않는다. 가치평가, 예측 및 그와 유사한 정보에 영향을 주는 기본 가정이 법규에 의해 정해지거나 그 기법과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근거하거나 법규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가치평가, 예측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중요하게 상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 *지속가능성인증이 공익실체인 경우*

##### 자기검토위험

**R5603.5**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해당 업무의 제공으로 인해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가치평가, 예측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참조: 문단 R5600.15 및 R5600.17)

##### 변호위험

5603.5 A1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가치평가, 예측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호위협에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예로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5604 세무업무

### 개요

5604.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업무를 제공할 때, 5604의 구체적인 적용지침 외에 문단 5600.1부터 5600.28 A1까지의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도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데 관련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업무의 정의

5604.2 A1 세무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업무가 포함된다. 5604는 특히 다음을 다룬다.

- 세무신고서의 작성
- 회계분개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세액 산정
- 세무자문 업무
- 세무계획 수립 업무
- 가치평가를 포함하는 세무업무
- 세무분쟁 해결의 지원

5604.2 A2 세무업무는 세무계획 수립 또는 준수와 같이 광범위하게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실무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금융서비스와 같이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다른 유형의 비인증업무와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세무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을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세무업무 제공으로 인한 잠재적 위협

5604.3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업무를 제공할 때 해당 세무업무의 결과가 업무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 또는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업무는 또한 변호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5604.3 A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검토 또는 변호위협을 식별하고 해당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해당 업무의 구체적 특징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임직원의 세무 전문성 수준
- 세무당국이 세무문제를 평가하고 운용하는 시스템과 그 과정에서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역할
- 관련 세법 및 세무제도의 복잡성과 이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판단의 정도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R5604.4** 해당 업무 또는 거래가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처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권고한 세무처리에 대한 홍보, 계획 수립 또는 해당 세무처리에 찬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해당 세무처리 또는 거래의 중요한 목적이 조세회피인 경우,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업무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단, 회계인이 제안한 세무처리가 향후 널리 통용될 가능성이 높은 관련 세법 및 규정에 그 근거가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604.4 A1 해당 세무처리가 현행 관련 세법 및 규정에 그 근거가 있음을 확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R5604.4에 설명되어 있는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제거할 수 없고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없는 이기적위험, 자기검토위험 및 변호위험을 발생시킨다.

**A. 세무신고서의 작성**

**업무의 정의**

5604.5 A1 세무신고서 작성업무에는 다음 업무가 포함된다.

-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반 정보(통상 표준화된 양식에 의거 산출되는 납부세액 등 포함)의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서식을 기입하여 의뢰인이 세무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과거 거래의 세무신고처리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
- 추가적인 정보와 분석(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과 기술적 지원의 제공 등 포함)에 대한 세무당국의 요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대신하여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

**세무신고서 작성 업무의 제공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4.6 A1 다음 사유로 인해 세무신고서 작성 업무의 제공은 통상적으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a) 세무신고서 작성업무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정보에 근거하여 수행되며 해당 역사적 정보를 현행 세법(선례와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행 등 포함)에 따라 분석하고 표시하는 것에 기반한다.
- (b) 세무신고서는 세무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검토 또는 승인절차의 대상이 된다.

## B. 회계분개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세액 산정

### 업무의 정의

5604.7 A1 세액 산정 업무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세금자산 또는 세금부채를 뒷받침하는 회계분개의 작성을 목적으로 당기·이연법인세 부채(또는 자산)를 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부 경우에 이러한 업무는 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세액 산정 업무 제공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4.8 A1 관련 계정잔액을 뒷받침하는 회계분개의 작성을 목적으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당기·이연법인세 부채(또는 자산)를 산정할 때 그러한 산정의 결과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한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아닌 경우*

5604.9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하여 이러한 세액 산정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할 때 문단 5604.3 A2에 기술된 요소 외에 해당 세액산정 작업이 회계법인이 의견을 표명할 지속가능성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5604.9 A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아닌 경우 이러한 자기검토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업무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수행된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해당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R5604.10**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에는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감사대상 재무제표에 중요한 회계분개를 작성할 목적으로 당기·이연법인세부채(또는 자산)를 산정하는 업무를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참조: 문단 R5600.15 및 R5600.17)

## C.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수립 업무

### 업무의 정의

5604.11 A1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수립 업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방안에 대한 조언이나 개정 세법 또는 규정의 적용에 관한 조언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광범위한 업무로 이루어져 있다.

##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수립 업무 제공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4.12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제공할 때 해당 업무의 결과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 또는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또한 변호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5604.12 A2 다음 경우에는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수립 업무의 제공으로 인해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하지 않는다.

- (a) 해당 업무가 세무당국 또는 다른 선례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 (b) 해당 업무가 확립된 관행에 근거한 경우(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관련 세무당국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관행)
- (c) 회계법인이 지배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세법에 그 근거가 있는 경우

5604.12 A3 문단 5604.3 A2에서 기술하고 있는 요소 외에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 또는 변호위협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서 세무자문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할 때 수반되는 주관성의 정도
- 세무처리내용이 세무당국의 유권해석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아니면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 작성 전에 해당 세무처리에 대하여 세무당국의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
- 세무자문의 결과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자기검토위협이 식별된 경우 문단 R5604.15가 적용된다.

세무자문의 효과성이 특정 회계처리나 지속가능성 정보의 표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R5604.13**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세무자문의 효과성이 특정 회계처리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표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 (b)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이 관련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에 따른 해당 회계처리 또는 표시의 적절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아닌 경우

5604.14 A1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 또는 변호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검토 또는



변호위협에 대처할 수 있음.

-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수행된 지속가능성인증업무나 해당 업무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자기검토위협에 대처할 수 있음.
-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음으로써 자기검토 또는 변호위협에 대처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 자기검토위협

**R5604.15**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해당 업무의 제공으로 인해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참조: 문단 R5600.15, R5600.17, 5604.12 A2).

##### 변호위협

5604.15 A1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자문 및 세무계획 수립 업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호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음.

## **D. 가치평가를 포함하는 세무업무**

### 업무의 정의

5604.16 A1 가치평가와 관련된 세무업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 인수합병 거래
- 그룹 구조조정 및 기업 재편
- 이전가격 조사
- 주식기반 보상 약정

### 가치평가를 포함하는 세무업무의 제공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4.17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목적의 가치평가를 제공할 때 해당 업무의 결과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 또는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또한 변호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5604.17 A2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세금신고 의무를 지원하거나 세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세무목적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가치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a) 세무와 관련된 회계분개를 통해서를 제외하고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 또는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 5604에 명시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됨.
- (b) 세금과 관련된 회계분개에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 또는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예: 가치평가가 자산의 재평가로 이어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5603에 명시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됨.

5604.17 A3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세무목적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a) 기본 가정이 법규에 의해 정해지거나 또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우
- (b) 평가기법과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근거하거나 법규에 의해 정해지고 해당 가치평가가 세무당국이나 그와 유사한 규제당국의 외부검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아닌 경우*

5604.18 A1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세무목적의 가치평가의 결과가 세금 관련 조정을 통해서만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가치평가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지속가능성 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세금신고서 또는 기타 신고에 포함된 해당 가치평가가 세무당국이나 그와 유사한 규제당국의 외부검토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5604.18 A2 세무 목적으로 수행된 가치평가가 외부검토의 대상이 아니고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 또는 변호위협 수준 평가 시 문단 5604.3 A2에서 기술한 요소 외에도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가치평가 방법론이 세무법규, 기타 선례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도
- 해당 가치평가에 내재된 주관성의 정도
- 기초자료의 신뢰도와 범위

5604.18 A3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검토위협 또는 변호위협에 대처할 수 있음.
- 업무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수행된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해당 업무의 결과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자기검토위협에 대처할 수 있음.

-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음으로써 자기검토위험 또는 변호위험에 대처할 수 있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자기검토위험

**R5604.19**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해당 업무가 자기검토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세무목적의 가치평가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참조: 문단 R5600.15, R5600.17, 5604.17 A3)

변호위험

5604.19 A1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목적의 가치평가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호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음.

## E. 세무분쟁 해결의 지원

업무의 정의

5604.20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세무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비인증업무는 세액 산정 및 처리에 대한 세무당국의 검토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업무는 예를 들어 세무당국이 특정 사안에 관한 감사의뢰인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통보한 후, 세무당국 또는 감사의뢰인이 해당 사안을 공개법정이나 법원과 같은 공식적인 소송절차에 회부하는 경우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 세무분쟁 해결의 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4.21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대상으로 세무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업무를 제공할 때, 해당 업무의 결과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 또는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자기검토위험 또는 변호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5604.22 A1 문단 5604.3 A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소 외에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험 또는 변호위험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세무분쟁의 해결을 위해 경영진이 수행하는 역할

- 세무분쟁의 결과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해당 세무분쟁의 대상인 조언을 제공했는지 여부
- 해당 사안이 세무법규, 기타 선례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도
- 소송절차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자기검토위험이 식별된 경우 문단 R5604.24가 적용된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아닌 경우*

5604.23 A1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분쟁의 해결을 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험 또는 변호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검토위험 또는 변호위험에 대처할 수 있음.
- 업무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해당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검토위험에 대처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 자기검토위험

**R5604.24**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해당 업무의 제공으로 인해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분쟁의 해결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참조: 문단 R5600.15 및 R5600.17).

##### 변호위험

5604.24 A1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변호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예로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법정 또는 법원에서 변호인 역할이 수반되는 세무문제의 해결**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아닌 경우*

**R5604.25**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분쟁 해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세무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

- (a) 해당 업무가 세무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정 또는 법원에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변호하는 활동을 수반함.
- (b) 해당 세무문제와 관련된 금액이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중요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R5604.26**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세무업무가 법정 또는 법원에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변호하는 활동을 수반하는 경우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세무분쟁 해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세무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

5604.27 A1 문단 R5604.25부터 R5604.26까지는 법정 또는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감사의뢰인을 위하여 계속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며, 이러한 자문역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구체적 정보요청에 대한 대응
- 수행된 업무에 관한 사실 설명이나 증언 제공
- 세무문제의 분석 지원

5604.27 A2 법정 또는 법원이란 세무소송이 진행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 5605 내부감사업무

### 개요

5605.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내부감사업무를 제공할 때, 5605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외에 문단 5600.1부터 5600.28 A1까지의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도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데 관련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업무의 정의

5605.2 A1 내부감사업무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내부감사업무의 한 가지 이상의 측면의 수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로 구성된다. 내부감사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내부통제의 모니터링 - 통제를 검토하고 그 운용을 모니터링하며 통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권고함.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와 운영정보의 조사
  - 재무정보와 운영정보를 식별, 측정, 분류 및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검토
  - 거래, 계정잔액 및 절차에 대한 세부테스트를 포함한 개별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함.
- 회사의 비재무적 활동을 포함한 경영활동의 경제성,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
- 다음에 대한 준수여부 검토
  - 법규 및 기타 외부적 요구사항

- 경영진의 정책, 공식적인 지시사항 및 기타 내부적 요구사항

5605.2 A2 내부감사활동의 범위와 목적은 상당히 다양하며 회사 규모와 구조 그리고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요구사항 및 경영진의 요구사항과 기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는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과 관련하여 고려 대상이 될 운영상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내부감사업무 제공 시 경영자 책임 수행의 위험

**R5605.3** 문단 R5400.20에 따라,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경영자 책임을 맡을 수 없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내부감사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다음에 대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지배기구에 보고하는 적합하고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고 다음을 수행하게 함.
  - (i) 언제든지 내부감사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
  - (ii) 내부통제의 설계, 구축, 모니터링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함.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내부감사업무의 범위, 위험 및 빈도를 검토, 평가 및 승인함.
- (c)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경영진이 회계법인이 수행한 내부감사업무의 적절성과 해당 내부감사업무에서 도출된 발견사항을 평가함.
- (d)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경영진이 내부감사업무에서 도출된 권고사항 중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고 결정하며 그 이행절차를 관리함.
- (e)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경영진이 내부감사업무로부터 도출된 중요한 발견사항과 권고사항을 지배기구에 보고함.

5605.3 A1 의뢰인의 내부감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경우, 내부감사업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경영자 책임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5605.3 A2 경영자 책임을 수반하게 되는 내부감사업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내부감사정책 또는 내부감사활동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수립함.
- 법인의 내부감사 직원들의 활동을 지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내부감사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권고사항 중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결정함.
- 경영진을 대신하여 지배기구에 내부감사활동의 결과를 보고함.
- 자료접근권한의 변경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등 내부통제의 일부를 형성하는 절차를 수행함.
- 내부통제의 설계, 구축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짐.
- 회계법인이 내부감사업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과 상기 사항들 중 하나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내부감사기능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

### 내부감사업무의 제공으로 인한 잠재적 위협

####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5.4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내부감사업무를 제공할 때, 해당 업무의 결과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정보의 인증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5605.4 A2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련 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사하게,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내부감사업무를 수입한 경우 그러한 내부감사업무의 결과가 외부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감사업무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험이 발생된다.

- (a) 내부감사업무의 결과를 적절히 평가함.
- (b) 회계법인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 해당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함.

5605.4 A3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내부감사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자기검토위험을 식별하고 그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 관련된 지속가능성 정보의 중요성
- 해당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된 경영진의 주장이 왜곡 표시될 위험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이 내부감사업무에 의존하는 정도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자기검토위험이 식별된 경우 문단 R5605.6가 적용된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아닌 경우

5605.5 A1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내부감사업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예시로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감사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R5605.6**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내부감사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참조: 문단 R5600.15 및 R5600.17)

5605.6 A1 문단 R5605.6에 따라 금지되는 업무의 예로는 다음과 관련된 내부감사업무가 있다.

-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내부통제
-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기록이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를 위한 정보를 산출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시스템
-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된 금액이나 공시사항

## 5606 IT(information technology) 시스템업무

### 개요

5606.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IT 시스템업무를 제공할 때, 5606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외에 문단 5600.1부터 5600.28 A1까지의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도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데 관련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업무의 정의

5606.2 A1 IT 시스템 업무는 다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IT 시스템의 설계 또는 개발
- 설치, 구성, 인터페이스 구축 또는 맞춤화 등 IT 시스템의 구축
- IT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모니터링,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 데이터 수집 또는 저장 또는 데이터 호스팅 관리(직접 또는 간접)

5606.2 A2 이러한 IT 시스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a) 원천자료의 집계
- (b)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의 일부분을 형성
- (c) 지속가능성 정보 기록 또는 보고된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관련된 공시사항을 포함)를 산출

그러나, IT 시스템은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기록 또는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 IT 시스템업무 제공 시 경영자 책임 수행의 위험

**R5606.3** 문단 R5400.20에 따라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경영자 책임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IT 시스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다음에 대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 (a)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하는 책임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인정함.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은 가급적이면 고위경영진 중에서 자질이 있는 사람(또는 사람들)을 선임하여 그에게 IT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 유지보수, 모니터링,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모든 경영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책임을 부여함.
- (c)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설계, 구축, 운영, 유지보수, 모니터링,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의 적절성과 결과를 평가함.
- (d)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해당 IT시스템의 운영과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되거나 산출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짐.

5606.3 A1 IT 시스템업무로 인해 경영자 책임의 수행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대신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데이터 호스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러한 업무는 다음을 포함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재무 및 비재무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일한 접근지점 역할을 수행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데이터 또는 기록을 보관 또는 저장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데이터 또는 기록이 불완전하지 않도록 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데이터 또는 기록에 대하여 업무연속성 또는 재해복구 기능 등 전자적 보안 또는 백업 업무를 제공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IT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웹사이트를 운영, 유지, 또는 모니터링하는 경우

5606.3 A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공했거나 해당 의뢰인에게 허용된 업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공한 데이터의 수집, 수신, 전송 및 보유 또는 경영자 책임의 수행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 IT 시스템업무 제공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6.4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IT 시스템업무를 제공할 때, 해당 업무의 결과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인증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5606.4 A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IT 시스템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험을 식별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해당 업무의 성격
- IT 시스템의 성격 및 해당 시스템이 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 기록,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또는 회계법인이 의견을 표명할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와 상호 연계되는 정도

-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한 부분으로서 특정 IT 시스템에의 의존도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자기검토위협이 식별된 경우, 문단 R5606.6이 적용된다.

5606.4 A3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 기록 또는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하는 IT 시스템 업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시스템 등 IT 시스템의 설계, 개발, 구축, 운영, 유지보수, 모니터링,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IT 시스템에 대한 지원
-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개발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가능성정보 관리시스템 또는 지속가능성정보 보고 소프트웨어의 구축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아닌 경우*

5606.5 A1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IT 시스템업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예로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R5606.6**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IT 시스템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참조: 문단 R5600.15 및 R5600.17)

## **5607 소송지원서비스**

### **개요**

5607.1 5607의 특정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외에도, 문단 5600.1부터 5600.28 A1까지의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소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개념체계 적용과 관련되어 있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업무의 정의**

5607.2 A1 소송지원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 서류의 관리와 검색 지원
-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을 포함하여 증인의 역할을 수행
- 추정손실액 또는 소송이나 기타 법정분쟁의 결과로 받거나 지급할 금액의 계산

- 포렌직 또는 조사 업무

### 소송지원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7.3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업무의 결과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 또는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또한 변호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5607.4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소송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 또는 변호위협을 식별하는 데 관련있는 요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법률 또는 규제 환경
- 해당 서비스의 성격 및 특성
- 소송지원서비스의 결과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이나 기타 금액의 추정을 수반할 수 있거나 그러한 추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자기검토위협이 식별된 경우, 문단 R5607.6이 적용된다.

5607.4 A2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소송지원서비스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이나 기타 금액의 추정을 수반할 수 있거나 그러한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5603에서 제시하는 가치평가업무에 관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된다.

####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7.5 A1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소송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 또는 변호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예로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 자기검토위협

**R5607.6**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소송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참조: 문단 R5600.15 및 R5600.17).

5607.6 A1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어 금지되는 업무의 예로는, 법적 소송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할 때 해당 업무의 결과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총당금 또는 기타 금액의 정량화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다.

##### 변호위협

5607.6 A2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소송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호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의 예로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 증인 역할의 수행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7.7 A1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에 소속된 전문가는 사실 증인 또는 전문가 증인으로서 법정 또는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a) 사실 증인은 사실 또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근거로 법정 또는 법원에 증거를 제공하는 개인을 의미함.
- (b) 전문가 증인은 개인의 전문지식을 근거로 사안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는 증거를 법정 또는 법원에 제공하는 개인을 의미함.

5607.7 A2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과 관련된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이 사실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증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의 전문영역 내에서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다.

5607.7 A3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대신하여 전문가 증인의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변호위협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수용가능한 수준이다.

- (a)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의뢰인과 관련된 사안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하도록 법정 또는 법원에 의해 임명된 경우
- (b)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집단소송(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조언을 제공하거나 전문가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i) 회계법인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해당 집단 구성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임(수 및 금액 기준).
  - (ii)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해당 집단을 이끌도록 지정되지 않았음.
  - (iii)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회계법인이 제공할 업무의 성격과 범위 또는 그러한 업무의 제공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해당 집단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았음.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가 아닌 경우

5607.8 A1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변호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예로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R5607.9**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 또는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에 소속된 개인은 5607.7 A3에 제시된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해 특정 사안의 전문가 증인 역할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5608 법률서비스**

**개요**

5608.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5608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외에도 문단 5600.1부터 5600.28 A1까지의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도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데 관련된다.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업무의 정의**

5608.2 A1 법률서비스란 반드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개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a) 변호사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교육요건을 충족한 자
- (b) 법정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5608.2 A2 5608은 특히 다음 사항을 다룬다.

- 법률자문의 제공
- 법률고문의 역할 수행
- 변호인 역할의 수행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잠재적 위협**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8.3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업무의 결과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 또는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또한 변호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A. 법률자문의 제공**

**업무의 정의**

5608.4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제공되는 법률자문서비스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포함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계약체결 지원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거래체결지원
- 합병 및 인수거래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내부 법률부서에 대한 지원
- 법률 실사 및 구조조정

### 법률자문의 제공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8.5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험 또는 변호위험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보고 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의 중요성
- 해당 법적 사안의 복잡성 및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판단 수준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자기검토위험이 식별된 경우, 문단 R5608.70이 적용된다.

5608.5 A2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자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공개될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의 추정
-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공개되는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서 조항에 대한 해석

5608.5 A3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진행할 경우 변호위험이 발생하거나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경영자 책임을 맡게 될 수 있다.

####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08.6 A1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험 또는 변호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
- 해당 업무의 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해당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자기검토위험

**R5608.7**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참조: 문단 R5600.15 및 R5600.17)

#### 변호위험

5608.8 A1 문단 5608.5 A1 및 문단 5608.5 A3부터 5608.6 A1까지에 제시된 고려사항은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변호위험을 평가하고 그 위험에 대처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 B. 법률고문의 역할 수행

###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R5608.9**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업무수행리더 또는 직원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없다.

5608.9 A1 법률고문직은 일반적으로 기업 법무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을 지는 고위직이다.

## C. 변호인 역할의 수행

### 법정 또는 법원에서 변호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

####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R5608.10**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회계법인이 의견을 표명할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중요한 금액이나 정보가 수반되는 법정 또는 법원 분쟁이나 소송의 해결과 관련하여 변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5608.10 A1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한 변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험 또는 변호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
- 해당 업무의 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해당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R5608.11**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법정 또는 법원에서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분쟁 또는 소송 해결을 위한 변호인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 5609 채용서비스

### 개요

5609.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채용서비스를 제공할 때, 5609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외에도 문단 5600.1부터 5600.28 A1까지의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도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데 관련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업무의 정의

5609.2 A1 채용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

- 직무기술서를 작성함.
- 채용후보자를 식별하고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함.
- 채용후보자를 물색하거나 찾아 줌.
- 다음 과정을 통해 특정 직위에 대한 채용후보자를 심사함.
  - 지원자의 전문자격 또는 역량을 검토하고 직무적합성을 결정함.
  - 채용후보자에 대한 평판조회를 실시함.
  - 인터뷰를 통해서 적합한 채용후보자를 선정하고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조언함.
- 고용조건을 결정하고 급여, 근무시간, 기타 보상 등의 상세 조건을 협상함

#### 채용서비스 제공 시 경영자 책임 수행의 위험

**R5609.3** 문단 R5400.20에 따라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경영자 책임을 맡을 수 없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채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다음에 대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 (a) 의뢰인이 특정 직무를 수행할 직원의 채용과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책임을 가급적이면 고위경영진 중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위임함.
- (b) 의뢰인이 채용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모든 경영의사결정을 담당함.
  - 채용후보자의 적합성을 결정하고 직무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정함.
  - 고용조건을 결정하고 급여, 근무 시간, 기타 보상 등의 상세 조건을 협상함.

#### 채용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 5609.4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채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5609.4 A2 일반적으로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에 소속된 구성원이 경영자 책임을 맡지 않는 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다.
- 다수 지원자의 전문적 자질을 검토하고 그들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에 대해 조언함.
  - 채용후보자를 인터뷰하고 지속가능성 보고, 관리 또는 통제 등의 직무에 대한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조언함.
- 5609.4 A3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채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요청받은 지원업무의 성격
  - 채용대상자의 역할
  - 채용후보자와 채용관련 조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해상충 또는 기타의 관계
- 5609.4 A4 이러한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및 압력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예로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금지되는 채용서비스

- R5609.5**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채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해당 의뢰인을 대신하여 협상 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 R5609.6**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다음과 관련된 채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a) 다음 직위의 후보자를 물색하거나 찾아줌.
  - (b) 다음 직위와 관련하여 채용후보자에 대한 평판조회를 실시함.
  - (c) 다음 직위의 임명 대상자를 추천함.
  - (d) 다음 직위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고용 조건, 보상 또는 관련 혜택에 관해 조언함.
    - (i)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임원
    - (ii)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 또는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위경영진의 일원

## 5610 기업금융서비스

### 개요

5610.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5610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외에도 문단 5600.1부터 5600.28 A1까지의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도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데 관련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업무의 정의

5610.2 A1 기업금융서비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기업전략 수립 지원
-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인수가능 대상 파악
- 자산의 잠재적 매수 또는 매각 가격에 관한 조언
- 자금조달 거래 지원
- 거래구조수립 관련 자문
- 기업금융거래의 구조화 또는 금융약정에 대한 조언 제공

#### 기업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 *전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5610.3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업무의 결과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록 또는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또한 변호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5610.4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험 또는 변호위험을 식별하고 그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기업금융자문의 결과 또는 영향에 대한 적절한 처리하는 방식을 결정할 때 수반되는 주관성의 정도
-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기업금융자문의 결과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계상되는 금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
  - 기업금융서비스의 결과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 대한 자기검토위협이 식별된 경우, 문단 R5610.8이 적용된다.

금지되는 기업금융서비스

- R5610.5**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해당 의뢰인이 발행한 주식, 채무증서 또는 기타 금융상품을 알선(promoting), 중개(dealing in) 및 인수(underwriting)하거나 그러한 주식, 채무증서 또는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활동을 수반하는 기업금융서비스를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R5610.6**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기업금융자문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기업금융 관련 자문의 효과성이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특정한 측정 또는 표시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 (b)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이 관련 재무보고체계 또는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에 따라 측정 또는 표시 방법의 적절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익실체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 5610.7 A1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자기검토위협 또는 변호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검토위협 또는 변호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인증업무나 해당 서비스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검토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자기검토위협

- R5610.8**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은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참조: 문단 R5600.15 및 R5600.17).

변호위협

- 5610.8 A1 공익실체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에게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변호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예로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5700 가치사슬 회사가 관련된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

### 개요

- 5700.1 회계법인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5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700.2 회계법인이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에 그 지속가능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가치사슬 회사에서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과 해당 가치사슬 회사 간의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이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5700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개념체계 적용과 관련된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5700.3 A1 관련 보고체계에 따라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은 지속가능성 정보에 가치사슬 기업의 정보를 포함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보고체계와 의뢰인의 사업 및 운영에 따라 복수의 회사와 관련될 수 있다.

#### 가치사슬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

- R5700.4**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이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과 해당 가치사슬 회사 간의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이 의뢰인에 대한 회계법인의 독립성 평가에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와 같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은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그 위협에 대처할 때 해당 이해관계, 기타 관계 또는 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장 용어정의 개정안

수용가능한 수준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 테스트를 이용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본인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만한 수준
광고	개업공인회계사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업무수임을 목적으로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전문지식에 관한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것
타 인증인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인증인 및 인증인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또는 회사이며,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그 업무를 감독, 관리, 검토할 수 없다. <i>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타 인증인에 소속된 개인은 업무팀원이 아니다.</i>
적절한 검토담당자	<i>수행업무 또는 제공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공인회계사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이러한 적절한 검토담당자의 직을 수행할 수 있다.</i> <i>본 용어는 문단 300.8 A4와 5300.8 A4에 기술되어 있다.</i>
인증의뢰인	인증대상업무 책임자 및 입증업무에서는 인증대상 정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증대상업무 책임자와 동일할 수 있음) <i>제5부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경우에는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정의를 참조한다.</i>
인증업무	개업공인회계사가 인증대상 정보에 대하여, 책임자가 아니라 의도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결론을 표명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는 업무 (인증업무기준 3000(개정)은 동 기준에 따라 수행된 인증업무의 요소와 목적을 기술하며, 인증체계는 회계감사기준, 재무제표검토기준, 인증업무기준, 지속가능성인증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증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 <i>제4B부의 “인증업무”는 제5부에서 다루는 감사업무, 검토업무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가 아닌 인증업무를 의미한다.</i>
인증업무팀	(a)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업무팀의 모든 구성원 (b) 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계약되어 인증업무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모든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람을 포함함.  (i) 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업무수행이사의 보상을 권고하거나 인증업무수행이사를 직접적으로 감독, 관리 또는 감시하는 사람



(b) 감사업무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계약된 다른 모든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람을 포함함.

- (i) 감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에 대한 보상을 권고하거나, 업무수행이사를 직접적으로 감독, 관리 또는 감시하는 사람. 해당 업무수행이사의 직상급자부터 회계법인의 고위·경영파트너 (최고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까지 연속된 모든 상급자를 포함함.
- (ii) 감사업무에 대하여 기술 또는 산업 특유의 문제, 거래 또는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
- (iii) 감사업무에 대한 업무품질 검토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업무품질 검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검토를 수행하는 사람

(c) 감사업무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 법인 내의 모든 다른 개인  
*제4A부에서 “감사업무팀”은 “검토업무팀”과 동일한 의미로 적용된다. 그룹감사의 경우에는 그룹 감사업무팀의 정의를 참조한다.*

부문

그룹 감사에서 감사절차의 계획과 이행을 목적으로 그룹 감사인이 결정한 회사, 사업부, 기능, 사업활동, 또는 그 조합.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경우에는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인증절차 계획 및 이행을 목적으로 결정한 회사, 사업부, 기능 또는 사업활동 또는 그 조합. 가치사슬 내 회사는 제외된다.

부문 감사의뢰인

그룹 감사인 또는 부문감사회계법인이 그룹 감사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감사업무의 대상이 되는 부문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a) 부문이 법인인 경우, 부문 감사의뢰인은 회사 및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특수관계자임.
- (b) 부문이 사업부, 기능 또는 사업활동(또는 그 조합)인 경우, 부문 감사의뢰인은 해당 사업부가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능 또는 사업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법인 또는 회사임.

부문감사 회계법인

그룹 감사를 목적으로 부문과 관련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또는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인증업무의 대상이 되는 부문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a) 부문이 법인인 경우,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은 회사 및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모든 특수관계자임.

- (b) 부문이 사업부, 기능 또는 사업활동(또는 그 조합)인 경우, 부문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은 해당 사업부가 속해 있거나 해당 기능 또는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법인 또는 회사임.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위해 특정 부문과 관련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측근가족	부양가족이 아닌 부모, 자식 및 형제자매
개념체계	<i>본 용어는 이 윤리기준 120 및 5120에 기술되어 있다.</i>
비밀정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모든 형태 또는 매체(서면, 전자, 시각 또는 구두 포함)의 정보,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
성공보수	거래의 결과나 수행된 업무의 결과와 관련하여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보수. 법원이나 기타 관계당국이 정하는 보수는 성공보수가 아니다.
업무제한기간	<i>본 용어는 문단 R540.13부터 문단 R540.21까지 및 문단 R5540.13부터 문단 R5540.21까지와 관련하여 사용되며 문단 R540.7에서 R5540.7까지에 기술되어 있다.</i>
준거기준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포함하는 인증업무에서 기초 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관련 준거기준"은 특정 업무에 사용되는 준거기준을 의미한다.
직접업무	개업공인회계사가 기초 인증대상을 관련 준거기준에 따라 측정 또는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증보고서의 일부 또는 부속문서로 제출하는 인증업무. 직접업무에서 회계사의 결론은 기초 인증대상을 준거기준에 따라 측정 또는 평가하여 보고한 결과를 다룬다.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적 이해관계 (a) 개인 또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재무적 이해관계(타인에게 일임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 (b) 개인 또는 회사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투자자산(집합투자기구, 신탁 등)을 통해 수익을 소유하는 재무적 이해관계
임원	직책에 관계없이 회사의 지배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이용제한감사업무	<i>본 용어는 800과 관련하여 사용되며 문단 800.2에 기술되어 있다.</i>
이용제한인증업무	<i>본 용어는 990과 관련하여 사용되며 문단 990.2에 기술되어 있다.</i>



업무수행리더	회계법인이 지정한 개인으로,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및 그 성과에 책임을 지고, 발행된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법적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업무수행리더"는 공공부문에서 이에 상응하는 사람으로 이해해야 한다. <i>감사 및 검토 업무의 경우는 "업무수행이사"의 정의를 참조한다.</i>
업무수행이사	업무의 계약과 수행, 그리고 회계법인을 대신하여 보고서의 발행에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부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은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기타 구성원. <i>제5부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수행리더"의 정의를 참조한다.</i>
업무수행기간 (감사와 검토업무)	업무수행기간은 감사업무팀이 감사업무를 착수하는 때부터 감사보고서가 발행되는 때까지의 기간이다. 계속감사의 경우 업무수행기간의 종료일은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업무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한 일자와 최종 감사보고서의 발행일자 중 더 늦은 일자로 한다.
업무수행기간 (제5부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업무수행기간은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착수하는 때부터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가 발행되는 때까지의 기간이다. 인증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수행기간의 종료일은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업무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한 일자와 최종 지속가능성인증보고서의 발행일자 중 더 늦은 일자로 한다.
업무수행기간(감사업무, 검토업무, 제5부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이외의 인증업무)	업무수행기간은 인증업무팀이 인증업무를 착수하는 때부터 인증보고서가 발행되는 때까지의 기간이다. 인증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수행기간의 종료일은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업무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한 일자와 최종 인증보고서의 발행일자 중 더 늦은 일자로 한다.
업무품질 검토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한 결론에 대하여 업무품질 검토담당자가 수행하여 업무보고서 발행일 또는 그 이전에 완료한 객관적 평가
업무품질 검토담당자	회계법인이 업무품질 검토를 수행하도록 선임한 회계법인의 리더나 이사 또는 기타 개인, 또는 외부의 개인
업무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리더 또는 파트너와 스태프, 그리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는 다른 개인. 해당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 지원을 제공하는 외부전문가와 내부 감사인은 제외한다. <i>제4A부의 "업무팀"은 감사업무 또는 검토업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절차를 수행하는 개인을 각각 의미한다. 본 용어는 400.9에 추가로 설명되어 있다.</i>

회계감사기준 220(개정)은 재무제표감사의 맥락에서 업무팀의 정의에 대한 추가적 지침을 제공한다.

회계감사기준 620은 감사인의 전문가를 회계 또는 감사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개인 또는 조직으로 정의하며, 감사인은 적절한 감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이들이 해당 분야에 대하여 수행한 업무를 활용한다. 회계감사기준 620은 이러한 전문가의 업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회계감사기준 610(2013년 개정)은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의 감사인의 책임을 다루며, 여기에는 감사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제4B부의 "업무팀"은 인증업무에 대한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제5부의 "업무팀"은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단,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업무를 지시, 감독 및 검토할 수 없는 개인(예: "타 인증인" 소속의 개인)은 제외한다. 본 용어는 제5부의 5400.9에 추가로 설명되어 있다.

현 공인회계사

현재 의뢰인과의 감사계약이 유효한 상태에 있는 개업공인회계사 또는 현재 의뢰인을 위하여 회계업무, 세무업무, 경영자문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업공인회계사

현 인증인

현재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되었거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대상으로 기타 전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 또는 회사

재무적 이해관계

회사의 주식이나 기타 유가증권, 채권이나 대출 또는 기타 채무증서에 대한 이해관계. 이러한 이해관계를 획득하기 위한 권리 및 의무와 이러한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파생상품도 포함한다.

재무제표

회사의 일정 시점의 경제적 자원이나 의무 또는 일정 기간의 그 변경내용을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적 재무정보의 체계적인 표시(관련 주석을 포함). 관련 주석은 통상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과 기타의 설명정보로 이루어짐.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일련의 전체 재무제표를 지칭하기도 하고,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와 관련 설명주석 등 단위 재무제표를 지칭하기도 함.

본 용어는 재무제표의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사대상 재무제표

단위 회사의 재무제표. 그룹재무제표라고도 하는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그 연결재무제표

회계법인

- (a) 개인 개업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또는 회사
  - (b) 소유권, 경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상기 (a)를 통제하는 회사
  - (c) 소유권, 경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상기 (a)에 의해 통제를 받는 회사
- 문단 400.4 및 900.3은 각각 제4A부와 제4B부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준수책임을 다루는 데 회계법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문단 5400.4는 제5부에 따른 개별 지속가능성인증인과 회계법인의 준수책임을 다루는 데 회계법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윤리강령

윤리강령에 대해서는 문단 110.1 A1 및 5110.1 A1에 기술되어 있으며 개별 강령들은 다음 문단에 기술되어 있다.

- 성실 R111.1 및 R5111.1
- 공정 R112.1 및 R5112.1
-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R113.1 및 R5113.1
- 비밀유지 R114.1에서 R114.3까지 및 5114.1에서 R5114.3까지
- 전문가적 품위 R115.1 및 R5115.1

일반목적 지속가능성 보고체계

광범위한 사용자의 공통된 정보 필요성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보고체계. 공정제출체계 또는 준수체계일 수 있다.  
"공정제출체계"는 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는 보고체계를 지칭할 때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a) 보고된 정보의 공정한 제출을 위해서는 경영진이 체계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의 공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함.
- (b) 보고된 정보를 공정하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체계의 요구사항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함. 단, 이러한 이탈은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준수 체계"는 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지만 위의 (a) 또는 (b)의 인정사항은 포함하지 않는 보고체계를 의미한다.

제5부에서 일반목적 체계는 일반목적 지속가능성 보고체계를 의미한다.

그룹	그룹 재무제표 또는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를 작성하는 보고회사
그룹 감사	그룹 재무제표의 감사
그룹 감사의뢰인	<p>그룹감사회계법인이 그룹 재무제표에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이 되는 회사. 그룹 감사의뢰인이 공개거래법인인 경우, 감사의뢰인은 항상 그 특수관계자 및 감사업무가 수행되는 기타 모든 부문을 포함한다. 그룹 감사의뢰인이 공개거래법인이 아닌 경우, 그룹 감사의뢰인은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특수관계자 및 감사업무가 수행되는 기타 모든 부문을 포함한다.</p> <p><i>문단 R400.27를 참조한다.</i></p>
그룹감사 회계법인	그룹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계법인
그룹 감사업무팀	<p>(a) 그룹 감사를 목적으로 부문과 관련된 감사 절차를 수행하는 부문감사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계약된 개인을 포함하여 그룹 감사를 위한 업무팀의 모든 구성원</p> <p>(b) 그룹감사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계약되어 그룹감사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람을 포함함.</p> <p>(i) 그룹감사 수행과 관련하여 그룹 업무수행이사의 보상을 권고하거나, 그룹 업무수행이사를 직접적으로 감독, 관리 또는 감시하는 사람(해당 업무수행이사의 직상급자부터 회계법인의 고위·경영파트너(최고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까지 연속된 모든 상급자를 포함)</p> <p>(ii) 그룹 감사업무에 대하여 기술 또는 산업 특유의 문제, 거래 또는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p> <p>(iii) 그룹 감사업무에 대한 업무품질검토 또는 업무품질검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검토를 수행하는 사람</p> <p>(c) 그룹감사회계법인의 네트워크 법인 내에서 그룹감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개인</p> <p>(d) 그룹감사회계법인 네트워크 외부의 부문감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기타 개인으로서 그룹 감사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p>
그룹 업무수행리더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책임지는 업무수행리더
그룹 업무수행이사	그룹감사를 책임지는 업무수행이사
그룹 재무제표	연결 프로세스를 통해 둘 이상의 회사 또는 사업부의 재무정보가 포함된 재무제표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p>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이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에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이 되는 회사.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개거래법인인 경우,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은 항상 그 특수관계자 및 인증업무가 수행되는 기타 모든 부문을 포함한다.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개거래법인이 아닌 경우,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은 해당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특수관계자 및 인증업무가 수행되는 기타 모든 부문을 포함한다.</p> <p><i>문단 R5400.27를 참조한다.</i></p>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에 관해 보고하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계법인
그룹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	<p>(a)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목적으로 부문과 관련된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부문감사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계약된 개인을 포함하여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을 위한 업무팀의 모든 구성원</p> <p>(b)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계약되어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모든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람을 포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룹 업무수행리더에 대한 보상을 권고하거나, 그룹 업무수행리더를 직접적으로 감독, 관리 또는 감시하는 사람(해당 업무수행리더의 직상급자부터 회계법인의 고위·경영파트너(최고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까지 연속된 모든 상급자를 포함).</li> <li>(ii)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하여 기술 또는 산업 특유의 문제, 거래 또는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li> <li>(iii)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업무품질검토 또는 업무품질검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검토를 수행하는 사람</li> </ul> <p>(c)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의 네트워크 법인 내에서 그룹 지속가능성인증업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개인</p> <p>(d)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 네트워크 외부의 부문 지속가능성인증 회계법인에 소속된 기타 개인으로서 그룹 지속가능성인증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p>
그룹 지속가능성 정보	둘 이상의 회사 또는 사업부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하는 지속가능성 정보
역사적 재무정보	특정 회사와 관련하여 과거 기간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 또는 과거 일정 시점의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을 재무적 용어로 표시하는 정보. 주로 해당 회사의 회계시스템에서 산출됨.

배우자 및 부양가족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부양가족

독립성

독립성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 (a) 정신적 독립성 -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시키는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개인이 성실하게 행동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며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발휘하도록 함.
- (b) 외관상 독립성 -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가 모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감안할 때 회계법인, 또는 감사업무팀원, 인증업무팀원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의 성실, 공정성 또는 전문가적 의구심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중요한 사실이나 상황을 회피함.

*문단 400.5, 900.4, 5400.5에 따라, 개인 또는 회계법인이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해당 개인 또는 회계법인이 제4A부, 제4B부, 제5 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개인이나 회사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간접투자자산(집합투자기구, 신탁 등)을 통해 수익을 소유하는 재무적 이해관계

청탁

다른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물, 상황 또는 행동을 의미하나 반드시 이러한 다른 개인의 행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탁의 범위에는 직장 동료 간의 사소한 접대행위(비개업공인회계사의 경우) 또는 공인회계사와 현 의뢰인 또는 잠재 의뢰인 간의 사소한 접대행위(개업공인회계사의 경우)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과 현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또는 잠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간의 사소한 접대행위부터 관련 법규위반으로 귀결되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다. 청탁은 다음의 예와 같이 그 형태가 다양하다.*

- 선물
- 접대
- 유흥
- 정치자금 기부 또는 자선기금 기부
- 우정 및 충성심에 호소하는 행위
- 고용 기회 또는 기타의 상업적 기회
- 특혜, 우선권 또는 특전

주요감사수행이사	업무수행이사, 업무품질 검토 책임자 및, 감사대상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하는 기타 감사파트너. 해당 상황과 감사업무에서 개인의 역할에 따라, 기타 감사수행이사에는, 예를 들어 중요 종속회사나 사업부와 같은 그룹 내 특정 부문에 대한 감사수행이사가 포함될 수 있음.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	업무수행리더, 업무품질 검토를 책임지는 개인,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또는 판단을 하는 업무팀의 기타 리더(있는 경우). 해당 상황과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서 개인의 역할에 따라, 기타 리더에는, 예를 들어 중요한 종속회사 또는 사업부와 같은 내 특정 부문에 대한 업무수행리더가 포함될 수 있음.
리더	전문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개인 <i>본 용어는 제5부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맥락에서 사용된다.</i>
May	<i>이 윤리기준의 영문본에서 “May”란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 사항을 포함하여, 특정 상황에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미이다. 가능성이나 확률을 표시하지는 않는다.</i>
Might	<i>이 윤리기준의 영문본에서 “Might”란 특정 사안이나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특정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단, 위협의 수준은 특정 사안, 이벤트 또는 조치와 관련된 사실 또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협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는 경우 특정한 가능성 또는 확률 수준을 의미하지 않는다.</i>
네트워크	다음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 규모가 보다 큰 조직  (a) 협력을 목표로 함.  (b) 이익공유 및 비용분담을 분명한 목적으로 하거나, 공동의 소유와 통제 또는 경영, 공동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공동의 사업전략, 공동의 브랜드명칭 사용 또는 전문 자원의 상당 부분을 공유함.
네트워크 법인	네트워크에 속하는 회계법인 또는 기타 회사 <i>추가 정보는 제4A부의 문단 400.50 A1부터 400.54 A1까지와 제5부의 문단 5400.50 A1부터 5400.54 A1까지를 참조한다.</i>
법규위반 (비개업공인회계사)	<i>법률 및 규정의 위반(법규위반)은 다음 당사자가 현행 법률 또는 규정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특정 행위를 누락하거나 실행하는 행위로 구성된다.</i>  (a) 공인회계사의 소속조직  (b) 소속조직의 지배기구

- (c) 소속조직의 경영진
- (d) 소속조직을 위해 일하거나 소속조직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개인  
본 용어는 문단 260.5 A1에 기술되어 있다.

법규위반  
(개업공인회계사)

법을 및 규정의 위반(법규위반)은 다음 당사자가 현행 법률 또는 규정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특정 행위를 누락하거나 실행하는 행위로 구성된다.

- (a) 의뢰인
- (b) 의뢰인의 지배기구
- (c) 의뢰인의 경영진
- (d) 의뢰인을 위해 일하거나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개인  
본 용어는 문단 360.5 A1에 기술되어 있다.

법규위반  
(지속가능성인증인)

법을 및 규정의 위반(법규위반)은 다음 당사자가 현행 법률 또는 규정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특정 행위를 누락하거나 실행하는 행위로 구성된다.

- (a)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 (b)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배기구
- (c)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경영진
- (d)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해 일하거나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개인  
본 용어는 문단 5360.5 A1에 기술되어 있다.

사무소

지리적 또는 업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회계법인의 하위조직

전임 공인회계사

현 공인회계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위해 가장 최근에 감사업무를 수행했거나 회계, 세무, 컨설팅 또는 유사한 전문업무를 수행한 개업공인회계사

전임 인증인

현 인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을 위해 가장 최근에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했거나 다른 전문서비스를 수행한 개인 또는 회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

제1부에서 “공인회계사”는 비개업공인회계사 및 개업공인회계사 그리고 개업공인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을 의미한다.*

*제2부에서 “공인회계사”는 비개업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

*제3부, 제4A부 및 제4B부에서 “공인회계사”는 개업공인회계사와 개업공인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을 의미한다.*

비개업공인회계사	상업부문, 산업부문, 서비스부문, 공공부문, 교육부문, 비영리부문, 규제기관 또는 전문직 단체 등의 분야에서 직원, 계약자, 파트너, 이사(상임 또는 비상임), 소유 경영자, 자원봉사자 등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개업공인회계사	전문업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 내의 기능적 분류(예: 감사, 세무 또는 경영자문)와는 관계없이 소속된 모든 공인회계사. <i>본 용어는 개업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i>
전문업무	공인회계사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수행하는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회계, 감사, 지속가능성 보고 또는 인증, 세무, 컨설팅, 재무관리 등을 포함)를 의미한다.
전문가적 판단	<i>전문가적 판단에는 특정 전문업무의 성격과 범위, 관련된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를 고려하여 사실 및 상황에 상응하는 관련 훈련, 전문적 지식, 기술 및 경험의 적용이 포함된다.</i> <i>본 용어는 문단 120.5 A4 및 5120.5 A4 기술되어 있다.</i>
전문서비스	의뢰인을 위해 수행하는 전문업무
업무수입 예정 공인회계사	잠재 의뢰인(기존 의뢰인인 경우도 일부 존재함)을 위해 감사업무 또는 회계, 세무, 컨설팅 또는 유사한 전문업무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 개업공인회계사
업무수입 예정 인증인	잠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기존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인 경우도 일부 존재함)을 위해 지속가능성인증업무 또는 다른 전문업무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인증인
공익실체	제4A부와 관련하여 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실체에 해당한다. (a) 공개거래법인 (b)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는 것을 주요 기능 중 하나로 하는 회사 (c) 대중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 중 하나로 하는 회사 (d) 문단 400.15에 설명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 규정 또는 전문가 기준에 의해 이와 같이 지정된 회사

이 윤리기준은 문단 400.23 A1 및 400.23 A2에 설명된 바와 같이 범주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거래법인	증권거래소 상장 등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양도 및 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회사. <i>관련 증권 법규에서 정의하는 상장회사는 공개거래법인의 한 예이다.</i>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 테스트	<i>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 테스트란 다른 당사자가 공인회계사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 본인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는, 결론을 도출하는 시점에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알고 있거나 합리적인 관점에서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관련 사실 및 상황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일 필요는 없으나 불편부당하게 공인회계사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도출한 결론을 이해하고 해당 결론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관련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i> <i>본 용어는 문단 120.5 A9 및 5120.5 A9에 기술되어 있다.</i>
특수관계자	의뢰인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는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a) 의뢰인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의뢰인이 해당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li><li>(b)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로서, 해당 회사가 의뢰인에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뢰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해당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li><li>(c) 의뢰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li><li>(d) 의뢰인 또는 위의 (c)의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로서, 이러한 이해관계가 의뢰인과 위의 (c)의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li><li>(e) 의뢰인과 공동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자매회사”)으로서, 해당 자매회사와 의뢰인이 이들을 지배하는 회사에게 각각 모두 중요한 경우</li></ul>
인증대상업무 책임자	인증업무에서 기초 인증대상을 담당하는 당사자
검토의뢰인	회계법인이 수임하여 수행하는 검토업무의 대상인 회사
검토업무	<i>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인증업무로서, 감사절차와 달리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만드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i>

개업공인회계사가 결론을 표명하는 업무

검토업무팀

- (a)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업무팀의 모든 구성원
- (b) 검토업무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계약된 다른 모든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람을 포함함.
  - (i) 검토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에 대한 보상을 권고하거나, 업무수행이사를 직접적으로 감독, 관리 또는 감시하는 사람. 해당 업무수행이사의 직상급자부터 회계법인의 고위경영파트너(최고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까지 연속된 모든 상급자를 포함함.
  - (ii) 검토업무에 대하여 기술 및 산업 특유의 문제, 거래 또는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
  - (iii) 검토업무에 대한 업무품질 검토 또는 업무품질 검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검토를 수행하는 사람
- (c) 검토업무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 법인 내의 다른 구성원

안전장치

*공인회계사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취하는 조치  
본 용어는 문단 120.10 A2 및 5120.10 A2에 기술되어 있다.*

고위직 비개업공인회계사

*고위직 비개업공인회계사란 소속조직의 인적, 재무적, 기술적, 유형 및 무형 자원의 획득, 배치 및 통제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임원 또는 고위직 직원을 의미한다.  
본 용어는 문단 260.11 A1에 기술되어 있다.*

특정목적 재무제표

특정 이용자의 재무정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인증대상 정보

준거기준을 토대로 한 기초 인증대상의 측정 또는 평가 결과, 즉 기초 인증대상에 준거기준을 적용하여 얻은 정보

상당한 피해

*본 용어는 문단 260.5 A3, 360.5 A3, 5360.5 A3에 기술되어 있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이 되는 회사.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개거래법인인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은 항상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이 공개거래법인이 아닌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은 의뢰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문단 R5400.27 참조)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의도된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결론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무.

지속가능성인증업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 합리적 확산업무 - 인증인의 결론의 기반이 되는 업무 상황에서 업무 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인증업무. 인증인의 결론은 관련 준거기준을 토대로 한 기초 인증대상의 측정 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인증인의 의견을 제출 및 공개 등을 통해 전달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 제한적 확산업무 - 인증인이 업무위험을 해당 업무의 상황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었으나 그 위험이 합리적인 인증업무보다는 큰 업무. 이를 기반으로 수행한 절차 및 입수한 증거에 근거하여 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정보에 중요왜곡표시가 있다고 믿게 된 사안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전달하는 형태로 결론을 표현한다. 제한적 확산업무에서 수행된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합리적 확산업무와 비교하여 제한적이지만, 인증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미 있는 수준의 확산을 얻기 위해 설계되었다. 인증인이 의미 있는 확산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속가능성 정보의 의도된 이용자의 신뢰를 중요하지 않은(inconsequential) 수준보다는 명확히 더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인증인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일반적으로 업무수행리더 또는 기타 업무팀원, 또는 회계법인(해당되는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

- (a)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위한 업무팀의 모든 구성원
- (b) 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계약되어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람을 포함함.
  - (i) 지속가능성인증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수행리더에 대한 보상을 권고하거나, 업무수행리더를 직접적으로 감독, 관리 또는 감시하는 사람. 해당 업무수행리더의 직상급자부터 회계법인의 고위·경영파트너(최고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까지 연속된 모든 상급자를 포함한다.
  - (ii)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하여 기술적 또는 산업적 고유 이슈, 거래 또는 이벤트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

- (iii)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업무에 대한 업무품질검토 또는 업무품질검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검토를 수행하는 사람
- (c)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 법인 내의 모든 다른 개인

지속가능성 정보

- (a) 다음에 대한 정보
  - (i)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 또는 기타 지속가능성 요인이 회사의 업무, 서비스 또는 제품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 또는 기타 지속가능성 요인에 미치는 기회, 위험 또는 영향
  - (ii) 회사의 업무, 서비스 또는 제품이 경제, 환경 또는 대중에 미치는 기회, 위험 또는 영향
- (b) 법률, 규정 또는 관련 보고체계 또는 인증체계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 또는 설명으로 정의한 정보

지속가능성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 *재무 및 비재무 용어로 표현된 정보*
- *역사적 정보 또는 미래예측정보*
- *내부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의무적 또는 자발적 공개를 위해 작성된 정보*
- *회사 또는 그 가치사슬에서 얻은 정보*
-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과거 또는 예상 실적에 대한 양적·질적 평가와 관련된 정보*
- *회사의 정책, 계획, 목표, 약속 또는 진술에 기술되어 있는 정보*

지배기구

회사의 전략방향과 수탁책임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조직(예: 회사의 이사회). 이러한 책임에는 재무보고절차 또는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감시가 포함된다. 영리기업 또는 공공기업의 이사회 집행임원과 같은 경영진의 구성원이나 소유경영자가 지배기구에 포함될 수 있다.

위험

*이 용어는 문단 120.6 A3 및 5120.6 A3에 기술되어 있으며 다음의 범주로 세분된다.*

- 이기적위험      120.6 A3(a) 및 5120.6 A3(a)*
- 자기검토위험    120.6 A3(b) 및 5120.6 A3(b)*
- 변호위험        120.6 A3(c) 및 5120.6 A3(c)*
- 유착위험        120.6 A3(d) 및 5120.6 A3(d)*

*압력위협 120.6 A3(e) 및 5120.6 A3(e)*

업무수행기간

*본 용어는 제A부의 문단 R540.7과 제5부의 문단 R5540.7에 기술되어 있다.*

기초 인증대상

준거기준을 적용하여 측정되거나 평가된 현상

가치사슬

*가치사슬은 관련 지속가능성보고체계에 정의되었거나 기재되었거나 달리 명시된 보고개념이다.  
가치사슬에는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보고에 중요한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고객과 공급업체가  
포함될 수 있다.  
부문은 가치사슬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3장 국제지속가능성인증 윤리기준(독립성 포함)(IESSA)안 제정에 따른 관련 기준 개정안

#### 제1부 윤리기준의 준수, 윤리강령 및 개념체계

##### 100 윤리기준의 준수

(...)

##### 윤리기준의 위반

**R100.8** 국제독립성기준의 위반에 관한 사항은 문단 R400.80부터 R400.89까지, 문단 405.22 A1부터 R405.29까지, 문단 R900.50부터 R900.55까지, 문단 R5400.80부터 R5400.89까지, 그리고 문단 5405.22 A1부터 R5405.29까지에서 다룬다. 이 윤리기준에 있는 다른 모든 규정의 위반을 식별한 공인회계사는 해당 위반의 심각성과 해당 위반이 본인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해당 위반의 결과에 만족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취함.
- (b) 해당 위반을 관련 당사자에게 보고할지 여부를 결정함.

100.8 A1 이러한 위반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 또는 감독당국 등이 포함된다.

(...)

##### 120 개념체계

(...)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R120.3** 공인회계사는 이 윤리기준 110에서 제시하는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해당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개념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120.3 A1 개념체계의 적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은 다음에서 제시한다.

- (a) 제2부 - 비개업공인회계사,
- (b) 제3부 - 개업공인회계사
- (c) 다음의 독립성기준

(i) 제4A부 - 감사와 검토업무의 독립성

(ii) 제4B부 - 감사, 검토업무 및 제5부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외의 인증업무의 독립성

(d) 제5부 - 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국제독립성기준 포함).

**R120.4** 윤리문제를 다룰 때 공인회계사는 해당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계약자, 직원 또는 소유주 등으로서 전문업무를 수행할 때 이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제2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 제2부 비개업공인회계사

### 260 법규위반에 대한 대응

#### 개요

- 260.1 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260.2 공인회계사가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성실 강령 및 전문가적 품위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한다.
- 260.3 공인회계사는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게 될 수 있다. 260에서는 공인회계사가 다음에 대한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응할 때 공인회계사가 법규위반의 영향과 가능한 조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한다
- (a) 소속조직 재무제표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사항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규
  - (b) 소속조직 재무제표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금액과 공시사항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를 준수하는 것이 소속조직의 사업을 운영하고 지속하며 중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소속조직에 근본이 되는 기타 법규

#### 법규위반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목적의식

- 260.4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공익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응할 때 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의식을 갖는다.
- (a) 성실 강령 및 전문가적 품위 강령을 준수함.
  - (b) 다음을 위해 소속조직의 경영진 또는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에 알림.
    - (i)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식별된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결과를 바로잡거나, 해결하거나 완화시키도록 협력함.
    - (ii) 법규위반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c) 공익에 부합하는 적절한 추가 조치를 실행함.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일반사항**

260.5 A1 법규위반은 다음 당사자가 현행 법률 또는 규정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특정 행위를 누락하거나 실행하는 행위로 구성된다

- (a) 공인회계사의 소속조직
- (b) 소속조직의 지배기구
- (c) 소속조직의 경영진
- (d) 소속조직을 위해 일하거나 소속조직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개인

260.5 A2 260에서 다루는 법규의 예시에는 다음에 관한 법규가 포함된다.

- 부정, 부패 및 뇌물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범죄수익금
- 증권시장 및 거래
- 은행 및 기타 금융상품과 서비스
- 정보보호
- 조세, 연금채무와 지급
- 환경보호
- 공중보건 및 안전
- 인권보호
- 노동조건 및 직원 권리
- 소비자 권리

260.5 A3 법규위반으로 인해 소속조직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소송이 제기되거나 기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소속조직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투자자, 채권자, 임직원 또는 일반 대중에게 잠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규위반은 공익에 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260에서 상당한 피해를 주는 법규위반이란 이런 당사자들에게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의 예로는 투자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무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부정행위 및 임직원 또는 공중의 건강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환경 관련 법규의 위반 등이 포함된다.

**R260.6** 공인회계사가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처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규의 조항이 260의 조항과 다르거나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직면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는 다음을 포함하여 해당 법규의 조항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 (a) 관계 당국에 법규위반을 보고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 (b) 관련 당사자에 대한 주의 환기를 금지하는 조항

(...)

#### 고위직 비개업공인회계사의 책임

(...)

#### *사안에 대한 대처*

(...)

260.14 A1 일부 법률 및 규정은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할 시한을 명시할 수도 있다.

**R260.15** 고위직 공인회계사는 260의 조항에 따라 사안에 대응하는 것 외에도 소속조직의 외부 감사인 또는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수행하는 지속가능성인증인(있는 경우)에게 해당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60.14 A2 이러한 정보공개는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고위직 공인회계사의 직무상 또는 법률상 의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결정*

**R260.16** 고위직 공인회계사는 본인의 상급자(있는 경우) 및 지배기구가 취한 대응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

## 제3부 개업공인회계사

### 300 개념체계 적용 - 개업공인회계사

#### 개요

- 300.1 제3부는 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개업공인회계사가 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관련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제3부는 전문업무,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를 포함하여 개업공인회계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사실 및 상황을 기술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념체계에 따라 개업공인회계사는 이러한 사실 및 상황에 유의하여야 한다.
- 300.2 개업공인회계사에게 적용되는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은 다음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 제3부 - *개업공인회계사(300부터 399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제3부는 인증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업공인회계사에게 적용됨)*
  - *독립성기준(다음과 같이 구성됨)*
    - Part 4A - *감사와 검토업무의 독립성(400부터 899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제4A부는 감사와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회계사에게 적용됨)*
    - 제4B부 - *감사업무, 검토업무 및 제5부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외의 인증업무의 독립성(900부터 999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제4B부는 감사업무, 검토업무 또는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제외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회계사에게 적용됨)*
  - 제5부 - *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국제독립성기준 포함)(5100부터 5700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제5부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회계사에게 적용됨)*
- 300.3 제3부에서 공인회계사는 개업공인회계사 개인 및 이들이 소속된 회계법인을 의미한다
- (...)

## 360 법규위반에 대한 대응

### 개요

- 360.1 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360.2 공인회계사가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성실 강령 및 전문가적 품위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한다.
- 360.3 공인회계사는 의뢰인에 대한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게 될 수 있다. 360에서는 다음에 대한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응할 때 공인회계사가 법규위반의 영향과 가능한 조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한다.
- (a) 의뢰인 재무제표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사항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규
  - (b) 의뢰인 재무제표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금액과 공시사항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를 준수하는 것이 의뢰인의 사업을 운영하고 지속하며 중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의뢰인에 근본이 되는 기타 법규

### 법규위반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목적의식

- 360.4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공익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응할 때 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의식을 갖는다.
- (a) 성실 강령 및 전문가적 품위 강령을 준수함.
  - (b) 다음을 위해 의뢰인의 경영진 또는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알림.
    - (i)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식별된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결과를 바로잡거나, 해결하거나 완화시키도록 협력함.
    - (ii) 법규위반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c) 공익에 부합하는 적절한 추가 조치를 실행함.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360.5 A1 법규위반은 다음 당사자가 현행 법률 또는 규정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특정 행위를 누락하거나 실행하는 행위로 구성된다

- (d) 의뢰인
- (e) 의뢰인의 지배기구
- (f) 의뢰인의 경영진
- (g) 의뢰인을 위해 일하거나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개인

360.5 A2 360에서 다루는 법규에는 다음에 관한 법규가 포함된다

- 부정, 부패 및 뇌물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범죄수익금
- 증권시장 및 거래
- 은행 및 기타 금융상품과 서비스
- 정보보호
- 조세, 연금채무와 지급
- 환경보호
- 공중보건 및 안전
- 인권보호
- 직원의 근로조건 및 권리
- 소비자 권리

360.5 A3 법규위반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소송이 제기되거나 기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의뢰인의 재무제표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투자자, 채권자, 임직원 또는 일반 대중에게 잠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규위반은 공익에 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360에서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란 이런 당사자들에게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의 예로는 투자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무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부정행위 및 임직원 또는 공중의 건강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환경 관련 법규의 위반 등이 포함된다.

**R360.6** 공인회계사가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처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규의 조항이 360의 조항과 다르거나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법규위반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직면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는 다음을 포함하여 해당 법규의 조항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 (a) 관계 당국에 법규위반을 보고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 (b) 의뢰인에 대한 주의 환기를 금지하는 조항

(...)

### 재무제표 감사

(...)

360.18 A1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부문의 업무책임자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360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처할지 여부 그리고 대처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요구사항은 그룹업무수행이사가 소속된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부문, 법인 또는 사업부의 감사업무책임자가 소속된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과 동일하거나 상이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의뢰인의 지속가능성인증인과 사안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R360.18a** 공인회계사는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있는 경우)을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의뢰인의 지속가능성인증인(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고려할 관련 요소

360.18a A1 문단 R360.18a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고려와 관련된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해당 커뮤니케이션이 법규에 반하는지 여부
-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관해 진행 중인 조사에서 규제기관 또는 검찰이 공개에 대해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업무의 목적이 회사 내 잠재적인 법규위반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여부
-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의뢰인의 지속가능성인증인에게 해당 사항을 이미 알렸는지 여부
-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규정 또는 절차가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 내에서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다루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루고 있다면 그 방식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360.18a A2 문단 R360.18a에서 다루는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업무수행리더가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알고 있도록 하고 제5부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처할지 여부 및 대처할 경우 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결정

**R360.19** 공인회계사는 경영진 및 지배기구(해당되는 경우)가 취한 대응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

## 제4A부 감사와 검토업무의 독립성

### 400 감사와 검토업무의 독립성에 대한 개념체계 적용

(...)

#### 감사와 검토업무가 아닌 인증업무

400.17 감사와 검토업무가 아닌 인증업무에 대한 독립성기준은 다음 감사와 검토업무가 아닌 인증업무에 대한 독립성기준은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다.

- 제4B부 - *감사와 검토 업무 및 제5부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외의 인증업무의 독립성*
- 제5부 - *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국제독립성기준 포함)*

## 410 보수

### 개요

(...)

#### 총 보수 - 감사 보수 대비 비감사업무 보수 비중

410.11 A1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감사의뢰인에게 청구하는 보수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에게 감사 이외의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 감사업무 또는 기타 업무의 상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기적위험의 수준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압력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감사 이외의 관계에 집중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410.11 A2 이러한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감사 보수에 비하여 지속가능성인증 이외의 업무에 대한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
- 감사 보수 대비 비감사업무 보수의 비율이 컸던 기간
- 다음을 포함하는 감사 이외의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
  - 반복적인 업무인지 여부
  - 법규에서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 포함하여 해당 업무를 회계법인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410.11 A3 이러한 이기적위험 또는 압력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감사업무 또는 감사 이외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감사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 감사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감사 이외의 업무의 범위를 축소함. (...)



## 540 감사의뢰인과 장기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파트너 교체 포함)

(...)

### 개요

- 540.1 회계법인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540.2 개인이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의뢰인에 대한 감사업무와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결합한 업무에 참여한 경우, 유착위협 및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540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540.3 A1 540에 언급된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 지속가능성인증업무는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맥락에서 언급되었다.

#### 전체 감사의뢰인

- 540.4 A1 감사의뢰인 및 그 의뢰인의 환경에 대한 이해는 감사업무의 품질에 필수적이지만, 개인이 감사업무팀원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으로서 다음의 대상과 장기간의 유대관계를 가지는 경우 유착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a) 감사의뢰인 및 그 영업부문
- (b) 감사의뢰인의 고위경영진
- (c) 감사대상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의 근간이 되는 재무정보

- 540.4 A2 개인이 장기간 유지해 온 감사의뢰인을 놓치는 것을 염려하거나 고위경영진의 일원 또는 지배기구와 긴밀한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은 해당 개인의 판단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540.4 A3 이러한 유착위협 또는 이기적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a) 개인과 관련된 요소
  - 개인이 의뢰인과 관계를 가진 전체 기간(이전 직장인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을 때 의뢰인과 관계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포함)
  - 개인이 감사업무팀원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이었던 기간 및 수행한 역할의 성격
  - 개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상급자가 지시하고, 검토하고 감독한 정도

- 개인의 연륜에 기인하여, 개인이 감사 결과에 영향(예: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업무팀원에게 업무를 지시)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 개인과 고위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의 개인적 관계의 긴밀성
- 개인과 고위경영진 또는 지배기구 간에 이루어진 상호교류의 성격, 빈도 및 수준

(b) 감사의뢰인과 관련된 요소

- 의뢰인의 회계 및 재무보고 문제의 성격 또는 복잡성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 최근 고위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 개인과 고위경영진 또는 지배기구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교류의 성격, 빈도 및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의뢰인의 조직구조가 최근 변경되었는지 여부

540.4 A4 둘 이상의 요소가 결합되는 경우 위협의 수준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과 의뢰인의 고위경영진 중 한 사람이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관계가 강화되면서 발생한 유착위협은 해당 경영진이 퇴직하는 경우 감소할 수 있다.

540.4 A5 동일한 의뢰인에 대한 감사업무와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결합한 업무에 장기간 관여한 특정 개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착위협 및 이기적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해당 개인을 교체하여 감사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540.4 A6 이러한 유착위협 또는 이기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감사업무팀 소속인 해당 개인의 역할을 변경하거나 해당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및 범위를 변경함.
- 감사업무팀원이 아닌 적절한 검토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 해당 업무에 대해 주기적으로 독립적인 내부 또는 외부의 품질검토를 실시함.

**R540.5** 해당 개인을 교체하여 감사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만 발생된 위협의 수준에 대처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개인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적절한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a) 감사업무의 팀원이 됨.

(b) 업무품질 검토 또는 업무품질 검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검토를 수행함.

(c) 감사업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이러한 기간은 유착위협 및 이기적위협에 대처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공익실체의 경우에는 문단 R540.7부터 R540.22까지의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R540.6** 한 개인이 동일한 의뢰인의 감사업무팀과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 모두 소속되어 있고 회계법인이 해당 개인을 교체하여 감사업무팀과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만 발생된 위협의 수준에 대처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문단 R540.5를 준수하는 것 외에도 해당 개인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적절한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 (a)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팀원이 됨.
- (b)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 검토 또는 업무품질 검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검토를 수행함.
- (c) 지속가능성인증업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이러한 기간은 유착위험 및 이기적위험에 대처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공익실체의 경우에는 문단 R540.7부터 R540.22까지의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감사의뢰인이 공익실체인 경우*

**R540.7** 문단 R540.9부터 R540.11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실체의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이 누적하여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다음 중 한 가지 역할을 하거나 복수의 역할을 결합하여 수행할 수 없다.

- (a) 업무수행이사
- (b) 업무품질 검토 책임자
- (c) 기타 감사수행이사
- (d)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

이러한 업무수행기간(time-on period)이 경과하면 해당 개인은 문단 R540.13부터 R540.21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업무제한기간(cooling-off period)을 가져야 한다.

**R540.8** 업무수행기간을 계산할 때, 개인이 문단 R540.7(a)부터 (d)까지 규정된 특정 역할의 수행을 최소기간 동안 중단해야만 업무수행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최소기간이란 연속된 기간으로서 문단 R540.13부터 R540.15까지에 정해진 업무제한기간 중 해당 개인이 특정 역할의 수행을 중단하기 직전에 수행했던 역할에 해당되는 기간 이상인 기간을 말한다.

540.8 A1 예를 들어,

- 4년 동안 업무수행이사를 수행한 후 3년 동안 업무에서 물러나 있었던 개인은 이후 동일한 감사업무에 추가 3년 동안만 주요감사수행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이 경우 총 누적기간은 7년이 됨). 이후 해당 개인은 문단 R540.17에 따라 업무제한기간을 가져야 한다.
- 2년 동안 지속가능성 인증의뢰인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업무수행이사를 수행한 개인은 추가 5년 동안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업무품질 검토 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후 해당 개인은 문단 R540.18에 따라 업무제한기간을 가져야 한다.

**R540.9** 문단 R540.7의 예외 사항으로, 회계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이례적인 경우에 지배기구가 동의한다면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감사 품질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주요감사수행이사는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요감사수행이사의 역할을

추가로 1년 동안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 540.9 A1 예를 들어, 예정된 업무수행이사가 중병에 걸린 경우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요구되는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주요감사수행이사는 추가로 1년 동안 감사업무팀에서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계법인이 예정된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유 및 발생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지배기구와 논의해야 할 것이다.
- R540.10** 감사의뢰인이 비공익실체에서 공익실체가 되는 경우, 주요감사수행이사의 교체시기를 결정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감사의뢰인이 공익실체가 되기 전까지 해당 개인이 주요감사수행이사 또는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의 역할을 수행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의뢰인이 공익실체가 될 때까지 특정 개인이 주요감사수행이사 또는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로 일했던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그 개인은 7년에서 이미 주요감사수행이사 또는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로 일했던 기간을 차감한 기간만큼 주요감사수행이사의 역할을 더 수행할 수 있다. 문단 R540.7의 예외 사항으로, 감사의뢰인이 공익실체가 될 때까지 특정 개인이 주요감사수행이사 또는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로 일했던 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기구의 동의를 얻어 주요감사수행이사의 업무를 최대 2년 동안 더 수행할 수 있다.
- R540.11** 주요감사수행이사 또는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로 공익실체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이 소수인 회계법인에게는 주요감사수행이사의 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문단 R540.7의 예외 사항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기관이 주요감사수행이사의 교체를 면제해 주고 있다면, 이러한 면제규정에 따라 개인이 7년을 초과하여 주요감사수행이사로 계속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제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정하는 기타 요구사항(예, 주요감사수행이사의 교체 면제기간, 주기적인 독립된 외부검토)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업무수행기간 관련 기타 고려사항

- R540.12** 개인이 감사업무에 장기간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을 평가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개인이 주요감사수행이사가 되기 전에 해당 감사업무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서 수행한 역할 및 해당 감사업무에 관여한 기간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
- 540.12 A1 개념체계를 적용하면 특정 개인이 주요감사수행이사의 역할을 수행한 기간이 7년 미만이라도 특정 개인이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회계법인이 결론내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 업무제한기간

- R540.13** 특정 개인이 업무수행이사의 역할을 누적하여 7년간 수행한 경우, 업무제한기간은 연속된 5년의 기간이다.
- R540.14** 특정 개인이 업무품질 검토책임자로 선임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한 누적기간이 7년인 경우, 업무제한기간은 연속된 3년의 기간이다.
- R540.15** 문단 R540.13 및 R540.14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개인이 주요감사수행이사의 역할을 누적하여 7년을 수행한 경우, 업무제한기간은 연속된 2년의 기간이다.

540.16 A1 540의 이사 교체 요구사항은 품질관리기준서 2에서 업무수행이사가 업무품질 검토담당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조건으로 요구하는 업무제한기간과는 별개이며, 해당 업무제한기간에 변경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문단 325.8 A4 참조).

업무수행기간 중 주요감사수행이사와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가 결합된 역할의 수행

**R540.17** 특정 개인이 주요감사수행이사와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가 결합된 역할을 수행하고, 해당 역할 중 업무수행이사 또는 업무수행리더의 역할을 누적적으로 4년 이상 수행한 경우, 업무제한기간은 연속된 5년의 기간이다.

**R540.18** 문단 R540.19(a)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감사수행이사와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가 결합된 역할 수행하고, 해당 역할 중 업무품질 검토 책임자의 역할을 누적적으로 4년 이상 수행한 경우, 업무제한기간은 연속된 3년의 기간이다

**R540.19** 특정 개인이 업무수행기간 중 업무수행이, 업무수행리더와 업무품질 검토 책임자가 결합된 역할을 수행한 기간이 누적적으로 4년 이상인 경우 업무제한기간은 다음과 같다.

(a) 문단 R540.18의 예외 사항으로, 해당 개인이 주요감사수행이사 또는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의 역할을 3년 이상 수행한 경우 연속된 5년의 기간

(b) 다른 모든 경우는 연속된 3년의 기간

**R540.20** 특정 개인이 문단 R540.17부터 R540.19까지 규정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요감사수행이사와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가 결합된 역할 수행한 경우 업무제한기간은 연속된 2년의 기간이다.

과거 소속 회계법인에서 수행한 업무

**R540.21** 특정 개인이 문단 R540.7에서 규정하는 주요감사수행이사 또는 주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의 역할을 수행한 기간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회계법인에서 동일한 의뢰인에 대한 감사업무의 주요감사수행이사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주요지속가능성인증 업무수행리더의 역할을 수행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R540.22는 공란으로 둔다]**

업무제한기간 중 수행업무의 제한

**R540.23** 특정 개인은 관련 업무제한기간 중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a) 업무팀원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해당 감사업무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품질검토 업무나 업무품질 검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검토를 수행함.

(b) 감사업무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또는 산업 특유의 이슈, 거래 또는 사건에

대하여 업무팀이나 의뢰인에게 자문을 제공함. (해당 개인의 업무수행기간 중 마지막 1년 동안 수행한 업무 또는 도출한 결론으로서 현재의 감사업무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관련되는 업무 또는 결론에 한정해서 해당 업무팀과 논의하는 경우는 예외)

- (c)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이 감사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전문업무를 지휘하거나 조정하는 책임을 담당하거나,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과 감사의뢰인과의 관계를 감독함.
- (d) 감사의뢰인과 관련하여 위에서 기술하지 않은 기타의 역할 또는 업무를 수행함.(해당 개인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비인증업무 제공 포함).
  - (i) 고위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유의한 수준으로 또는 빈번하게 교류를 함.
  - (ii) 감사업무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540.23 A1 문단 R540.23의 규정은 해당 개인이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고위·경영파트너(최고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와 같은 경영진의 역할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제4B부 감사와 검토업무 및 제5부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외의 인증업무의 독립성 900 감사와 검토업무 및 제5부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외의 인증업무의 독립성에 대한 개념체계 적용

### 개요

#### 일반사항

900.1 제4B부는 감사업무, 검토업무 및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 범위 내의 지속가능성인증업무 외의 인증업무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인증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회사의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성과 인증업무
- 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인증
- 공공부문 기관이 달성한 가성비 등의 성과 준거기준에 대한 인증
-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인증
-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 이외의 회사의 비재무 정보에 대한 인증
- 재무제표의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업무
-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닌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성인증업무
  -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를 특정 이용자의 정보 필요성을 충족하도록 고안된 체계에 따라 보고되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 지속가능성인증인의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를 회사가 개발한 준거기준에 따라 보고하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 지속가능성인증 보고서의 사용 및 배포가 제한된 지속가능성인증업무

(...)

#### 감사와 검토업무

900.10 감사와 검토업무에 대한 독립성기준은 제4A부 - 감사와 검토업무의 독립성에서 제시하고 있다. 회계법인이 동일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인증업무와 함께 감사업무 또는 검토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4A부의 요구사항이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및 감사업무팀원 또는 검토업무팀원에게 계속 적용된다.

제5부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

900.11 제5부는 특정한 지속가능성인증업무에 대한 독립성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회계법인이 동일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독립성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제4B부의 적용 대상인 다른 인증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제5부의 요구사항이 회계법인, 네트워크 법인, 지속가능성 인증업무팀원에게 계속 적용된다.



## 제4장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고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현행 윤리기준 제1부-3부 개정안

### 제1부 윤리기준의 준수, 윤리강령 및 개념체계

#### 100 윤리기준의 준수

##### 개요

100.1 **공인회계사(professional accountant)**라는 직업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공익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00.2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기업, 정부 및 기타 기관들은 재무 및 비재무 보고와 기업 보고, 인증 및 기타 전문업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공인회계사를 참여시키고 있다. 회계사들은 이러한 신뢰가 다음을 포함하여 회계사가 수행하는 전문업무에 대한 기술과 가치에 기반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 (a) 윤리강령 및 전문가 기준 준수
- (b) 사업 감각의 활용
- (c) 기술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전문지식 적용
- (d) 전문가적 판단의 발휘

이러한 기술과 가치를 적용함으로써 회계사는 제공 목적에 부합하고 의도된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문 또는 기타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다.

100.3 이 윤리기준은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회원인 전문적 회계 조직이 채택하거나 국제회계사연맹 회원들이 윤리강령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에게 기대되는 엄격한 윤리적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윤리기준은 특정 부문 또는 국가의 공인회계사 윤리기준(독립성 기준 포함) 수립 책임자 및 회계법인이 윤리 및 독립성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도 사용하거나 채택할 수 있다.

100.4 이 윤리기준은 모든 공인회계사가 준수해야 할 다섯 가지 윤리강령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과 감사 및 기타 인증업무의 경우에는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윤리기준은 회계사가 사업적업무 또는 공적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실 및 상황에 윤리강령과 개념체계를 적용한다.

(...)

## 제2부 비개업공인회계사(PROFESSIONAL ACCOUNTANTS IN BUSINESS)

### 200 개념체계 적용 - 비개업공인회계사

#### 개요

- 200.1 제2부는 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할 때, 비개업공인회계사를 위한 요구사항과 관련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제2부는 전문업무,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를 포함하여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사실 및 상황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개념체계는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이러한 사실 및 상황에 유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00.2 정부조직과 일반 대중뿐 아니라 투자자, 채권자, 소속조직 및 기업계의 기타 부문은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수행한 업무에 의존할 수 있다. 비개업공인회계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속조직과 제3자가 필요로 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하는 재무정보 및 비재무정보의 작성과 보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재무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사업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 직무에 종사하기도 한다.
- 200.3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어느 한 조직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 계약자, 파트너, 상임 또는 비상임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소속조직을 위하여 소유경영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의 형태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이러한 법적인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공인회계사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 위협의 식별

- 200.6 A1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은 다양한 사실 및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위협의 유형에 대해서는 문단 120.6 A3을 참조한다. 전문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에게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 및 상황의 예를 각 위협 유형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이기적위협

- 공인회계사가 소속조직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거나 소속조직으로부터 대출 또는 보증을 받은 경우
- 공인회계사가 소속조직이 제공하는 성과보상 약정에 참여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소속조직의 공급업체와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고 해당 공급업체가 소속조직의 지속가능성 목표 또는 관행의 영향을 받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개인적 용도로 기업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소속조직의 공급업체로부터 선물 또는 특혜를 제공받는 경우

(b) 자기검토위협

- 공인회계사가 사업 매수에 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후 해당 사업 결합에 적용할 적절한 회계처리방식을 결정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배출 감축을 위한 자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후 배출량 감축을 계산하는 적절한 방법론을 결정하는 경우

(c) 변호위협

- 공인회계사가 유리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투자설명서(prospectus)의 정보를 조작할 기회를 가진 경우

(d) 유착위협

- 공인회계사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조직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해당 공인회계사가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여 해당 조직의 재무 및 비재무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을 지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사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e) 압력위협

- 공인회계사 또는 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나 측근가족이 다음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면직 또는 교체 등의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
  - 회계원칙 또는 지속가능성 보고원칙의 적용
  -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측정방법, 지표, 목표, 추정 준거기준 또는 가정의 결정
  - 재무정보의 비재무정보의 보고 방식
- 특정 개인이 계약체결 또는 특정 회계원칙 또는 지속가능성 보고원칙의 적용 등의 경우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 경우

*기술 사용과 관련된 위협의 식별*

200.6 A2 다음은 공인회계사가 전문업무를 수행할 때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사용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의 예시이다.

- 이기적위협
  -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술이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회계사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충분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에게 접근하지 못했을 수 있음.

(참조: 문단 230.2)

- 자기검토위협
  - 기술이 회계사 또는 소속기관의 지식, 전문성 또는 판단을 사용하여 설계 또는 개발되었음.

(...)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R200.9** 이 윤리기준에 따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는 소속조직의 지배기구 구성원 중 커뮤니케이션할 적절한 상대방을 결정해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지배기구에 소속된 하위 조직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에는 지배기구 구성원 전원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들 전원을 그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200.9 A1 커뮤니케이션할 상대방을 결정할 때, 공인회계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a) 관련된 상황의 성격 및 중요성
  - (b)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문제
- 200.9 A2 지배기구 소속 하위 조직의 예로는 감사위원회, 지속가능성의 감독을 담당하는 타 위원회, 지배기구에 소속된 개인 등이 포함된다.
- R200.10** 지배기구 책임뿐만 아니라 경영 책임을 지고 있는 개인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는 해당 개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계사 본인이 달리 커뮤니케이션했어야 할 대상자인 지배기구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 200.10 A1 소속조직의 지배기구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 전원이 해당 조직의 경영 책임을 겸직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단일 소유주가 조직을 경영하고 지배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없는 소기업을 이러한 경우의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인회계사는 경영 책임과 지배기구의 책임을 겸직하는 해당 개인과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책임을 완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10 이해상충

(...)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R210.4** 공인회계사는 이해상충 때문에 전문가적 또는 사업적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0.4 A1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공인회계사가 두 개의 소속조직에서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의 구성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 조직으로부터 다른 조직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 파트너십의 해산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파트너십의 양 당사자 각각이 공인회계사를 고용하고 그 공인회계사가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 소속조직의 경영진 중 경영자 매수 방식(management buy-out)으로 동 조직을 인수하고자 하는 특정 경영진을 위해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소속조직을 위해 공급자의 선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본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이러한 거래에서 재무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소속조직에서 투자안을 승인하는 지배기구의 구성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안들 중 하나가 공인회계사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

#### 이해상충의 식별

**R210.5** 공인회계사는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 이상의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을 식별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을 식별하는 것이 포함된다

- (a) 관련된 당사자 간에 관련된 재무적 이해관계 및 기타 관계의 성격
- (b) 해당 업무 및 그 업무가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

## 220 정보의 작성 및 제출

### 개요

- 220.1 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220.2 정보를 작성 또는 제출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 압력위협 또는 다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220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220.3 A1 공인회계사는 소속조직 내의 모든 직급에서 해당 조직 내·외부의 정보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일에 관여한다.
- 220.3 A2 이러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이해당사자에게 또는 이해당사자를 위해 작성 또는 제출된다.

- 경영진 및 지배기구.
- 투자자 및 대출기관 또는 기타의 채권자
- 규제기관

이러한 정보는 이해당사자가 소속 조직의 운영 및 각종 사안의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해당 조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보에는 공개되거나 내부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영업 및 성과 보고서
-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 정보
- 예산 및 예측 정보
- 내부감사인 및 외부감사인에게 제공되는 정보
- 지속가능성인증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지속가능성 정보
- 리스크 및 영향 분석 자료
- 일반재무제표 및 특정목적 재무제표
- 세무신고서
- 법규 등의 준수 목적으로 규제기관에 제출한 보고서

220.3 A3 220에서 정보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를 수집, 기록, 측정, 관리 및 승인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R220.4** 정보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해당되는 경우 관련 보고 체계에 따라 정보를 작성 또는 제출함.
- (b) 의도적으로 오도하지 않고 계약상 결과 또는 규제 관련 결과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보를 작성 또는 제출함.
- (c) 다음을 위해 전문가적 판단을 함.
  - (i) 중요성 측면에서 사실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표시함
  - (ii) 사업상 거래 또는 활동의 본질적 성격과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함.
  - (iii) 적시에 그리고 적절하게 정보를 수집, 분류, 기록 또는 측정함.
- (d)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상 결과 또는 규제 관련 결과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어떠한 사항도 누락하지 아니함.
- (e) 개인, 조직 또는 기술에 대한 부당한 영향 또는 부당한 의존을 피함.
- (f) 편견의 위험을 인지함.

220.4 A1 다른 사람을 오도하려는 의도로 정보를 준비하거나 제시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관행을 통해 지속가능성 정보에서 특정 기관 또는 투자가 지속가능성 목표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또는 지속가능성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지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 사업 활동의 성격과 영향을 왜곡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
- 허위정보 포함
- 지표의 부적절한 적용 또는 보고
- 특정 정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정보는 과소평가하는 행위

220.4 A2 계약상 결과 또는 규제 관련 결과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예로는 대출 약정 같은 계약상 요구사항 또는 금융기관의 자본유지의무와 같은 규제상 요구사항의 위반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현실적인 추정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20.4 A3 부당한 의존의 예로는, 회사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대규모 공급업체가 제공한 데이터를 해당 공급업체 데이터의 출처, 관련성 및 충분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여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작성 또는 제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정보의 작성 및 제출 시 재량권 행사

**R220.5** 정보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전문가적 판단을 할 때 재량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타인을 오도하거나 계약상 결과 또는 규제 관련 결과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20.5 A1 부적절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재량권을 오용할 수 있는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추정치를 결정함(예: 손익을 왜곡하기 위해 공정가치를 추정)
- 관련 재무보고 체계 하에서 허용되는 둘 이상의 대안 중 특정 회계정책이나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거나 변경함(예: 손익을 왜곡하기 위해 장기계약에 적용할 회계정책을 선택).
- 관련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에 따라 허용되는 두 가지 이상의 대안 중 측정방법을 선택하거나 변경하여 정보를 왜곡함.
- 지속가능성 정보를 허위 표시하거나 누락하기 위해 기회, 위험 또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 평가를 수행함.
- 거래의 시기를 결정함(예: 오도할 목적으로 자산매각 시점을 특정 회계연도 말에 가까운 시점으로 결정).
- 오도할 목적으로 보다 유리한 제출 또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개 시기를 결정함.
- 거래구조를 결정함(예: 자산 및 부채 또는 현금흐름을 왜곡하기 위해 자금조달거래의 구조를 결정).
- 공시방법을 선택함(예: 오도할 목적으로 재무위험, 지속가능성위험 또는 운영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누락 또는 모호하게 기술).
- 오도하기 위해 비현실적이거나 경영진의 결정 또는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가정에 의존하여 미래예측 정보를 작성함.

**R220.6** 전문업무, 특히 관련 보고체계를 준수할 필요가 없는 전문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는 전문가적 판단을 하여 다음 사항을 식별하고 고려해야 한다.

- (a) 정보의 사용 목적
- (b)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
- (c) 해당 정보의 수령자

220.6 A1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정보 또는 추정보고서, 예산안 또는 예측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때 적절한 경우 관련 추정치, 근사치 및 가정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보 이용자가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220.6 A2 또한 공인회계사는 의도된 정보 수령자, 정보를 제출하는 상황 및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타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R220.7** 소속조직 내부 또는 외부의 타인 또는 타 조직이 수행한 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공인회계사는 전문가적 판단을 발휘하여 문단 R220.4에 제시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220.7 A1 이를 위해, 타인이 수행한 업무는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제외한다. 공인회계사가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90에 규정된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된다.

220.7 A2 공인회계사가 타인이 수행한 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려할 요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 업무를 수행한 개인 또는 조직의 평판 및 전문성 그리고 이러한 개인 또는 조직에 가용한 자원
- 업무를 수행한 개인이 관련되는 전문가 기준 및 윤리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이러한 정보는 업무를 수행한 개인 또는 조직과 유지해온 관계 또는 이러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한 타인과의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기술 결과물의 사용

**R220.8** 기술의 결과물을 사용하려는 공인회계사는 해당 기술이 내부적으로 개발되었거나 제3자가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R220.4에 제시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있는 경우)를 결정해야 한다.

220.8 A1 공인회계사가 기술 결과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기술에 의해 수행될 활동의 성격
- 해당 기술의 결과물에 대한 예상 사용 또는 의존 정도
- 회계사가 해당 기술과 의도된 목적에 대한 해당 기술의 적합성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된 기술이 의도된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테스트 및 평가되었는지 여부
- 해당 기술에 대한 이전 경험과 특정 목적에 대한 사용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 기술의 설계, 개발, 구축, 운영, 유지보수, 모니터링,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소속조직의 감독
- 기술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그러한 사용을 감시하는 절차 등 기술 사용과 관련된 통제
- 데이터 및 관련 의사결정, 기술 사용 과정에서 개인이 내린 결정 등 기술에 대한 입력의 적절성

### 사실을 오도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정보의 처리

**R220.9** 공인회계사 본인이 관련된 정보가 사실을 오도하는 정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와 같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20.9 A1 적절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조직의 상급자, 적절한 직위의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해당 정보가 사실을 오도한다는 우려 사항을 논의하고 이들 논의 상대방에게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해당 정보를 정정함.
- 해당 정보가 의도한 정보이용자에게 이미 공시된 경우, 이들 이용자에게 정정된 정보를 알림
- 이러한 문제를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소속조직의 관련 정책 및 절차(윤리규정, 내부고발정책 등)를 검토한다

220.9 A2 공인회계사는 소속조직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가 해당 정보가 사실을 오도하는 정보라고 계속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비밀유지 강령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음의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 다음 당사자와 상의함.
  - 한국공인회계사회
  - 소속조직의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이나 지속가능성인증인
  - 법률전문가
- 다음 당사자와 커뮤니케이션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
  - 정보 이용자를 포함한 제3자

규제 및 감독 기관

**R220.10** 가능한 모든 대책을 실행한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해당 정보는 여전히 사실을 오도하는 정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는 해당 정보와 본인이 관련되거나 관련이 지속되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

220.10 A1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공인회계사가 소속조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될 수도 있다.

## 문서화

220.11 A1 공인회계사는 다음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실관계
- 회계원칙 또는 보고원칙 및 관련된 기타의 전문가 기준
- 커뮤니케이션 내용 및 문제를 같이 논의한 상대방
- 고려한 공인회계사의 분석, 가정, 조치 및 해당 정보의 작성과 제출 시 도출된 판단과 의사결정
- 공인회계사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

## 기타 고려사항

220.12 A1 정보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재무적 이해관계(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재무

및 비재무 보고 및 의사결정에 연계된 보상 및 인센티브를 포함)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240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된다.

220.12 A2 사실을 오도하는 정보에 관련 법규위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60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된다.

220.12 A3 정보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압력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270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적용된다.

220.12 A4 공인회계사가 타인이 수행한 업무 또는 기술 결과물의 사용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회계사가 해당 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위에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240 재무 및 비재무 보고와 의사결정과 관련된 재무적 이해관계, 보상 및 인센티브

(...)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R240.3** 공인회계사는 개인적인 이익 또는 다른 사람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비밀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240.3 A1 공인회계사가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재무적 이해관계로 인해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재무적 이해관계에는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재무 및 비재무 보고 및 의사결정과 연계된 보상 또는 인센티브 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포함된다.
- 240.3 A2 이기적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의 예는 공인회계사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재무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가격에 민감한 정보를 조작할 동거나 기회가 있는 경우
  - 소속조직에 대한 직·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무적 이해관계의 가치가 공인회계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재무 및 비재무 성과 목표에 연계된 보너스 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보너스 또는 인센티브의 가치가 공인회계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속조직에 대한 이연보상주식권리(deferred bonus share rights) 또는 주식옵션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가치가 공인회계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는 소속조직의 주식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상약정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약정의 예로는 특정 재무 및 비재무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것과 연계된 인센티브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됨.
- 240.3 A3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재무적 이해관계의 중요성. 무엇이 중요한 재무적 이해관계인지는 개인적인 상황 및 재무적 이해관계가 해당 개인에게 가지는 중요도에 따라 결정됨.
  - 고위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수준과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원회가 채택한 정책 및 절차
  - 내부정책에 따라 지배기구에 다음의 정보의 공개

-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 권리를 행사하거나 관련 지분을 거래하려는 계획
- 재무적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내부 및 외부감사 절차

240.3 A4 보상 또는 인센티브 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은 상급자 또는 동료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압력으로 인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270(윤리강령의 위반 압력)부분을 참조한다.

## 270 윤리강령의 위반 압력

### 개요

- 270.1 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270.2 공인회계사에게 압력이 가해지거나 공인회계사가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압력 위협 또는 기타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270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데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규정한다.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 R270.3** 공인회계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타인의 압력에 굴복하여 윤리강령의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b) 공인회계사가 타인이 윤리강령을 위반하게 될 것임을 알거나 위반하게 되리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타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270.3 A1 공인회계사는 전문업무를 수행할 때 압력위협과 같이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압력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으며 다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
- 소속조직 내부(예: 동료 또는 상급자)
  - 외부의 개인 또는 조직(예, 공급자, 고객: 대출기관)
  - 내부 또는 외부의 목표 및 기대
- 270.3 A2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압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이해상충 관련 압력
    - 공인회계사 소속조직의 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이 다른 예비 공급자 대신 자신을 선정하라고 가하는 압력

210(이해상충) 부분도 참조한다.
  - 정보의 작성 및 제출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
    - 투자자, 애널리스트, 대출기관 또는 기타 이해당사자의 기대에 맞도록 사실을 오도하는 재무 및 비재무 실적을 보고하라는 압력
    - 유권자들에게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관한 상황을 왜곡하라는 선출직 공무원의 공공부문

공인회계사에 대한 압력

- 라벨링 등을 통해 특정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제품이 지속가능성 목표에 부합하거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왜곡하도록 하는 압력
- 자본투자 및 취득에 대한 의사결정이 편향되도록 하기 위해 이익, 지출 또는 투자수익률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조작하라는 동료의 압력
- 정당한 업무상 비용이 아닌 지출의 승인 또는 처리를 요구하는 상급자의 압력.
- 불리한 조사결과를 담은 내부감사보고를 무마하려는 압력

220(정보의 작성 및 제출) 부분도 참조한다.

- 충분한 전문성 또는 정당한 주의 없이 업무를 수행하라는 압력
  - 업무 범위를 부적절하게 축소하라는 상급자의 압력
  - 기술이나 훈련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현실적인 일정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라는 상급자의 압력
  - 불충분한 데이터 또는 품질과 정확성에 결함이 있는 가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정보를 작성하라는 상급자의 압력

230(충분한 전문성의 보유) 부분도 참조한다.

- 재무적 이해관계 관련 압력
  - 재무 또는 비재무 성과 지표를 조작하라는 상급자, 동료 또는 기타 개인(예, 보상이나 인센티브 약정에 참여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의 압력

240(재무보고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재무적 이해관계, 보상 및 인센티브) 부분도 참조한다.

- 청탁 관련 압력
  - 개인 또는 조직의 판단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청탁을 제공하라는 소속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압력
  - 뇌물 또는 기타의 청탁을 수령(예: 입찰 과정에서 잠재적인 공급자로부터 부적절한 선물이나 접대를 수령)하라는 동료의 압력

250(선물 및 접대를 포함하는 청탁) 부분도 참조한다.

- 법규위반 관련 압력
  -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 구조를 설계하라는 압력
  - 환경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을 피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정보를 조작하라는 압력

260(법규위반에 대한 대응) 부분도 참조한다.

- 보수 수준과 관련된 압력:
  - 공인회계사가 타 공인회계사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자원(인적, 인적, 기술적, 지적 자원 포함) 전문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압력

330, 보수 및 기타 유형의 보상을 참조한다.

270.3 A3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압력을 행사하는 특정 개인의 의도와 압력의 성격 및 정도
- 해당 상황에 대한 법규 및 전문가 기준의 적용
- 윤리적 행위의 중요성을 보여주거나 강조하는 정도와 임직원이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하는 소속조직의 문화 및 리더십. 예를 들어, 비윤리적인 행위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는 압력으로 인해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압력에 대처하는 윤리규정 또는 인사정책 등과 같이 소속조직이 확립한 정책 및 절차(있는 경우)

270.3 A4 공인회계사가 압력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논의하고 이러한 상황을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것은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및 상의를 할 때는 비밀유지 강령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논의 및 상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당사자와 해당 사안을 논의함.
- 인증인의 상급자가 압력을 행사하는 개인이 아닌 경우 해당 상급자와 해당 사안을 논의함.
- 적절한 경우 조직에 미치는 중대한 위협을 설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속조직 내의 다음 당사자 등에게로 해당 사안을 확산함.
  - 고위 경영진
  - 내부 또는 외부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인증인
  - 지배기구
- 비밀이 보장되는 윤리신고센터(confidential ethics hotline)와 같은 확립된 방법을 이용하여 윤리규정과 내부고발정책 등 소속조직의 정책에 따라 해당 사안을 공개함.
- 다음 사람들과 상의함.
  - 동료, 상급자, 인사담당자 또는 다른 공인회계사
  - 관련 전문가 기구나 감독기구 또는 산업 협회
  - 법률전문가



270.3 A5      압력으로 인해 발생된 위협을 제거하는 조치의 예로는 공인회계사가 압력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더 이상 관련되지 않도록 특정 책임 및 직무의 재구성 또는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

### 문서화

270.4 A1      공인회계사는 다음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당 사실
- 커뮤니케이션 사항 및 사안을 논의한 상대방
- 고려된 조치사항
- 해당 사안에 대한 대처 방법

## 제3부 개업공인회계사

### 300 개념체계 적용 - 개업공인회계사

(...)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R300.4** 공인회계사는 1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120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를 적용하여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R300.5**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경우 공인회계사는 해당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과 관계에 따라 계약자, 직원 또는 소유주 등으로서 전문업무를 수행할 때 이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제2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00.5 A1 개업공인회계사에게 제2부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을 위한 공급자 선정을 책임지고 있으나 회계사 본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공급계약 체결로부터 재무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이해상충에 직면한 경우. 210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이 상황에 적용됨.
- 공인회계사의 의뢰인 또는 회계법인을 위해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하는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 220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이 상황에 적용됨.
- 회계법인의 공급업체로부터 스포츠 행사 무료 티켓을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것과 같이 청탁을 받는 경우. 250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이 상황에 적용됨.
- 의뢰인 업무와 관련하여 보수청구 대상 시간을 부정확하게 보고하라고 업무수행이사로부터 압력을 받는 경우. 270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이 이 상황에 적용됨.

300.5 A2 공인회계사의 직위가 높을수록 정보 열람 권한 및 기회는 물론이고 회계법인 내 타인이 수립, 도출 및 이행하는 여러 정책, 의사결정 사항, 조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및 기회도 증가하게 된다. 공인회계사는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회계법인 내 본인의 직위 및 연공서열 수준을 감안하여 회계법인 내에서 윤리적 문화를 장려하고 도모하며, 문단 120.13 A3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업무관계 또는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및 회사를 대할 때 윤리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이행할 수 있는 조치로는 다음 사항을 도입, 시행 및 감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윤리 관련 교육 및 훈련 과정
- 윤리적 문화를 증진하는 회계법인의 절차와 업무수행 평가 및 보상에 대한 준거기준

- 윤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정책
-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 및 절차

## 위협의 식별

300.6 A1 위협의 유형은 문단 120.6 A3에 기재되어 있다. 전문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에게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 및 상황의 예를 각 위협의 유형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이기적위협

- 공인회계사가 의뢰인에 대한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신규 업무수임을 위해 낮은 보수를 제시했으나 관련 전문가 기준을 준수하며 전문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보수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
- 공인회계사가 의뢰인과 친밀한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본인이 속한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이전에 수행한 전문업무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에게 지속가능성 정보 작성을 위한 전문업무수행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 (b) 자기검토위협

- 공인회계사가 재무시스템을 구축한 후 해당 시스템의 운영 효과성에 대한 인증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인증업무의 대상인 장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원시자료의 작성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c) 변호위협

- 공인회계사가 의뢰인의 지분 또는 주식을 알선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제3자와 의뢰인 간 소송 또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의뢰인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입법에 유리하도록 로비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이니셔티브,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

(d) 유착위협

- 공인회계사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의뢰인의 임원인 경우
- 최근까지 회계법인의 업무수행이사로 있었던 개인이 의뢰인의 임원이 되거나 인증업무의 대상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이 되는 경우
- 감사업무팀원이 감사의뢰인과 장기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업무를 수행한 개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개인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적절한 검토 담당자로 고려되는 경우

(e) 압력위협

-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가 의뢰인 관련 업무에서 제외되거나 회계법인에서 면직될 것이라는 위협을 당하는 경우
- 의뢰인이 쟁점 사안에 대하여 본인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공인회계사가 그 의뢰인의 판단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압력을 느끼는 경우
- 부적절한 회계처리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분석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가 예정된 승진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선물을 수령했으며 그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경우

*기술 사용과 관련된 위협의 식별*

300.6 A2 다음은 공인회계사가 전문업무를 수행할 때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 사용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의 예시이다.

- 이기적위협
  -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술이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회계사가 해당 기술과 그 기술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사용하고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없거나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에게 접근하지 못할 수 있음. (참조: 문단 230.2)
- 자기검토위협
  - 해당 기술이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지식, 전문성 또는 판단을 사용하여 설계 또는 개발되었음.

**위협의 평가**

(...)

*의뢰인 및 의뢰인의 운영환경*

(...)

300.7 A4 의뢰인의 리더십을 포함하는 기업지배구조는 윤리강령의 준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위험 수준 평가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의뢰인의 운영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의 선임시 경영진 이외의 적절한 개인이 이를 추인하거나 승인함
- 의뢰인이 경영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험과 연륜을 갖춘 자질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뢰인이 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을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공정한 선정을 보장하는 내부절차를 구축하고 있음.
- 의뢰인이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

300.7 A4a 지속가능성 정보를 작성 또는 제출할 때,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험 수준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평가는 의뢰인 가치사슬의 양적 및 질적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정보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되거나 서로 다른 보고 체계에 따라 작성될 경우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의 운영환경*

300.7 A5 공인회계사의 위험 수준 평가는 공인회계사의 회계법인 내 다음과 같은 업무환경과 운영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회계법인의 경영진이 윤리강령의 준수를 장려하고 인증업무팀원이 공익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확립하고 있는 경우
- 모든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 또는 절차
- 윤리강령의 준수를 촉진하는 보상, 성과평가 및 징계관련 정책 및 절차
- 단일 의뢰인으로부터의 수입금액에 대한 의존도 관리
- 회계법인 내에서 업무수행이사가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제공하는 결정을 포함한, 윤리강령의 준수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교육, 훈련 및 경험 관련 요구사항
- 내부 및 외부의 우려 및 불만 사항 제기를 용이하게 하고 처리하는 절차

(...)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R300.9** 이 윤리기준에 따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는 의뢰인 조직의 지배기구 구성원 중 커뮤니케이션할 상대방을 결정해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지배기구에 속한 소집단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에는 지배기구 구성원 모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들 모두를 그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300.9 A1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을 결정하는 공인회계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a) 상황의 성격 및 중요성
  - (b)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할 사항
- 300.9 A2 지배기구에 속한 소집단의 예로는 감사위원회, 지속가능성 정보 감독을 담당하는 타 위원회, 지배기구를 구성하는 개인 등이 있다.
- R300.10** 지배기구의 책임뿐 아니라 경영자 책임도 맡고 있는 개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는 해당 개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 대상인 지배기구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충분히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 300.10 A1 단일 소유주가 법인을 경영하고 다른 누구도 지배기구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소규모 법인과 같이 몇몇 경우에는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해당 법인을 경영하는 데 관여한다. 이러한 경우, 경영자 책임을 맡고 있는 개인(들)에게 해당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한다면 공인회계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게 된다.

## 310 이해상충

(...)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일반사항

**R310.4** 공인회계사는 이해상충 때문에 전문가적 또는 사업적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0.4 A1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수행 중 인수 거래와 관련될 수 있는 비밀정보를 입수한 상황에서 감사의뢰인을 인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동 거래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동일 기업을 인수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두 의뢰인에게 동시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자문이 의뢰인들의 경쟁상황과 관련있는 경우
- 동일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특정 자산과 관련하여 대립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를 위해 해당 자산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진행 중인 이혼소송 또는 파트너십 해산과 같이 서로 법률분쟁 중인 두 의뢰인을 동일 사안과 관련하여 대리하는 경우
-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공여자에게 미수 로열티에 관한 인증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라이선스 이용자에게 지급금액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재무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려는 의뢰인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 의뢰인의 주요 경쟁사와 합작투자 또는 이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경쟁상황에 관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 회계법인이 인수에 관심이 있는 사업을 인수하려는 의뢰인을 위해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의 잠재적 판매자와 로열티 또는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 관한 자문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 의뢰인의 지속가능성 목표 또는 관행에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기하는 옹호 단체의 리더십 직위에 있으면서 의뢰인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작성 또는 제출하는 경우

### 이해상충의 식별

#### 일반사항

(...)

## 320 업무수입

(...)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

#### 의뢰인 및 업무 수입

##### *일반사항*

320.3 A1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소유주, 경영진 또는 의뢰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의문시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 성실 강령 또는 전문가적 품위 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알려지면 이러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에는 의뢰인이 불법행위, 부정행위, 지속가능성보고를 포함하는 미심쩍은 재무 및 비재무 보고 관행 또는 기타의 비윤리적 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포함된다.

320.3 A2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의뢰인, 그 소유주, 경영진과 지배기구 및 의뢰인의 사업 활동 등에 관한 지식 및 이해
- 기업지배구조 또는 내부통제를 개선함으로써 의문시되는 문제들에 대처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확약

320.3 A3 업무팀이 전문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러한 역량을 습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입하면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을 발생시킨다.

320.3 A4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다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
  - 의뢰인 사업의 성격
  - 의뢰인 영업활동의 복잡성
  - 의뢰인의 가치사슬의 양적 특성 및 질적 특성(해당되는 경우)
  - 해당 업무와 관련된 요구사항
  - 수행 예정 업무의 목적, 성격 및 범위
- 관련 산업이나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
- 해당 업무와 관련된 규제상 또는 보고상의 요구사항에 관한 경험
-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서 1과 같은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실행하였으며 전문가 기준 및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법인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품질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 및 절차
- 공인회계사의 상업적 우선순위 및 시장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보수 수준 및 해당 보수 수준이 필요한



자원과 연계되어 있는 정도

320.3 A5 이기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필요한 적격성을 갖춘 직원을 충분히 투입함.
- 업무수행을 위해 현실적인 업무일정을 수립함.
-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활용함.

(...)

#### 의뢰인 및 업무의 유지

**R320.9**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한 업무가 반복적 성격의 업무인 경우 공인회계사는 해당 업무의 계속 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20.9 A1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은 공인회계사가 해당 위협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수임을 거절했을 업무를 수임한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실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은 부적절한 이익조정,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가치평가 또는 지속가능성 중요성 평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기술 결과물의 사용

(...)

### 330 보수 및 기타 유형의 보상

(...)

#### 성공보수

330.4 A1 일부 비인증업무는 성공보수 조건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공보수로 인해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 특히 공정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330.4 A2 이러한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련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업무의 성격
- 가능한 보수의 범위
- 보수의 산정기준 또는 지표
- 공인회계사가 수행한 업무결과를 이용할 것으로 예정된 자에게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함께 보수의 산정근거를 제시함.
-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
- 해당 거래의 산출물이나 결과를 독립적인 제3자가 검토하는지 여부
- 보수 수준을 감독기관 등의 독립적인 제3자가 설정하는지 여부

330.4 A3 이러한 이기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인회계사가 수행한 업무를 비인증업무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적절한 검토담당자가 검토하도록 함.
- 보수의 산정근거와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된 사전동의서를 징구함.

(...)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including International Independence Standards)*, Exposure Drafts, Consultation Papers, and other IESBA publications are copyright of IFAC. The IESBA, IFEA and IFAC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The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including International Independence Standards)*’, ‘non-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ESBA’, ‘IFAC’, and the IESBA logo are trademarks of IFAC, or registered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of IFAC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thics and Audit’ and ‘IFEA’ are trademarks of IFEA, or registered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of IFEA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Copyright © January 2024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make copies of this work to achieve maximum exposure and feedback provided that each copy bears the following credit line: “*Copyright © January 2024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 All rights reserved. Used with permission of IFAC. Permission is granted to make copies of this work to achieve maximum exposure and feedback.*”

Published by:



국제회계사연맹(이하 IFAC)에서 2024년 1월에 영문으로 발간한 본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 (독립성 포함)(IESSA)안 및 지속가능성인증/보고와 관련된 윤리기준의 기타 개정사항 공개초안」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4년 7월에 한국어로 번역하였으며 IFAC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IFAC의 모든 간행물의 승인된 문구는 IFAC에서 영어로 발간한 것이다. IFAC은 번역의 정확성이나 완전성과 그에 따르는 조치에 대해 책임이 없다.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 (독립성 포함)(IESSA)안 및 지속가능성인증/보고와 관련된 윤리기준의 기타 개정사항 공개초안」의 영문문구 © 2024 by IFAC. All rights reserved.*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 (독립성 포함)(IESSA)안 및 지속가능성인증/보고와 관련된 윤리기준의 기타 개정사항 공개초안」의 한글문구 © 2024 by IFAC. All rights reserved.*

원제: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for Sustainability Assurance (including International Independence Standards) (IESSA) and Other Revisions to the Code Relating to Sustainability Assurance and Reporting – Clean Version*

본 문서를 재생산, 보관, 전송, 혹은 유사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Permissions@ifac.org](mailto:Permissions@ifac.org)에 연락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529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7  
T + 1 (212) 286-9344 F +1 (212) 286-9570  
[www.ethicsboard.org](http://www.ethicsboard.org)

“IESBA” and their respective logos are trademarks of registered trademarks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  
“IESBA” 와 해당 로고들은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상표권 혹은 등록된 상표권입니다.

**DISCLAIMER**

본 공개초안 국문번역본은 참고목적으로 제공하는 번역 초안의 성격으로서 오탈자, 용어 등에 대한 추가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본 공개초안 국문번역본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제한된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개초안 국문번역본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영문 버전이 우선합니다.